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공정거래 자율준수 선언문

친애하는 임직원 여러분!

우리 현대로템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의 역량을 확보하여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중공업 전문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 시대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직결되는 필수적 요인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모든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윤리의 기업, 협력회사와 동반성장하는 상생의 기업, 법질서를 지키는 준법의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때입니다.

우리 현대로템 임직원은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직무수행상 지켜야 할 윤리기준을 수립하고 올바른 거래관계와 준법활동을 통해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행동강령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존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하나, 우리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을 실천한다.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체제 운영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성실한 경영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인다

임직원은 각자 일상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거래법령 준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로템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임직원 여러분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현대로템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이 민 호



임직원 공정거래 행동강령

■ 우리 현대로템은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직원 공정거래 행동강령을 채택하며,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정착에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존의 필수 요소임을 인식하고 이를 기업경영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	---

하나!	우리는 공정경쟁의 원칙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협력업체와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경영을 실천한다
-----	--

하나!	우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체제 운영을 통하여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에 노력하며 성실한 경영을 통하여 기업가치를 높인다
-----	--

행 동 규 범

현대로템의 모든 임직원은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행동규범을 철저히 이행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을 실천하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통한 윤리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며 국가발전에 기여한다.

공정한 거래를 부당하게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올바른 윤리관으로 개개인과 회사의 품위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는다.

- 금품 및 향응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협력업체 임직원에게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하는 행위
- 회사 업무와 관련해 입수한 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행위
- 업무수행에 있어 상호간 예의를 갖추지 않는 행위
- 상호업무 수행 시 업무지연으로 상대방에 피해를 주는 행위

회사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본 행동규범이나 공정거래 관련 법규의 위반 가능성 등 의문이 발생하거나, 법규준수와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 사이에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 자율준수 담당부서(재정팀)와 상의한다.

자율준수 담당조직 연락처			
자율준수 관리자	장화경 상무	TEL	02-3464-7022
자율준수 담당자	손석우 부장	TEL	02-3464-7090
	권오현 차장	TEL	02-3464-7098
	백난이 사원	TEL	02-3464-7097

목 차

제 1 절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개요

1. 자율준수편람의 목적.....	8
2. 자율준수편람의 효력.....	8
3. 역할과 책임	8
4. 적용대상	8
5. 자율준수프로그램.....	8
6. 이해당사자.....	8
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가.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8
나. 핵심 7대 요소의 이행.....	9

제 2 절 - 공정거래제도 개관

1. 공정거래법의 역할.....	12
2. 경쟁법의 개요.....	12
3. 공정거래법의 구조.....	13
4.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14
나.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16
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18
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20
마. 사업자 단체.....	21
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22
사.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23

제 3 절 - 공정위 기능 및 관계법령

1. 공정위 기능

가. 경쟁촉진	25
나. 소비자 주권 확립	25
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25
라. 경제력 집중 억제	25

2.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6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7

제 4 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규제

1.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가. 상호출자의 개념	28
나. 예외인정	28
다. 법 위반시 제재조치	28

2.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가. 채무보증의 개념	28
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29
다. 탈법적 채무보증	30

3. 내부거래공시 31

4. 기업결합

가. 개요	32
나. 기업결합의 의의	32
다. 기업결합의 유형	32
라. 기업결합의 수단	33
마. 기업결합의 신고	34
바. 기업결합 심사기준	35
사. 위반시 제재	38

제 5 절 - 공시사항

1.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 의결공시

가. 개관	41
나. 내부거래 공시대상	43
다. 대규모 내부거래 유형	43
라.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	43
마. 거래금액	44
바. 거래상대방	45
사. 이사회 의결절차	45
아. 공시 시기	46
자. 상품 및 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49
차. 유의사항	50
카. Q & A	51

2.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

가. 개관	57
나. 공시의 시기' 방법 및 절차	59
다. 공시항목별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59
다.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70
라. 위반시 제재	71

3. 비상장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 공시제도

가. 개관	72
나. 위반시 제재	78

제 6 절 - 하도급법

1. 규제목적 79

2. 하도급거래란

가. 제조위탁	80
나. 하도급법상의 하도급의 정의	82

3. 법적용 대상

가. 법 적용 대상사업자	83
나. 법적용대상 기간	83
4.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	
가. 하도급 계약 체결단계	84
나.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90
다.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99
5. 사건처리절차	110
6. 위반시 제재 및 인센티브	
가. 과징금	111
나. 벌점부과	115
다. 인센티브(하도급공정화지침 23, 벌점부과기준 시행령 제14조의4)	115
7. 질의응답	116

제 7 절 - 불공정거래행위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의의	122
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기준	122
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유형	123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가. 의의	128
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128
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128
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인가	129
마. 위반 시 제재	129
바.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제외	131
사. 신고자면책 보상제도 (Leniency Program)	131
3. 부당지원행위금지	132
가. 내부거래의 정의	132
나. 내부거래 관련 용어 개념	132

다.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134
라. 부당한 자산지원행위	134
마.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134
바. 상품용역거래	134
사. 부당지원행위별 Don'ts 구체 사례	137

제 8 절 - Check List 1(하도급법 관련)

1. 하도급법 관련 체크리스트

가. 하도급 계약 체결단계	145
나. 하도급 계약 이행단계	145
다.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145

2. 하도급법상의 의무사항

가. 서면 교부	146
나. 서면 보존	146
다. 선금금 지급	146
라. 검사의 기준방법·시기	147
마. 하도급대금의 지급	147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147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148
나. 물품 등의 구매강제	148
다. 부당한 수령거부 및 수령증 교부	149
라. 부당반품	149
마. 부당감액	150
바.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150
사. 부당한 경영간섭	150
아.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151

4. 확인사항

가. 구매/협력업체(거래처)선정 및 단가결정단계	151
----------------------------	-----

나. 구매/구매물량 발주단계.....	151
다. 구매/위탁물 수령 및 검사단계.....	151
라. 구매/대금지급단계.....	152
마. 구매/협력업체 생산 및 관리단계.....	153
바. 영업/수주영업-주문판매.....	154
사. 재정경리/회계관리.....	154
5. 하도급법상 유의사항	
가. 하도급법상 견적서 접수 및 수정시 주의사항.....	155
나.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점.....	155
다. 가단가 (仮單價) 유의점.....	155
라. 단가변경시 소급적용 유의점.....	155
6. 하도급법 법정기한 관련 규정.....	156
7. 하도급법 과태료, 과징금, 고발 관련 규정	
가. 근거조항.....	164
나. 요건 및 절차.....	165
다. 고발이슈 정리.....	165
라. 위반행위의 유형.....	170
8.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항목.....	171

제 9 절 - Check List 2(공정거래법 관련)

1. 체크리스트	
가.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173
나. 부당공동행위.....	173
2. 공정거래법 업무상 유의사항	
가.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점검시 유의사항.....	174
나. 부당지원 행위.....	175
3.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수주자의 선정에 관한 행위.....	178
나.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179

제 10 절 - 공정거래 위반대응

1. 법 위반 사전예방 대책으로서의 CP 도입 및 운영..... 181
2. 조사개시 전 단계
 - 가. 내부적인 조사의 필요..... 181
 - 나. 감면정책의 이용 여부의 결정..... 182
3. 조사개시 후 대책 - 사건의 파악 및 적절한 대응조치
 - 가. 개요..... 182
 - 나. 사건의 파악 : 사실관계의 파악 및 변호사 선임..... 182

제 11 절 - 동반성장 개요..... 185

제 12 절 - 현대로템 CP운영현황

1.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규정..... 204
2. CP운영주요 실적..... 211
3. CP운영 조직..... 212
4. 사전 스크린제도..... 213
5. Hot Line(내부감시제도)..... 213

제 1 절 -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개요

1. 자율준수편람의 목적

이 '자율준수편람'은 당사가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자율준수를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 (Compliance Program)'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안으로는 당사의 모든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숙지, 준수하도록 하고 밖으로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 촉진하도록 함으로써,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앞장서고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예상되는 막대한 피해와 비용을 사전에 예방 또는 감소하는 한편 '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회사'로서의 당사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함

2. 자율준수편람의 효력

이 자율준수편람은 2011년 4월 1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자율준수관리자가 이를 폐지·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하여 효력이 있음

3. 역할과 책임

회사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의 의결로써 자율준수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자율준수 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반영하여 이 자율준수편람을 개정하고, 자율준수프로그램과 관련한 회사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함

4. 적용대상

이 자율준수편람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되며, 당사의 모든 임직원들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하여 이 자율준수편람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5. 자율준수프로그램

-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이해 증진 및 자율준수를 위하여 사업자들이 도입, 시행하는 프로그램으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말함
- 「자율준수편람」 또는 「자율준수 매뉴얼」이란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제정·시행하기 위하여 각 사업자들이 작성한 문서로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는 한 당사의 자율준수편람을 말함

6. 이해당사자

- 「회사」 또는 「당사」란 「현대로템(주)」를 말함
- 「계열회사」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당사의 계열사를 말함
- 「경쟁업체」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경쟁적인 상품을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를 말함
- 「거래업체(거래상대방)」란 회사와 계약관계인 가맹사업자, 협력업체, 공급업체를 말함
- 「직원」이란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임원과 직원을 말함
- 「고객」 또는 「실수요자」란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사용하는 수요자를 말함
- 「공정위」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Fair Trade Commission)를 말함

7.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가. 공정거래법 및 관계법령

모든 직원은 공정거래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공정거래법」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지칭
- 「하도급법」이란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지칭
- 「공정거래 관계법령」이란 상기의 법률과 시행령을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통칭
- 「법」 또는 「법령」이라 함은 협의로는 해당 법률만을 지칭하나, 광의로는 해당 법률의 시행령, 수입기관의 지침 및 고시를 포함

나. 핵심 7대 요소의 이행

나. 1 최고 경영자의 의지 표명

- 최고 경영자는 모든 직원에게 서면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 의무와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처벌 방침을 전 직원들에게 선언

- 최고 경영자는 이사회 결의로서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율준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이행에 필요한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그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최고 경영자는 자율준수관리자와 협의하여 직원들에게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와 법 위반의 사전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업체 등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에 관한 교육이나 행사를 주최하는 등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문화의 확산에 노력

나. 2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 및 회사의 정책과 절차에 정통한 고위관리자 중에서 선임하되, 생산·영업, 구매·조달, 표시·광고, 고객지원 등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는 자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임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준수 및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수립과 집행을 위한 조직과 업무를 관장하고, 자율준수편람의 제정 및 개정, 자율준수프로그램의 기획, 수립, 집행, 감시, 제재, 개선 및 운영 등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짐

나. 3 자율준수편람의 제정 및 개정

-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계법령에 따라 공정위 및 한국공정경쟁연합회(이하 「연합회」)와 협력하여 자율준수편람을 제정하고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 관계법령의 신규 제정과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여 자율준수편람을 개정

나. 4 교육 시스템

-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전 직원들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법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이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구비하고, 공정위 및 연합회 등 관계기관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교재를 개발
- 자율준수관리자는 최고 경영자 및 필요한 부서 단위로 매 반기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
-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이행, 결과 등에 관한 기록을 해당 교육 종료 후 5년간 유지

나. 5 감시 및 감독 시스템

- 자율준수관리자는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회사의 제반 활동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최고 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최고 경영자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집행

나. 6 위반에 대한 자율규제

- 자율준수관리자는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안이 발견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여 회사의 직원이 공정거래 관계법령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최고 경영자, 기타 관련 부서 책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안에 따라 해당 업무로부터의 격리, 경고, 전직, 업무정지, 감봉, 해고 등 필요한 징계조치를 취함
- 자율준수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법 위반사실의 조사 내용 및 관련 자료와 문서를 기록, 보관 유지함

나. 7 문서관리체계의 구축

-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의 시행과정에서 생성된 자료와 문서의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경쟁법 위반시 경쟁당국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 문서관리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핵심 6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문서는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함

제 2 절 - 공정거래제도 개관

1. 공정거래법의 역할

-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은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활력적이고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여 자유로운 기업시스템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 관련 법령은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혁신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
- 따라서 공정거래법이란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유지·촉진함으로써 시장활동이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제도로 독점규제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 제1조에서 독점규제정책의 목표를 명시하고 있으며, 독점규제정책은 금융 정책 및 재정정책과 함께 현대 자본주의국가의 3대 경제정책을 구성하고 있음
-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기업은 과징금 부과(법 위반 유형에 따라 기업법), 검찰 고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할 수 있다. 그 결과는 기업 및 관련 임직원들 모두에게 매우 가혹할 수 있음
- 그러므로 공정거래 관련 위반행위가 적발되지 않거나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오산임.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들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이를 결코 경시해서는 안되며, 기업의 모든 직원들은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경영활동을 하여야만 회사의 명성과 브랜드의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음

2. 경쟁법의 개요

- 공정거래법의 정식명칭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며,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함
- 공정거래법의 특별법으로서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원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정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84년 12월 31일에 제

정되어 운용되고 있고,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1999년 2월 5일에 제정되어 1999년 7월 1일부터 운용되고 있음

3. 공정거래법의 구조

- 공정거래법이 유지하고자 하는 경쟁조건으로서는 크게 경쟁적인 시장구조의 유지와 시장에서의 경쟁에 대한 인위적인 제약의 제거 등 2가지를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구조의 규제와 경쟁제한행위의 금지는 상호 유기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쟁조건을 유지라는 목적을 수행해 나가고 있음. 즉, 공정거래법상의 제 규제들은 크게 구조규제와 행태규제로 구분할 수 있고, 구조규제는 구조적인 시장결함 및 과도한 경제력집중을 개선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시장경쟁의 회복을 통한 소비자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후생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행태규제는 개별기업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적 거래행태 및 관행을 시정하고자 하는 제도로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보다 사회적·정치적 정책목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음
- 시장에서 사업자들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은 낮은 가격의 양질의 제품을 구매 할 수 있고 소비자의 편익도 증대됨. 공정거래법은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법인데, 시장에서의 경쟁의 정도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함
- 하나는 ‘시장구조’(market structures)이고, 또 다른 하나는 ‘거래행태’(business conducts)이다. 시장구조란 일정한 시장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수가 얼마나 되는지와 각 참여사업자가 그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냄. 예를 들어 독점(monopoly)이란 시장내의 사업자가 하나이고 그 점유율이 100%란 뜻이고, 과점(oligopoly)란 시장내의 사업자가 소수(예 : 3 또는 5)이고, 그 사업자들이 시장을 분할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일반적으로 독점이나 과점의 시장구조 하에서는 경쟁이 없거나 치열하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소비자 후생이나 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음
- 거래행태란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방식이나 행태가 어떤지를 나타냄. 예를 들어, 사업자들이 담합(collusion)을 할 경우에는 시장내의 사업자가 여럿이 있더라도 상호간에 경쟁을 하지 않고 가격이나 생산량을 사업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도록 정하게 되며, 그 결과 독점적인 시장구조와 같은 좋지 않은 결과가 소비자에게 혹은 경제전체에 생기게 됨. 담합행위 이외에, 일반적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배제행위’(foreclosure)와 ‘약탈적 가격 설정행위’

(predatory pricing)가 있다. 배제행위란, 자기의 경쟁상대가 시장에서 제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게 하거나 판매에 필요한 도.소매점에 판매 또는 접근을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함.

- 약탈적 가격 설정행위란 제품을 원가 이하로 판매하여 경쟁자를 시장에서 몰아내고 경쟁자가 시장에서 사라진 후 가격을 높여서 그 동안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시장구조와 영업행태는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됨. 예를 들어 사업자들의 배제행위나 약탈적 가격 설정행위가 성공할 경우 시장은 독과점적 구조가 되게 된다. 반대로,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는 사업자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업자간의 담합행위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큼
- 공정거래법이 금지하고 있는 경쟁 촉진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들은 모두 시장구조나 거래행태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즉 공정거래법 제3조의2(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금지)는 거래행태를 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이며, 공정거래법 제3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공정거래법 제7조(경쟁제한적 기업결합 금지)는 주로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규율하기 위한 것임. 따라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크게 두 가지 부분 즉,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와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4.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 이미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공정거래법은 크게 사업자간 경쟁여건의 조성을 위한 “시장구조 개선”과 사업자간의 판매활동과정에서 일어나는 경쟁제한행위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거래행태 개선”의 두 가지 유형의 실체적 내용을 가지고 있음.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한 규제에 속하며 주어진 시장구조 하에서 개별기업의 행위가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규제가 필요하며 한국과 같이 비경쟁적인 유통구조 하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짐
- 공정거래법상의 거래행태개선과 관련한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간략히 정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거래상대방 혹은 고객에게 부당한 가격 혹은 거래조건을 부과하여 착취하는 행위”를 말함. 학문적으로는 흔히 전자를 방해

남용이라 부르고 후자를 착취남용이라 부름. 방해남용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착취남용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유효한 시장경쟁이 있었다라면 성립하지 않았을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부당하여 부당하게 이익(소위 경쟁초과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말함

- 이하에서는 어떠한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며 그것이 어떠한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봄
- 시장지배적 사업이란 시장에서 경쟁을 배제할 수 있는 힘 즉,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제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이와 같은 사업자는 축적된 자본에 의한 기술혁신, 대규모투자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경쟁의 기회가 적은 독점사업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는 일반사업자들의 행위에 비해서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공정거래법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여 이들의 남용행위를 규제하고 있음. 쉽게 말해서 시장지배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당해 시장 내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가격 등 거래조건을 독자적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지배력을 가진 사업자라고 할 수 있음. 경제학적 의미에서는 가격을 자신의 한계비용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는 힘, 즉 경쟁초과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업자를 말함
- 공정거래법은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와 관련하여, 시장점유율을 기초로 한 추정조항을 두고 있어서 시장점유율이 일정한 수준을 넘게 되면 시장지배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도록 하고 있음. 공정거래법은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 되면 단독의 시장지배력을 추정하게 되고, 만약 당해 시장에서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75%이상이 되면 이들 상위 3 사업자에 대하여 일종의 공동의 시장지배력을 추정하게 됨. 공동의 시장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상위 3사에 속하지만 그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이면 추정에서 배제됨. 예컨대 1위 사업자가 40%, 2위 사업자가 30%, 3위 사업자가 5%라고 하면 3위 사업자는 공동의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에서 제외되게 됨.
-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 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따라서 시장점유율이 높고, 진입장벽이 높아서 신규진입이 용이하지 않으며, 당해 시장 내에서 다른 사업

자의 사업능력 혹은 규모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라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 공정거래법은 ①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②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③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④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5개 유형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대표적인 남용행위로 규정(제3조의2)하고 있음

나.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 M&A는 기업 입장에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핵심역량을 강화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주요 수단인 반면 시장관점에서는 특정기업의 시장지배력이 형성·강화되거나 경쟁사업자간 담합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경쟁이 제한되어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도 있음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주식취득, 임원겸임, 합병, 영업의 양수, 회사신설 등 5가지 유형의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2천억원 이상인 회사 또는 기업결합신고 대상회사의 특수 관계인이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20(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15)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임원겸임의 경우, 합병 및 영업양수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회사주식의 100분의 20이상을 인수하는 경우 등은 이를 3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기업결합 신고의무조항(제12조)과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추정조항(제7조 제4항, 신설 96.12)을 두고 있음
- 기업결합 유형으로는 수평결합(동종 또는 유사제품을 공급하는 경쟁기업 간의 기업결합, 예 : 자동차 제조업체간 기업 결합), 수직결합(제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여러 단계 중 인접한 단계에 있는 기업 간의 기업결합, 예:정유회사와 유류판매업체), 혼합결합(수평·수직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이 있으며,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기업은 가격인상, 생산량 조절, 진입장벽 구축 등 다양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유인이 높아지게 되는 반면, 기업결합 이후에는 다양한 법률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원상회복을 시키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 규모이상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고제도와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 기업결합유형은 첫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의 20%(상장·등록법인은 15%) 이상 소유) 둘째, 임원겸임의 경우(대규모 회사(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합계가 2조원 이상인 회사)의 임원 또는 중업원의 다른 회사의 임원겸임) 셋째, 합병 넷째, 영업양수를 하는 경우 다섯째, 회사설립 참여(회사설립에 참여한 최대출자자)등임
- 심사결과 관련시장내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식 처분, 자산매각 등 독과점 폐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시정조치가 부과 될 수 있음
- 기업결합심사를 통하여 당해 기업결합이 기업결합의 당사회사(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모든 회사를 말함)의 시장점유율(계열회사의 시장점유율을 합산한 점유율을 말함)의 합계가 첫째,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거나, 둘째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당해 거래분야에서 제1위이거나 셋째, 시장점유율의 합계와 시장점유율이 제2위인 회사(당해회사를 제외한 회사 중 제1위인 회사를 말함)의 시장점유율과의 차이가 그 시장점유율의 합계의 100분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와 대규모 회사가 직접 또는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행한 기업결합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의 시장점유율이 3분의 2 이상인 거래 분야에서의 기업결합이거나 당해 기업결합으로 100분의 50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게 되는 경우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기업결합이 불허되거나 조건부 승인을 하게 됨
- 우리나라의 대규모기업집단은 복잡다단한 순환출자구조, 총수 중심의 경영체제, 금융계열사를 통한 지배력 확장·유지, CMS구조 등 독특한 체제를 가지고 있음. 대규모기업집단이 우월적 힘을 이용하여 시장지배를 확대함으로써 개별시장의 경쟁원리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공정한 시장경쟁 여건조성을 통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와 독립·중소기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따라서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전환하고자 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제8조)하여야 하며(개정 '99.2), 지주회사는 자본총액(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액을 보유하거나 자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미만을 소유하거나 자회사 외의 국내회사의 주식을 지배 목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등을 금지(제8조의2)하고 있으며,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설립은 지주회사와 자회사간의 채무보증, 자회사 상호간의 채무보증 등을 해소하도록 제한(제8조의3)하고 있음

- 그리고,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 집단을 상호출자 및 채무보증제한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제14조)하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합병 또는 영업양수 및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의 경우 등을 제외한 상호출자를 금지(제9조)하고 있고, 계열회사에 대한 신규채무보증도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및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금지(제10조의2)하고 있으며,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및 당해 회사의 주주현황과 재무현황 및 국내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제13조)을 두고 있음

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즉 부당한 공동행위(Cartel)를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에서 사업자의 자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경쟁조건을 직접 제약하는 행위로서 경쟁제한행위 중에서도 그 경쟁제한성이 가장 명백한 것임. 부당한 공동행위는 시장에서의 가격결정 등 자유로운 경쟁행동을 방해함으로써 시장경쟁원리의 원활한 작동에 저해요인이 될 뿐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비효율을 초래하게 됨. 즉, 단기적으로 공동행위에 의한 산출량의 제한과 가격의 결정이 가능해지고 장기적으로는 한계사업자의 퇴출을 막아 자원배분의 효율성도 저해하게 됨. 또한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간 은밀한 공모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윤리적으로도 비난의 대상이 됨
- 카르텔(Cartel)은 당해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발휘하고 시장을 지배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업 간의 협약으로서 공정(Fair)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므로 세계 주요 각국에서 강력히 규제함. 카르텔(Cartel)이란 말은 어원적으로 중세에 있어서는 교전국간의 문서에 의한 휴전협정을 지칭함. 근래 와서는 Business 용어로서 기업 간 경쟁에 있어서의 휴전의 의미로 사용되며, 공정거래법은 부당 공동행위란 법 제19조 제1항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사업자들 간의 가격, 거래조건 등 일정한 사항에 대한 합의(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 한다. 담합은 '공모'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가장 심하며, 가장 큰 피해를 소비자에게 직접 유발함
- 부당 공동행위란 2 이상의 사업자간의 의사의 합치(Meeting of Minds)를 말하는 것으로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예: 입찰담합이 이뤄지는 장소에

출석하여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를 실행한 경우) 내지 암묵의 요해에 그치는 경우도 포함한다. 묵시적 합의의 개념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 동조적 행위 (concerted practice), 조장적 관행 등과의 구별이 문제됨. 의식적 병행행위(conscious parallelism)는 과점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업조정의 형태로서 사업자들 사이에 의사의 연락은 없지만 병행적으로 행해지는 사업활동에 대한 상호 인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미국의 판례법상 개발된 개념임

- 대법원은 과점적 시장구조 아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점적 시장구조 하에서의 상호의존성에서 비롯된 병행적 가격책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의식적 병행행위는 합의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14247 판결, 철근 제조회사 사건).
- 동조적 행위(concerted practice)는 EU 조약 제81조 제1항에 합의와 대등한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인 개념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는 합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 강학상 개념인 의식적 병행행위와 구별됨. 동조적 행위와 조장적 관행(묵시적 사업조정을 용이하게 하거나 효과적인 것이 되도록 하는 수단)을 위법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견해 대립하고 있음
- 다음으로 가격모방행위가 ‘합의’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과점적 시장구조하에서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발 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결정한 뒤 후발 업체가 일방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선발 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의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 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견하고 가격 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5항에 따른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은 반복됨
- 가격동조화 현상(선발업체가 종전의 관행 등 시장의 현황에 비추어 가격을 결정하면 후발업체들이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결정할 것으로 예견하고 가격결정을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의한 가격정책 행위에는 추정 반복이 불허된 사례가 있음(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2104 판결, 철근 구매 입찰 사건).
- 가격모방행위만으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 인정 어렵다는 비판이 존재하고, 합의 성립 위해서는 최소한 “개별의사의 존재와 소통 + 상호인식”이 필요하며, 경쟁기업들간의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또는 상호작용 행위(interaction)로서의 성격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의사소통적 요소를 전제로 한 구체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합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음

-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또는 거래조건을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① 가격의 결정·유지·변경행위, ② 제품·용역의 거래조건 및 대금 지급조건 결정행위, ③ 제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④ 거래지역·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⑤ 설비의 신·증설 및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⑥ 제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⑦ 영업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수행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회사의 설립행위, ⑧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신설 96. 12) 등을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제19 조제1항)하고 있음
-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해 약정하는 계약 등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제19조 제4항)하고, 2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더라도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조항(제19조 제5항)과 신고자에 대한 면책조항(제22조의2)을 두고 있음

라.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목적은 바로 공정한 거래(fair trade)를 유지하기 위해서임. 일반적으로 공정한 거래라는 개념은 공정경쟁(fair competition)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경쟁수단이나 방법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거래조건을 공정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따라서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는 경쟁 그 자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즉 공정거래 저해성이라는 개념의 의미가 무엇인지 문제가 됨
- 우리 공정거래법에서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지 않음. 일단 직접적으로 경쟁 그 자체를 훼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조 목적조항에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별 문제가 없음. 그래서 경쟁대상이 될 수 있는 상대방의 시장진입자체를 막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켜 시장에서의 경쟁을 소멸 내지 감소시키는 행위 등이 규제대상이 될 수 있음. 예컨대 신규진입하고자 계획하는 경쟁사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과는 거래를 거절하겠다고 공표한 행위는 신규 진입자

로 하여금 대리점 확보의 수단을 봉쇄하여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임

- 둘째로, 경쟁 그 자체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는 아니지만 경쟁의 수단이 공정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공정한 경쟁이 저해되는 경우도 간접적으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상치되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됨 예컨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 품질과 가격에 의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 첫 번째 행위가 경쟁할 수 있는 자유를 막는 행위라면 두 번째 행위는 경쟁을 허용하되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는 행위임.
- 셋째로, 타 사업자와의 직·간접적인 경쟁차원보다는 중소기업자 혹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강요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는 등 거래의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이다. 예컨대, 납품업체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여 거래하는 경우임
- 공정거래법은 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②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④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⑤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⑥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신설 '96.12), ⑦ 기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신설 '99.2) 등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금지함은 물론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제23조 제1항)하고 있음
-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제23조 제2항)하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23조 제3항)하고 있음

마. 사업자 단체

- 사업자단체는 해당산업의 시장상황, 구성사업자들의 상품가격, 각 구성사업자의 공급량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해당 산업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협의를 하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단체가 공동행위를 선도하거나 구성원 등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개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이와 같은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사업자단체의 활동 중에는 그들이 속한 산업이 기술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교육자료 등 간행물을 발간하거나,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단순 제공하는 행위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관련자료를 정부에 제공하거나 대정부 건의를 하는 행위 그리고 기업윤리현장 등을 만들어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키려는 행위와 소비자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행위 등 경쟁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긍정적인 내용도 있어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가 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은 ① 부당한 공동행위에 의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②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③ 구성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④ 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등을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로 규정(제26조 제1항)하고 동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단체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제26조 제3항)하고 있음

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 수직적인 거래제한은 가격의 측면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가격이 아닌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음. 전자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한다. 가격이 아닌 측면을 규제하는 행위로는 구매자의 지역이나 소비자를 구속하는 행위들을 들 수 있음.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공급자(supplier, 예컨대 제조업자)가 자기 상품의 구매자(buyer, 예컨대 도매상 또는 소매상)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예컨대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통제하는 행위임. ‘재판매’라 하는 이유는 제조업자가 판매한 것을 도매상이 소매상에게 또는 소매상이 소비자에게 다시(再) 판매하기 때문임
-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에서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객체는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용역이 될 수도 있으며, 대상은 직접 거래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의 사업자 즉 2차 혹은 3차의 거래선이 될 수도 있음. 다만 사업자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소비자는 제외된다. 강제하거나 구속하여야 하고 단순히 권장하는 정도로는 부족함. 재판매가격은 통상 최저가격을 의미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가격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가격을 지정하는 지정가격이 될 수도 있음

- 공정거래법은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29조 제1항 본문). 동조 단서에서는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미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최저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당연위법이다. 최고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일단 위법성이 추정되지만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입증하면 면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임. 최고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단서 조항을 둔 이유는 미국의 최근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2001년 제9차 개정 시에 삽입되었음
- 그런데 유의할 점은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에서는 합의이든 단독행위이든 불문하고 강요를 하거나 구속조건부로 거래를 하게 되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한다는 점임
- 공정거래법은 저작물과 ① 당해 제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② 당해 제품이 일반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③ 당해 제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지고 있을 것 등의 3가지 요건을 갖춘 제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제품에 대하여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제한(제29조 제1항, 제2항)하고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재판매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제품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제29조 제4항)하여야 하며, 지정·고시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제품의 재판매가격을 결정·유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계약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수정을 명령(제30조)할 수 있음

사.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당해 국제계약의 내용이 일정한 거래 분야에 있어서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유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무체재산권계약, 수입대리점계약 및 합작투자계약 등과 같은 국제적 협정이나 계약체결을 금지(제32조 제1항)하고 있음

-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계약상의 부당한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 매가격유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제32조 제2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국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국제계약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 회에 심사를 요청(제33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 3 절 - 공정위 기능 및 관계법령

1. 공정위 기능

가. 경쟁촉진

- 각종 진입장벽 및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반경쟁적 규제를 개혁하고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규율함으로써 경쟁적 시장환경을 조성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기타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
- 정부 각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할 때 경쟁의 원리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 경쟁원리를 확산 (경쟁주창)

나. 소비자 주권 확립

-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만들어진 약관조항을 시정하고 표준약관을 보급함으로써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
- 허위·과장의 표시, 광고를 시정하고 소비자 선택에 꼭 필요한 중요정보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
- 할부거래, 방문판매, 전자상거래 등 특수한 거래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수한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방지

다. 중소기업 경쟁기반 확보

- 하도급대금지급, 물품수령 등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형업체들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중소 하도급업체의 발전기반을 확보
- 대형 유통업체, 가맹사업본부 등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 입점, 납품업체, 가맹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시정

라. 경제력 집중 억제

- 대기업집단 계열사간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 부당내부거래 억제 제도 등을 운영함으로써 선단식 경영체제의 문제점을 시정

2. 기타 공정거래 관련 법률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호 보완적인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중소기업간의 수직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이므로 정부가 개입하여 이를 치유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함
- 규제내용
 - **9개 조항의 작위의무**
 - 서면교부, 서류보존(3년) 의무
 - 선급금지급의무
 - 내국신용장 개설의무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의무
 - 설계변경,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통지) 의무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의무
 - 관세 등 환급금 지급의무
 - 납품단가 조정협의의무
 - **12개 조항의 금지의무**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부당반품 금지
 - 부당감액 금지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 금지
 - 부당한 대물변제행위 금지
 - 부당한 경영간섭 금지
 - 보복조치 금지
 - 탈법행위 금지
 -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 하도급대금 지급을 둘러싼 당사자간의 분쟁해결은 하도급법의 직접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나 중소기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음

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 계약내용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고객의 진정한 의사, 즉 경제력과 정보력이 대등하였다면 고객이 의도하였을 진정한 계약내용을 국가가 회복시켜 줌으로써 고객을 보호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규제내용
 -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 사업자는 약관내용의 명시·설명 의무가 있으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함. 또한 고객이 요구할 경우 당해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함
 - 불공정약관의 무효 및 사용금지
 - 신의성실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로 할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을 금함

제 4 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규제

1. 계열사간 상호출자 금지

가. 상호출자의 개념

- 2개 계열회사간의 상호출자는 상호보유주식의 규모나 지분율의 과다와 관계없이 전면 금지됨
- 그러나, 비계열회사와의 상호출자는 금지되지 않는데, 이는 상호간의 출자가 별개의 의사결정 주체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임

나. 예외인정

-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 수령으로 인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호출자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호출자가 인정됨
- 그러나, 이 경우에도 6개월에 한해 예외가 인정되므로 6월 이내에 두 회사 중 하나의 회사는 상대회사 주식을 처분해야 함(법 제9조 제2항)

다. 법 위반시 제재조치

- 당해 행위의 금지, 주식의 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조치
-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날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 행사불가조치
- 위반한 금액의 10% 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2. 계열사간 채무보증 금지

가. 채무보증의 개념

-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대출과 지급보증)을 받을 때 동일 기업집단 소속 국내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을 말함
- 국내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되지 않은 기업과 기업간에 직접 행하는 보증은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 해외현지법인간 또는 해외현지법인과 국내법인간 보증도 법상 채무보증에 해당되지 않음

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합리화 기준에 따라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증
 - (1) 주식양도 또는 합병 등의 방법으로 인수되는 회사의 인수시점의 채무나 양도하기로 예정된 채무에 대하여 인수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2) 인수되는 회사의 채무를 분할 인수함에 따라 인수하는 채무에 대하여 계열회사가 행하는 보증
-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보증
 - (1)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업무)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기타 제품의 생산 또는 기술의 제공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출입은행이 행하는 대출 또는 이와 연계하여 다른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에 대한 보증
 - (2) 해외에서의 건설 및 산업설비공사의 수행, 수출선박의 건조, 용역수출 기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물품수출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이 행하는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유보금 환급보증, 하자보수보증, 또는 납세보증에 대한 보증
 - (3) 국내의 신기술 또는 도입된 기술의 기업화와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 및 기자재의 구입 등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에 대한 보증
 - (4) 인수인도조건수출 또는 지급인도조건수출 어음의 국내금융기관매입 및 내국신용장 개설에 대한 보증
 -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이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외국환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 해외 건설 및 용역사업자가 행하는 외국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
 - 기타 공정위가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사업

(6)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를 법원에 신청한 회사의 제3자 인수와 직접 관련된 보증

(7)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 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를 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 이 당해 계열회사에 행하는 여신에 대한 보증

- 공기업의 구조개편에 따른 분할로 인해 신설되는 자회사가 모회사인 공기업의 보증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해 재보증하는 경우

다. 탈법적 채무보증

- 다음의 행위는 탈법적인 채무보증에 해당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 국내 금융기관에 대한 자기 계열회사의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함이 없이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병존적 채무인수)
 - 다른 회사로 하여금 자기의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게 하는 대신 그 다른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채무보증을 하는 행위(교차 채무보증)

라. 법 위반시 제재조치

- 1) 관련채무보증의 해소 등 시정명령
- 2) 법 위반 채무보증액의 10%이내에서의 과징금 부과 및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탈법행위에 대해서도 형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3. 내부거래공시

1) 적용대상회사

- (1) 상장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되나, 해외현지법인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일지라도 포함되지 않는다.
- (2) 연도중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신규 편입된 회사는 신규 계열 편입된 날부터 적용된다.

2) 적용대상거래

-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로서 거래금액이 당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이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내부거래 행위
 - (1)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제표에 표시된 자본총계를 기준으로 한다.
 - (2) 자본금은 이사회 의결일의 전일의 자본금기준으로 한다.
- 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 (3) 적용대상거래는 특수관계인을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으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도 포함한다.
-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인수한 경우에도 내부거래에 해당된다.
- (4) 특수관계인이란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 동일인 관련자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려는 자를 말한다.

4. 기업결합

가. 개요

- 기업간 결합으로 하나의 기업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일정 한도까지는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국민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결합기업들이 독과점가격을 형성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경우 시장경쟁질서를 침해할 수 있음.
- 공정거래법은 모든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규제하고 있음
- 다만, 기업결합의 내용이나 방법을 심사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음.

나. 기업결합의 의의

- 인적, 물적, 자본적 결합을 통하여 개별 기업들을 동일한 관리체제하에 두어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형태
- 공정거래법은 모든 형태의 기업결합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결합이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경쟁제한적 기업결합¹임
 -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의 편의상 기업결합 신고대상회사가 기업결합행위를 하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 하고 있음

다. 기업결합의 유형

다. 1 결합회사간 관계에 따른 분류

- 수평형 기업결합 :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 수직형 기업결합 : 원재료의 생산이나 상품/용역의 생산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인접하는 단계에 있는 회사간의 결합
- 혼합형 기업결합 : 수평형 또는 수직형 기업결합 이외의 기업결합

1 기업결합에 의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이 어느 정도 자유로이 상품/용역의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의 기업결합

다. 2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기준에 따른 분류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 기업결합 당사자가 서로 특수관계인인 경우
 - 상대회사 임원총수의 3분의 1미만의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다만,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
 -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이하 '간투법'이라 한다) 제144조의2의 규정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를 기업결합하는 경우
 - 선박투자 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의 설립에 참여하는 경우
-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이외에 회사간 결합

라. 기업결합의 수단

- 주식취득
 - 법 제12조 ②, ⑤ 와 함께 검토
-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만 해당, 사후신고, 신고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상대회사의 임원으로 선임
- 합병 - 상법상 영업양도와 차이, 경영의 수임 포함
- 영업의 양수 - 분할합병 포함
- 새로운 회사의 설립 - 상대회사 개념, 사모투자전문회사

마. 기업결합의 신고

마. 1 신고대상회사

- 대규모 회사 :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² ⇒ 2 조원 이상
 - 일방 2,000 억원, 타방 200 억원 이상(령 제 18 조①, ②)
 - 외국회사 국내 매출액 200 억원 이상 (령 제 18 조 ③)
 - 관련법에 의한 투자 또는 지원 목적 기업결합, 관계중앙행정기관과 미리 협의한 경우(법 제 12 조 ③, ④) 신고 면제
- 자산총액 :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의미.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총액과 자본금 중 큰 금액을 말함
 - 매출액 : 기업결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을 의미. 다만,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 직전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영업수익을 말함
 - 결합대상이 되는 회사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규모가 200억원 미만인 경우 신고 불필요

마. 2 신고대상행위

구 분	내 용
주 식 소 유	다른 회사의 무의결권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20% (주권상장/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에는 15% 이상 취득시)
최 다 출 자 자	1 차 기업결합 신고 후 최다출자자가 되는 경우
임 원 겸 임	대규모회사의 임직원이 다른 회사 임원을 겸임하는 경우 (계열회사 임원 겸임 제외)
합 병·영 업 양 수	다른 회사와 합병 또는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
회 사 설 립 참 여	최다출자자만 신고

2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영업 양수의 경우 양도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는 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하지 아니한 규모를 말함

마. 3 신고시기

구분	신고의무자	기업결합 유형	신고시기
사전신고	대규모회사	주식취득/최대출자자	주식취득계약, 합병계약, 영업양수 계약 체결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결일로부터 기업결합 완료 전 신고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	
사후신고	대규모회사	임원겸임,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취득 합병, 영업양수	기업결합일(주식대금납입일, 합병 등기일, 영업양수대금지급일 등) 으로부터 30 일 내 신고
사후신고	사전신고 외의 모든 신고		

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바. 1 간이심사대상 기업결합

-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으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신고내용의 사실여부만을 심사함.
- 신고서류/절차도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보다 간소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 심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함.

바. 2 일반심사대상 기업결합

- 지배관계 형성여부 및 경쟁제한성 모두를 심사함.
-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기준
 - 합병 또는 영업양수의 경우 지배관계 형성 인정
 - 주식의 취득/소유의 경우
 - ① 취득회사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② 취득회사 등의 주식소유비율이 50% 미만이라도 주식소유비율이 1위이고
주식분산도로 보아 주주권행사에 의한 회사지배가 가능한 경우

- 임원겸임의 경우

① 취득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임원지위를 겸임하고 있는 자(겸임자)의 수가 피
취득회사의 임원총수의 3분의 1이상인 경우로서 취득회사 등이 피취득회사의 경
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② 겸임자가 피취득회사의 대표이사 등 회사의 경영전반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
사할 수 있는 지위를 겸임하는 경우

- 새로운 회사설립 참여의 경우 주식소유에 대한 지배관계 판단 준용

바. 3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심사

바.3.1 심사흐름

- 1단계 : 관련시장 (상품 / 지리적 시장) 확정 → 2단계 : 시장점유율 산정, 시장
집중도 평가 → 3단계 : 경쟁제한성 평가 (단독 / 협조 효과) → 4단계 : 해외경쟁
/ 신규진입조건 분석 → 5단계 : 효율성 효과 / 회생불가회사 항변 검토 → 6단
계 : 시정조치

바.3.2 경쟁제한성 심사기준

○ 수평형 기업결합

① 기업결합 전후의 시장집중도 추이, 다른 사업자의 신규진입 가능성, 해외경쟁
의 도입수준 및 국제적 경쟁상황,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사

② 취득회사 등과 피취득회사의 시장점유율 합계(시장집중도)가

- 50% 이상인 경우

- 3위 이내에 포함되고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 2위와의 점유율 차가 점유율 합 25% 이상인 경우

③ 경쟁제한성 평가

- 단독효과 : 결합 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를 하더라도 경쟁사
업자가 당사 회사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적시에 충분히 공급하기 곤란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 결합으로 인한 점유율 증가 폭, 경쟁사업자와의 점유율, 생산능력 격차, 타 경쟁사업자 제품으로의 구매 전환 가능성, 대량구매자 존재 여부 <사례> 삼익-영창피아노
- 협조효과 : 결합 후 경쟁자 감소 등으로 사업자간 가격·수량·거래조건에 관한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쉽거나 그 공동행위 이행 여부에 대한 감독 및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용이해지는 경우
- 경쟁사업자 주요 정보 공유 용이성, 상품 동질성, 합의 용이성

○ 수직형 기업결합

①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시장의 봉쇄효과를 중점적으로 고려함

② 시장의 봉쇄효과 심사기준

- 원재료 공급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 등 포함)의 시장점유율이 수평형 기업결합의 시장집중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원재료 구매회사(취득회사인 경우 특수관계인 등 포함)의 구매액이 당해 시장의 국내 총공급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수평형 기업결합의 시장집중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고려사항
 - i) 기업결합 목적
 - ii) 수출입을 포함 경쟁사업자가 대체적인 공급선·판매선을 확보할 가능성
 - iii) 경쟁사업자의 수직계열화 정도
 - iv) 당해 시장의 성장전망 및 당사회사의 설비증설 등 사업계획
 - v)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의한 경쟁사업자의 배제가능성
 - vi) 당해 기업결합에 관련된 상품과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시장 또는 최종 산출물 시장의 상황 및 그 시장에 미치는 영향

○ 혼합형 기업결합

①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잠재적 경쟁의 저해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려함.

② 잠재적 경쟁의 저해 심사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취득회사가 다음 요건의 하나에 해당하는 잠재적 진입자일 것
 - i) 생산기술, 유통경로, 구매계층 등이 유사한 상품을 생산하는 등의 이유로 당해 결합이 아니었다면 경쟁제한 효과가 적은 다른 방법으로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될 것

ii) 당해 거래분야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는 취득회사 등의 존재로 인하여 당해 거래분야의 사업자들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될 것

사. 위반시 제재

사. 1 시정조치

- 유형 : ① 당해 행위의 중지 ② 주식의 전부/일부의 처분 ③ 임원의 사임 ④ 영업의 양도 ⑤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⑥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의 폐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영업방식 또는 영업범위의 제한(일정기간 가격상승금지, 영업조직 및 인력의 분리운영) ⑦ 기타 법 위반상태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시정조치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식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사. 2 이행강제금

- 시정조치를 받은 후 정해진 기간내에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매 1일당 다음 각호의 금액에 부과비용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주식취득 또는 새로운 회사 설립에 의한 기업결합 : 취득 / 소유한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합병에 의한 기업결합 : 합병에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장부가격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영업양수에 의한 기업결합 : 영업양수 금액과 인수부채 총계

■ 이행강제금 부과비용 ■

기업결합금액	부과비용	산정방법(1일 기준)
1000억원 이하	2/10,000	기업결합금액X2/10,000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2/15,000	20백만원+1000억원 초과분X2/15,000
1조원 초과	2/20,000	140백만원+1조원 초과분X2/20,000

■ 임원겸임에 의한 기업결합 이행강제금 부과금액 ■

피겸임회사의 자산총액	단계별 부과금액(1일 기준)
1000억원 이하	100만원
1000억원 초과 1조원 이하	120만원
1조원 초과	140만원

사. 3 형사제재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및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기업결합 행위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 시정조치 위반자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업결합 신고의 미이행, 허위신고, 기업결합 신고후 이행행위 금지기간 위반 ⇒ 사업자는 1억이하,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은 1,000만원 하의 과태료

■ 사전신고위반 과태료기본금액 ■

구 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 자산 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75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1000만원	1200만원	1800만원
	2조원 이상	15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 사후신고위반 과태료기본금액 ■

구 분		상대회사의 자산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2천억원 이상 2조원 미만	2조원 이상
신고회사 자산 총액, 매출액 중 큰 금액	2천억원 미만	100만원	120만원	200만원
	2천억원 이상 2 조원 미만	120만원	150만원	250만원
	2조원 이상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제 5 절 - 공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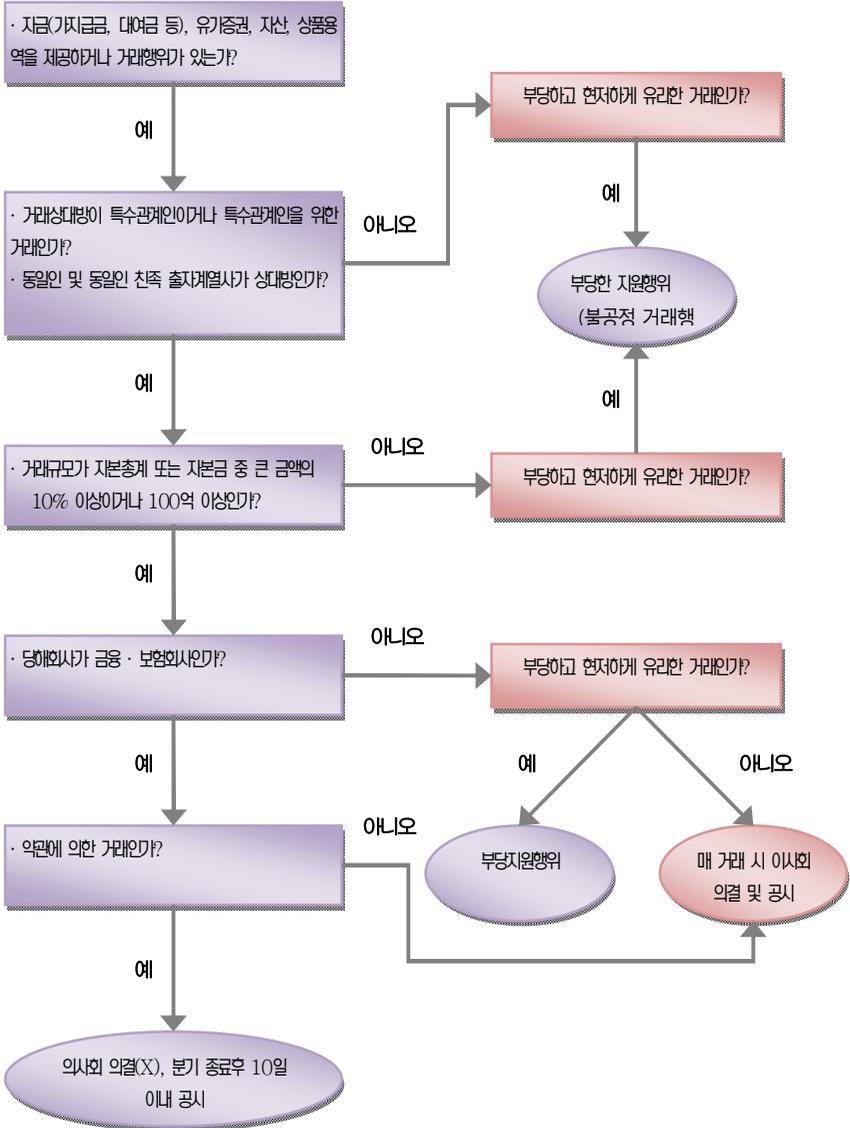
1. 대규모내부거래이사회 의결공시

가. 개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든 회사는
 - (1)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 (2)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과 용역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로서
 - (3)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 (4) 100억원 이상인 대규모 내부거래시에는 반드시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하여야 함

- 관련 법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제11조의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제17조의8】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3호, 2010. 6. 11】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6호, 2009. 12. 18】

■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업무 인식요령 ■



나. 내부거래 공시대상

-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를 말함
 -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비상장사도 포함
 - 해외현지법인은 내부거래 공시대상 회사에서 제외
- 양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거래인 경우 (1) 거래당사자 모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여야 하며 (2) 일방당사자에게만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방당사자만 이사회이결 공시의무가 발생함
- 당사가 특수관계인의 비영리법인과 대규모내부거래를 하는 경우, 당사는 이사회 의결공시의무가 발생함

다. 대규모 내부거래 유형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거래하는 행위와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혹은 그 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를 상대로 상품·용역을 제공·거래하는 행위로서,
- 자금거래란 회계처리상 계정과목을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있는 경우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금융상 편의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금 기타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유가증권거래란 (1)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자산거래란 (1)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2)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부동산 임대차 거래도 포함
- 상품·용역거래란? 회사의 상품거래, 용역서비스 제공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거래로서 손익계산서상에 매출액, 영업수익으로 계상되는 거래

라.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

- 대규모내부거래 기준금액은 (1) MAX [자본금, 자본총계] X 10% 이상이거나 (2) 100억원 이상인 경우

- 자본금이란 이사회 의결일 직전일의 자본금을 말함(이사회 의결일 이전에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금액을 자본금으로 봄)
- 자본총계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최근 사업연도말 재무재표에 표시된 자본총계

마. 거래금액

-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 공시규정 제4조 제2항)
 -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시에는 (1)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2)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대상에 대한 1건의 거래행위를 분할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1건의 거래행위로 봄
 - 상품·용역거래시에는 동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함
- 대규모 내부거래 여부의 판단기준, 공시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

일반적 거래	실제 거래하는 금액
부동산 임대차	연간임대료 + 환산 연간 임대료 (=보증금×이자율) 관리비는 제외 *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의미하며, 현재는 3.4%로 고시되어 있음(국세청 고시 제2009-9호)
담보제공	담보한도액
보험계약	보험료 총액

- 국세청 고시 이자율이 중간에 변동된 경우에는 (1) 최초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동안 변동한 경우에는 소급적용 하지 않으며, (2) 계약이 변경되거나 연장되는 경우 계약변경일 또는 연장일 기준으로 변경된 이자율을 적용함

바. 거래상대방

-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자금, 유가증권,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이란 (1)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이하 “동일인”), (2) 동일인 관련자(①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② 계열회사, ③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또는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④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계열회사의 임원 등), (3)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동 계열회사를 위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 위한 거래



※ 계열사 A가 발행한 주식, 채권을 비계열사를 통해 계열사 B가 매입하는 경우 계열사 B는 계열사 A를 위한 거래로서 공시의무 발생

사. 이사회 의결절차

-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상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하여야 함
- 상장법인이 상법 제393조의2(이사회 내 위원회)에 따라 설치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것으로 봄

다만, 이사회 내 위원회가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제3항 및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가 3인 이상 포함되고, 사외이사의 수가 위원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상법 제393조의2 제1항 : 이사회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 상법 제382조 제3항 :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商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함

아. 공시 시기

- 주권상장법인 : 이사회 의결 후 1일 이내
- 공시를 하여야 하는 마지막 날이 당해 회사의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초 영업일 까지 공시하여야 함
- 주요 내용 변경시 그 내용을 명기하여 공시
- 거래목적의 변경, 거래대상의 변경, 거래상대방의 변경(상호변경, 영업양수, 합병 등으로 변경시 이사회 의결대상에서 제외), 거래금액 및 조건이 당초보다 20% 증감할 경우 등
- 이사회 의결 후 공시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행위에 대한 특례(공시규정 제9조) ■

비금융·보험회사의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 분기별로 거래한도³를 정하여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가능⁴. 다만, 의결시 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목적 등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공시 : 의결결과는 의결후 7일 이내, 집행결과는 행위후 7일 이내
단, 만기와 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 거래시는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분기별로 일괄공시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의 의의
 - : 공개시장(장내시장)에서의 유가증권 거래, 수익증권을 증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등이 포함됨
 - : 주로 장외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채권거래의 경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포함됨

3) 거래한도는 분기 동안에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 거래할 금액의 누적합산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분기별 거래한도에는 제한이 없음

4)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의결 가능함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 예시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인 경우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가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주식을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 계열사 발행 유가증권을 계열금융사가 인수 / 매입하는 경우 · 채권(회사채, CP등)을 증권사가 계열사와 매매하는 경우 · CP 중계·인수·할인 등의 매매행위 · 수익증권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초단기 수익증권(MMF등)을 계열증권회사로부터 매입하는 경우 · 계열 생보사에 종퇴보험, 퇴직보험, 손해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 콜자금을 차입 또는 대여한 경우 · 투신사가 고객의 신탁재산으로 계열사 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사 주식을 장외시장에서 매매하는 경우 · 전환사채를 만기일전에 주식으로 중도 전환하는 경우 ·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 비금융사, 비보험사의 약관금융거래에 의한 특례 적용

구 분	초단기 수익증권 (MMF등)	기타수익증권 (CMA, 발행어음등)
거래한도 이사회의결공시	· 잔고금액기준 - 의결기간내 총누적잔액	· 100억원 이상 상회하는 예 상거래건수의 거래금액 누적 합산
사후공시	· 분기종료후 10일내로 분기별로 일괄공시	· 거래행위 이후 1일 이내
기준금액	1일 입금액	1회 입금액

※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내부거래(공시규정 제9조의2)

일괄공시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의를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의결결과는 1일 이내에 공시
변경공시	상품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에 실제 거래금액을 공시
분기중 공시	분기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 이사회의를결을 거친 후 공시

※ 이사회 의결과 공시의무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본금액(2009.12.18개정)

위반사항				기본금액(만원)
이사회 의결여부	공시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여부	
이사회 의결을 거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5,000
	공시한 경우	기한내 공시	누락한 경우	2,000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 (기일 초과 매1일당 10만원씩 가산, 5,000을 초과할 수 없다)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한 경우
	기한내 공시했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후 보완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7,000
	공시한 경우	기한내에 공시한 경우	-	5,0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5,000
			누락한 경우	7,000
허위로 공시한 경우				7,000
다음의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50%범위 내에서 가중함		· 공시의무를 회피하게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할하여 거래 한 경우 · 과거 3년간 5회 이상 공시의무의 위반으로 경고를 받거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6회 처분부터 위반 횟수 에 따라 1회당 10%씩 가중		

자. 상품 및 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 상품 또는 용역의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규정 제9조의2

일괄 공시	거래금액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하여 할 수 있음 ⇒ 의결결과는 상장법인은 1일 이내에 공시
변경공시	상품 용역의 실제 거래금액이 당초 공시한 거래금액보다 20%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분기 종료후 45일 이내 실제거래금액 공시
분기중 공시	분기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인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지 아니한 거래가 분기 중에 대규모 내부거래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기 중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

차. 유의사항

○ 상품용역 거래 공시 주의사항

(1)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대상거래 중 상품용역거래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공시회사들의 혼란 초래

- 거래 당사회사들의 영위업종이 상이할 경우, 일방은 상품·용역 거래에 해당하나 타방은 자금·자산 등의 거래인 경우가 다반사, 따라서 상품·용역거래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

☞ 지금까지의 예에서는 A사가 콘도나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회사로부터 콘도나 골프회원권을 구입하는 경우, 콘도·골프장 영위회사는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고 A사는 자산(유가증권) 거래에 해당하지만 A사도 상품·용역거래로 공시한 경우가 많음

(2) 상품·용역거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당해 거래를 회계적으로 매출액(영업수익) 거래로 인식하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

※ 기존에는 거래당사자 중 한쪽회사가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며 매출액(영업수익)으로 회계처리 되는 경우, 거래 당사자 모두 상품·용역거래로 보아 공시한 사례가 대부분

- A사가 업무용 사무실을 B사(건설업)에게 건설하도록 할 경우 A회사는 건설완공 전에는 '건설중인 자산', 완공 후에는 자산(건물)으로 회계처리하므로 자산거래에 해당하고, B사는 A사로부터 받는 건설대금을 매출로 처리하므로 상품용역거래에 해당
- 지주회사 A사는 자회사·손자회사들과 그룹 이미지·상표권 사용계약(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용 대금을 받는 경우, 지주회사는 무체재산권인 상표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회계처리상 영업수익으로 처리하므로 상품·용역거래에 해당하는 반면, 자회사·손자회사들은 지주회사의 무체재산권을 구입하는 것이므로 자산거래에 해당

○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

- 다른 의결 및 공시대상거래에 대한 권리의 행사 또는 의무의 이행 등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 행위 (공시규정 제4조⑤ 제1호)
- 채권·CP매입 또는 장단기 차입 후 이를 만기 상환하는 경우
- 상품·금융거래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할부금융이나 카드결제

카. Q & A

1. 회사는 비영리법인(특수관계인)에 시설건설 등을 위해 자금을 출연할 계획임. 출연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였는데, 법 제11조의2에 의거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해야 하는지 여부?

☞ 비영리 법인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조 제1호의 다.목)

따라서 비영리법인에 대해 출연금액이 100억원 이상이라면 회사는 이사회 의결 후 공시를 해야 합니다.

2. “특수 관계인을 위하여” 라는 거래에 대한 예시는?

☞ 계열사 A가 발행한 주식, CP등을 비계열 금융회사를 통하여 계열사 B가 인수하는 경우 등이며 이러한 경우 계열사 B의 직접적인 거래상대방은 비계열 금융회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A를 위하여 주식, CP등을 인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열사 B가 공시양식을 작성할 경우 거래상대방 란에는 거래를 중개한 비금융 계열회사를 기재하고 거래내역란 중 주식(또는 CP 등)의 발행자란에 계열사 A를 기재하면 됩니다.

3. A사 B사 C사는 동일기업집단 계열사, D사는 비계열사시 거래상대방은?

☞ 1. A사가 B사의 최초 발행 CP 200억원을 매입하는 경우 A사, B사 모두 공시의무 발생합니다(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

2. B사 발행 CP 200억원을 매입한 A사가 비계열사 D사(비특수관계인)에게 이를 매도하는 경우 A사, B사 모두 공시의무가 없습니다(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3. C사가 비계열사 D사로부터 D사가 ‘나.’의 사실과 같이 A사로부터 매입한 B계열사 발행 CP200억원을 매입하는 경우 C사만이 B사의 CP 200억원 인수와 관련하여 공시 의무가 발생합니다(C사는 특수관계인(B사)을 위한 거래에 해당, B사는 CP 최초 발행시 계열사가 참여하는 경우에만 공시의무 있으며 유통중에 계열사가 매입하는 매도하는 경우 공시 의무 없음)

4. C사가 보유중인 B사 발행 CP 200억원의 만기로 B사가 C사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는 하는 경우 이는 부수적인 거래로서 B, C 모두 공시의무가 없습니다(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제1호).

4. A회사가 계열사 B에 서울, 경기, 부산 3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1년 임대할 경우 거래금액 산정기준(공시규정상 임대료가 서울 50억원, 경기 40억원, 부산 30억원, A,B사 모두 자본총계가 1,000억원 이라고 가정)

⇒ 거래상대방이 같더라도 임대목적물, 계약기간 등 거래조건이 다른 경우에는 동일 거래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각 임대 목적물 별로 공시대상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각 임대목적물 별 거래금액이 100억원 미만이므로 모두 공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거래목적물 별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또는 거래목적물 전체에 대하여 하나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계약방식에 차이를 두더라도 동일 거래여부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5. A회사가 계열사 계약조건이 자동 연장되는 경우와 계약의 연장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 각각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해당 여부?

자동연장되는 경우	새로운 거래가 발생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공시규정 제4조 ④)
계약의 연장없이 그대로 두는 경우	- 특정한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그대로 두는 경우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음 - 특정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대로 두게 되어 계약연장의 효과가 있는 경우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있음

6. '내부거래 상대방회사'에 대해서는 예외가 있어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 공시의무가 면제되는 예외?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에서 제외되는 회사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와 증손회사(지주회사는 제외되지 않음)
--------------------------------	--------------------------------------

7. 상품용역에 대한 거래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가?

☞ 상품용역거래금액 산정시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8.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30%, B사 발행주식의 30%, C사 발행주식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 C사는 상장법인, B사는 비상장법인임)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상장법인인 경우 50%이상)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①의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B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②의 경우 B사, C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③의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9.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30%를, C사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0%(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2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는 비상장법인임)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회사는?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상장법인인 경우 50%이상)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①의 경우 A사, B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②의 경우 B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③의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10.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30%를, C사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0%(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30%)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는 상장법인, B사는 비상장법인임)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상장법인인 경우 50%이상)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 ① 경우 A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으나, B사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 ②의 경우 B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으나, C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있습니다.
- ③의 경우 A사, B사 모두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11. A사, B사 및 C사는 계열회사이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A사 발행주식의 40%를, C사 발행주식의 25%를 소유하고, A사는 B사 발행주식의 50%(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은 25%)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A사는 상장법인임)

- ①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B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②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B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하는 A사와 C사간의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회사는?

☞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가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이 발행주식의 30%이상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상장법인인 경우 50%이상)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인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상품용역거래를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합니다.

- ①, ②, ③의 모든 회사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12.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인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출액만 포함되는가?

☞ 동일인 및 동일친족 출자 계열회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상품용역거래의 거래금액은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매출액과 매입액 인식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릅니다.

분기에 이루어질 매출액과 매입액을 합한 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여야 합니다.

13. 부동산매매 행위가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어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한 이후, 추가적으로 거래가 있는 경우 추가거래 금액이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 당초 의결·공시한 행위와 추가로 발생한 행위간에 거래대상의 동일성 유무에 따라 대규모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래대상이 동일할 경우(예 : 동일 토지의 거래금액만 변경)에는 추가 거래금액이 당초 거래금액보다 20% 이상 변동이 있다면 다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거래대상이 다를 경우(예 : 당초 계약분 토지의 인접토지거래)에는 추가거래는 당초 거래와는 독립된 별개의 거래행위이므로 추가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부동산매매 계약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한 이후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도 별도 공시하여야 하는지?

☞ 중도금과 잔금 지급시에는 별도로 공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15. 부동산 임대차 계약시에는 대규모내부거래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임대차 금액이 상향조정 되어 대규모거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는지 여부?

☞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16.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시 공시 여부?

☞ 공시의무가 없습니다.

2.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제도

가. 개관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소속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소속 모든 상장비상장 회사)는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주식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분기별·연1회 공시하여야 함
- 공시제도의 운영 프로세스
 - ① 공시사항 작성: 개별회사(원칙) + 대표회사(예외)
 - 기업집단현황 공시는 기본적으로 소속 계열회사의 정보로 구성되는 만큼 개별회사가 자기회사의 공시내용을 작성
 - * 다만, 개별회사가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예: 계열사 제외, 청산중·휴업중인 회사에 대한 내용 등)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작성
 - ② 공시내용 취합: 대표회사
 - 기업집단 공시제도가 개별 계열회사의 정보를 취합한 것인 만큼 기업집단의 대표회사가 기업집단 전체 공시사항을 최종 취합
 - * 기업집단 스스로 대표회사를 선정하여 공정위에 신청·확인을 받음
 - ③ 공시주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모든 계열회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자기회사 공시사항 및 개별회사로부터 취합한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개별회사는 기업집단 전체 현황 중 자기회사 관련사항만 공시하고, 기업집단 전체현황은 대표회사 공시를 참조할 것을 기재(참조공시)

④ 공시사항 요약

〈항목별 공시내용 및 공시빈도〉

공시항목 (4)	공시내용(21)	빈도
일반현황 (5)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②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③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등 손익현황 ④ 해외계열회사 현황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연1회
임원, 이사 회 등의 운영현황 (2)	⑥ 임원의 성명, 직위, 선임일, 겸직사항, 동일인과의 관계 및 변동사항 ⑦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주주총회 관련 제도 등의 운영현황	연1회
주식소유현 황(3)	⑧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⑨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연1회 (단, ⑩은 분기)
계열회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현황 (11)	⑪ 계열회사로부터의 자금차입 현황 ⑫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⑬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⑭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⑮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⑯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⑰ 계열회사간 기타 자산거래 현황 ⑱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 대한 자산거래 현황 ⑲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채무잔액 현황 ⑳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㉑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분기 (단, ⑮, ⑯은 연1 회)

- 연1회 공시사항은 5. 31일 기한, 분기별 공시사항은 2, 5, 8, 11월말일 기한 내 공시

나. 공시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① 분기별 공시를 원칙으로 하되, 정보의 변경빈도, 기업의 작성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항목은 분기별 또는 연 1회 공시
 -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은 분기별 공시(상기 ⑩~항목, 다만 ⑮, ⑯ 제외)
 - 상품·용역거래(⑮, ⑯) 및 채권채무잔액 현황은 연 1회 공시
 -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연 1회 공시(상기 ①~⑨항목)
- ② 분기별 공시사항은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2, 5, 8, 11월말일)에, 연 1회 공시사항은 1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5월 31일)까지 공시
 - 계열회사별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공시

다. 공시항목별 공시의 시기·방법 및 절차

- ① 회사명, 대표, 영위업종, 종업원수 등 회사의 개요
 - 공시주체: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회사의 대표자, 설립일, 계열편입일, 업종, 종업원수, 기업 공개여부, 결산일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공시기준일: 공정위의 당해 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함 (결산일이 6, 9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말 기준)
- ②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부채비율 등 재무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회사의 자산(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타 당좌자산, 자산총계), 부채(사채, 차입금, 부채총계), 자본(자본금, 자본총계) 및 부채비율(부채총계/자본총계)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사업연도 말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작성)
 - 공시기준일: 공정위의 당해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함 (결산일이 6.9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말 기준)

③ 회사의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등 손익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회사의 매출액, 영업외 손익, 영업이익, 이자비용, 당기 순이익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사업연도 말 결산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백만 원 단위로 작성)
- 공시기준일: 공정위의 당해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함 (결산일이 6, 9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말 기준)

④ 해외계열회사 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해외계열사에 대한 최다출자자)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해외계열사의 회사명, 업종, 내부지분율, 소재국, 결산일, 최다출자자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내부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지분율에 한하여 계산, 기타 작성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준칙'을 따름)
- 공시기준일: 공정위의 당해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함 (결산일이 6, 9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말 기준)

⑤ 계열회사 변동내역

- 공시주체: 계열회사 편입내역은 개별회사가 작성하고, 계열회사 제외내역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작성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계열회사 변동내역을 편입과 제외로 구분하여 계열회사명, 변동사유, 변동일자, 업종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국내 계열회사 및 해외 계열회사의 변동내역을 작성)
- 공시기준일: 공정위의 당해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함 (결산일이 6, 9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말 기준)

⑥ 임원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회사 임원의 성명, 직위, 사외이사 여부, 등기일, 동일인과 친족관계 여부, 겸직사항(계열사와의 겸직여부 등), 주요경력, 전기대비 변동사항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된 이사 및 감사에 한하여 작성)

※ 공시기준일: 당해 연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

⑦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등의 운영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이사회 운영현황(회사 이사회의 구성원명, 이사회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 및 총 사외이사 수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

- *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운영 현황[회사 이사회 내 위원회의 명칭, 구성원명, 설치목적 및 권한,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 참석인원 및 총 사외이사 수 등을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하며 상법 제393조의2에 따른 위원회(예, 경영위원회, 감사위원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에 한하여 기재하고 위원회가 해당기간 중 실제 회의를 개최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기간 중 설치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포함하여 기재]

- *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회사가 상법상 집중투표제(법 제382조의2), 서면투표제(법 제368조의3) 및 전자투표제(법 제368조의4) 등을 도입·시행하는지 여부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하며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등을 배제하지 않고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도입한 것으로 봄]

- 공시기준일

-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등의 구성원명은 당해 연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예, 2010년 5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10년 4월 30일 현재 이사회 등의 구성원명을 기재)

- * 이사회, 이사회 내 위원회 등의 회의개최실적 등은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 연도 4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예, 2010년 5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기간 중 이사회, 위원회 등의 운영실적을 기재)

- * 기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관련제도 운영현황은 당해 연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도입·시행 여부 기재(예, 2010년 5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10년 4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중투표제 등의 도입·시행 여부 기재)

⑧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피출자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피출자회사(공시회사)가 발행주식 중 당해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현황을 주주의 범주 별로 구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주주의 범주는 크게 동일인 측 합계, 기타 합계, 총계로 구분하고 동일인 측은 세부적으로는 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 혈족 2~4촌, 혈족 5~6촌, 인척 4촌 이내, 비영리법인, 임원, 자기주식, 계열회사 범주로 구분하며 보통주, 우선주, 합계(=보통주+우선주)로 구분한 주주 범주 별 보유주식수 및 보유지분비율과 주식의 액면가액에 보유주식수 합계를 곱한 출자금 등을 기재하며 피출자회사의 총 발행주식수, 자본금을 기재하며 금액은 백만 원단위로 기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주식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주주 범주 별로 모든 계열회사의 출자금 합계, 계열사 총 자본금 대비 계열사 출자금 합계의 비율을 기재
- 공시기준일: 당해 연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예, 2010년 5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10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⑨ 최대주주의 주식소유 상세내역

- 공시주체: 개별회사(피출자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피출자회사(공시회사)가 최대주주의 주식소유현황을 개별 주주 별로 구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최대주주 명, 동일인과의 관계, 보통주, 우선주, 합계(=보통주+우선주)로 구분한 주주 별 보유주식수 및 보유지분비율을 기재하며 ‘최대주주란 당해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를 말하며, 최대주주는 동일인 뿐만 아니라 동일인 관련자를 모두 포함하며 자기주식은 최대주주에 포함하여 계산(자기주식이라고 표시)하며 보유주식수 및 보유지분비율 계산방식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주식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최대주주의 주식소유상세 내역을 취합하여 기업집단 전체 현황을 공시
- 공시기준일: 당해 연도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

⑩ 계열회사간 주식소유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출자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출자회사(공시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등의 발행주식 현황을 각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 기간까지 공시[보통주, 우선주, 합계(=보통주+우선주)로 구분한 계열회사별 보유주식수 및 보유지분비율과 주식의 장부가액에 보유주식수 합계를 곱한 출자금 등을 기재하며 직전 분기말 장부가액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예, 직전 분기 중에 주식 취득)에는 취득가를 기재, 다만, 공시정보 이용자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주석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하며, '전체 회사(계열회사+기타회사)에 대한 출자금(장부가액 기준) 합계' 및 '계열회사를 제외한 기타 회사에 대한 출자금(장부가액 기준) 합계'를 기재하며 보유주식수 및 보유지분비율 계산방식은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 공시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주식소유현황을 기준으로 작성]
 -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주식소유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계열회사간 출자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공시기준일: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예, 2009년 8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

⑪ 계열회사로부터 자금차입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차입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차입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계열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각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에 공시[자금차입약정 등을 통한 차입금에 한하여 기재하며, 사채·기업어음 등 유가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기재하지 않으며 차입한 금액을 순액

(net)이 아닌 총액(gross)으로, 백만 원 단위로 기재(기간내 차입금액 중 일부를 상환한 경우에도 상환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예, 2009년 2분기동안 동일 계열회사로부터 100억 원을 차입한 후 같은 분기동안 30억 원을 상환한 경우에도 100억 원으로 기재)하며 해당 기간동안 순수한 신규차입이 아니더라도 만기연장된 경우에는 만기연장금액을 신규차입금으로 간주하여 합산 기재하되, 만기 연장된 금액을 괄호 안에 주기하고 이를 설명(예, 2009년 4월 1일에 1개월 만기로 100억 원을 차입한 후, 5월 1일에 이를 상환하지 않고 만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총200억 원을 차입한 것으로 보고 '200억 원(100억 원)'으로 기재)하며 '전체(계열회사+기타) 차입금액 총계' 및 '기타(계열회사 이외) 차입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

-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차입금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자금 차입·대여 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공시기준일: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예, 2009년 8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⑫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대여 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대여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대여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에 공시[범주는 동일인 등(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 친족(혈족6촌, 인척4촌 이내. 배우자·혈족1촌은 제외), 임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하며 대여금액을 순액(net)이 아닌 총액(gross)으로, 백만 원 단위로 기재(기간내 대여금액 중 일부를 상환받은 경우에도 상환받은 금액을 차감하지 않음. 예, 2009년 2분기 동안 동일인에게 100억 원을 대여한 후 같은 분기동안 30억 원을 상환받은 경우에도 100억 원으로 기재)하며 해당 기간동안 순수한 신규대여가 아니고 만기연장된 경우에는 만기연장금액을 신규대여금으로 간주하여 합산 기재하되, 만기 연장된 금액을 괄호안에 주기하고 이를 설명(예, 2009년 4월 1일에 동일인에게 1개월 만기로 100억 원을 대여한 후, 5월 1일에 이를 상환받지 않고 만기 연장한 경우에는 총200억 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200억 원(100억 원)'으로 기재)]

- 공시기준일: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2009년 8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⑬ 계열회사간 유가증권거래 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유가증권 매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매도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 동안 계열회사 등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거래 금액을 각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 말일) 이내에 공시[유가증권은 주식, 회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포함), 기업어음(CP) 등 거래대상이 되는 증권을 의미하며 계열회사를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유가증권을 제공하거나 발행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순액(net)이 아닌 총액(gross)으로 하여 작성하되, 백만 원 단위로 기재하며 '전체(계열회사+기타) 유가증권 거래금액 총계' 및 '기타(계열회사 이외) 유가증권 거래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
 -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유가증권 매도·매입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공시기준일: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2009년 8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⑭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거래 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유가증권 매도·매입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유가증권 매도거래 현황[매도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거래금액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에 공시하며 공시범주는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친족(혈족6촌, 인척4촌 이내, 배우자·혈족1촌은 제외), 임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하며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순액(net)이 아닌 총액(gross)으로 하여 작성하되, 백만 원 단위로 기재]

* 유가증권 매입거래 현황[매입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 동안 동일인 및 동일 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로부터 매입한 유가증권 거래금액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직전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에 공시하며 공시범주는 동일인 등(동일인·배우자·혈족1촌), 친족(혈족6촌, 인척4촌 이내, 배우자·혈족1촌은 제외), 임원·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하며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한 금액을 기준으로 순액(net)이 아닌 총액(gross)으로 하여 작성하되, 백만 원 단위 기재]

- 공시기준일: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2009년 8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⑮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상품·용역 매출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상품·용역매출회사(공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동안 계열회사 등에게 판매한 상품·용역 거래금액을 각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품·용역매출액(비금융회사의 경우 매출액, 금융회사의 경우 영업수익 등)을 기재하며 순액(net)이 아닌 총액(gross)을 기준으로 백만 원 단위로 기재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으로 하며 '전체(계열회사+기타) 매출액 총계' 및 '기타(계열회사 이외) 매출액 합계'를 각각 기재]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상품·용역 매출·매입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공시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결산일이 6, 9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함. 예, 2010년 5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결산일이 12월인 법인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을, 결산일이 3월인 법인은 2009년 4월 1일부터 2010년 3월 31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⑯ 계열회사간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 공시주체: 개별회사(상품·용역 매출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매출회사(공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동안 계열회사에게 판매한 상품·용역거래의 세부내역을 거래 건별로 구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공시대상 상품·용역거래는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기준이 다르며(즉 상장사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기준*에 해당되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을 받은 거래의 세부내역을 작성 - 동일 거래상대방에 대한 상품·용역거래의 분기합계액이 공시의무회사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 이상 또는 100억 원 이상, 비상장사는 공정거래법상 비상장사 공시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거래의 세부내역을 작성 - 직전 사업연도동안 개별 계열회사와 이루어진 상품·용역거래 금액이 공시의무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 계열회사와의 단일 계약건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단일 계약금액이 전체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의 5% 미만인 경우에는 이들을 합산하여 기재 가능(예, 전체 계열회사에 대한 연간 매출액이 100억 원인 A사가 B사와 체결한 2개의 상품판매계약의 거래금액이 각각 2억 원, 1억 원인 경우에는 합계(3억 원)가 5억 원(100억 원의 5%) 미만이므로 이를 1건으로 간주하여 작성)하며, 공시대상 상품·용역거래의 거래상대방, 거래업종, 거래대상, 거래내용(물량, 단가, 대금지급조건 등) 거래금액 등을 기재하며 순액(net)이 아닌 총액(gross)을 기준으로 백만 원 단위로 기재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금액으로 함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주요 상품·용역거래 내역 중 거래금액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기재

- 공시기준일: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결산일이 6, 9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함)

⑰ 계열회사간 기타자산거래 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기타자산 매도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매도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계열회사 등에게 매도한 기타자산 거래금액을 각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에 공시[기타자산은 자금, 유가증권, 상품·용역을 제외한 자산(부동산, 무체재산권 등 유·무형자산)을 의미하며 순액(net)이 아닌 총액(gross)을 기준으로 백만 원 단위로 작성하며 '전체(계열회사+기타) 기타자산 거래금액 총계' 및 '기타(계열회사 이외) 기타자산 거래금액 합계'를 각각 기재]

-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기타자산 거래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 별로 합산하여 기타자산 매도·매입현황을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공시기준일: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2009년 8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⑩ 특수관계인에 대한 기타자산거래 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기타자산 매도·매입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기타자산 매도거래 현황[매도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기타자산 거래금액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직전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에 공시 - 공시범주는 동일인 등(동일인, 배우자, 혈족1촌), 친족(혈족6촌, 인척4촌 이내, 배우자, 혈족1촌은 제외), 임원, 비영리법인 등으로 구분하며, 순액(net)이 아닌 총액(gross)을 기준으로 백만 원 단위로 작성]
 - * 기타자산 매입거래 현황[매입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동안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계열회사 제외)로부터 매입한 기타자산 거래금액을 범주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에 공시]
 -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기타자산 매도, 매입거래 현황을 각각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범주별로 합산
- 공시기준일: 직전 분기 개시일부터 직전 분기 종료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예, 2009년 8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작성)

⑪ 계열회사간 거래에 따른 채권(債權), 채무잔액 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채권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 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채권회사(공시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계열회사 등과의 거래로 인한 채권(債權)잔액을 각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공시[거래상대방과의 자금·유가증권, 상품용역, 기타자산거래로 인해 발생하여 장래에 대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산의 금액(채권금액)을 백만 원 단위로 기재(예, 외상 매출금, 미수금, 선금금, 대여금, 회사채, 기업어음 매입액 등)하며, 거래상대방

별 채권잔액을 기재하되, 상품용역·자산 등 실물거래로 인한 채권(외상매출금 등) 잔액이 아닌 순수한 금융거래로 인한 채권(대여금, 회사채 매입액 등) 잔액은 별도 기재(예, A사의 B사에 대한 채권잔액 1,000억 원이 매출채권 200억 원, 미수금 100억 원, 대여금 300억 원, 회사채(B사 발행) 400억 원으로 구성된 경우, A사는 '1,000억 원(700억 원)'으로 기재하며, '전체(계열회사+기타) 채권잔액 총계' 및 '기타(계열회사 이외) 채권잔액 합계'를 각각 기재]

-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채권잔액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채권, 채무잔액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공시기준일: 공정위의 당해 연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함(결산일이 6, 9월에 속한 경우에는 직전 년도에 속한 사업연도 말 기준)

㉔ 계열회사간 상호채무보증 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보증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보증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금액을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에 공시- 채무보증금액은 건별 보증약정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백만 원 단위로 기재 - 보증약정금액을 채무보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채무보증약정일 이후 여신의 발생이 없었다 하더라도 채무보증금액으로 기재하며 외화표시 채무보증금액은 공시기준일 현재의 금융결제원 고시 기준 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다만, 회사에 별도로 적용하는 기준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 가능)]
 - *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보증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말 현재 공정거래법상 제한되는 채무보증 이외의 채무보증금액을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에 공시]
 -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채무보증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합산하여 채무보증현황 매트릭스 형태로 작성
- 공시기준일: 직전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예, 2009년 8월 31일 기한 공시의 경우 2009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작성)

㉔ 계열회사간 담보제공 현황

- 공시주체: 개별회사(담보제공회사)가 작성·공시하되, 기업집단 전체 현황은 기업집단 대표회사가 취합·공시함
- 공시내용 및 공시시기:
 - * 담보제공회사(공시회사)가 직전 분기말 현재 계열회사에 대한 물적담보 잔액, 내용, 제공사유 등을 계열회사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종료후 2개월(2월, 5월, 8월, 11월말일) 이내에 공시
 - * 기업집단 대표회사는 개별회사가 작성한 담보제공 현황을 각각 계열회사별로 취합하되 전체 금액을 합산하여 공시
- 공시기준일: 직접 분기말을 기준으로 작성

라. 실무담당자 유의사항

- 분기별로 공시하여야 함 단,
 - 계열시간 주식소유현황 및 특수관계인가의 거래현황은 분기별 공시
 - 상품 및 용역거래와 채권채무잔액은 연 1회 공시
 - 일반현황, 임원 및 이사회 등 운영현황,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현황은 연 1회 공시
- 분기별 공시사항은 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2, 5, 8, 11월말)에 공시하고 연 1회 공시사항은 1분기 종료 후 60일 이내(5월 31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마. 위반시 제재

□ 과태료 기준 주요내용

위반 유형			과태료금액(단위: 만원)
공시 여부	공시기한 준수여부	공시사항 누락여부	
공시하지 아니한 경우	-	-	1,000
공시한 경우	기한 내에 공시한 경우	누락한 경우	500
	기한을 넘긴 경우	누락하지 않은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 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누락한 경우	1,000
	기한내에 공시하였으나 누락된 공시사항을 공시기한이 지난 후 보완한 경우		100 (공시기한을 넘기는 날의 다음날부터 1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되,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

3. 비상장사 등의 중요사항 수시 공시제도

가. 개관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비상장법인은 소유지배구조(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현황, 임원의 변동현황, 계열사의 주식보유 변동현황), 재무구조(고정자산 및 다른 법인주식의 취득 또는 처분, 증여,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채무면제 또는 채무인수, 증자 또는 감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등), 경영활동(영업양도 또는 양수, 임대, 합병, 주식교환 또는 이전, 해산, 회생절차 개시, 종결 또는 폐지, 관리절차의 개시, 중단 또는 해제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시하여야 함

□ 수시 공시사항

- 최대주주와 주요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변동사항, 임원의 변동 등 회사의 소유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을 때에 그 변동사항(지분율 1% 이상 변동, 보유자 변동 등)
 -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임원변동 등기)
 -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의 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 사항(지분율 1% 이상 변동, 보유자 변동 등)

①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

- 최대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및 최대주주가 다수인 경우 각각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을 때
 - (1) 최대주주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동일인, 동일인의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이 보유한 지분 및 자기주식을 각각 구분하여 적시함
 - (2) 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 사유는 불문함
 - (3) 최대주주의 주식수나 지분율 변동이 없을 경우에도 최대주주 구성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공시

(4) 다만, 액면분할 등에 의해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최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 및 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없음

- 공시사유 발생일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주권을 교부받은 날. 다만, 주권이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식대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며, 주권을 교부받기 전 또는 주식대금의 전부를 지급하기 전에 합의·계약 등에 의하여 의결권 기타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당해권리가 이전되는 날

(2) 주식회사의 신주를 유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대금의 납입기일의 다음 날

(3) 주식회사외의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지분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4)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사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② 임원의 변동사항

- 등기부 등본에 임원의 변동사항이 등재된 때 공시

- 임원이 중임하는 것은 공시대상이 아니며,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

(예 : 이사→감사, 이사→대표이사)는 공시대상임

- 변경된 임원만 공시할 경우 임원수가 줄어들거나 늘어날 경우 공시이용자의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시양식에 따라 전체임원을 대상으로 해임(사임)된 임원과 선임된 임원을 동시에 확인이 가능하도록 공시

- 공시사유 발생일

* 등기부 등본에 임원의 변동사항이 등재된 날

③ 계열회사 주식보유 변동사항

- 계열회사 보유주식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의 변동이 있을 때 및 보유주식수나 지분율에 변동이 없을지라도 회사가 변동된 경우 공시(합병, 신주발행, 주식매각 등 변동 사유는 불문함). 다만, 액면분할 등에 의해 보유주식 수에 변동이 있더라도 보유지분율이 변경되지 않으면 공시의무 없음

- 계열회사는 국내계열회사에 한정(해외현지법인의 주식취득 등의 경우에는 계열회사 지분변동이 아닌 타법인 지분 취득 등에서 공시하여야 함)

- 공시사유 발생일

※ 최대주주 주식변동사항과 동일

④ 고정자산 취득 또는 처분

-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건설 중인 자산, 투자자산 등의 취득·처분도 공시대상임 (*재고자산은 공시대상 아님)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함)을 통한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 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함)를 통한 취득·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공시사유 발생일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 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

⑤ 다른 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또는 처분

-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다른 법인(국내 계열회사를 제외)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국내 계열회사만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외법인(계열회사 및 비계열회사)의 주식 취득 또는 처분은 모두 공시대상에 포함됨
- 공시사유 발생일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 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

⑥ 증여 또는 수증

- 자기자본의 100분의1 이상의 증여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타인에게 주는 모든 행위를 의미

- 공시사유 발생일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 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

⑦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비상장회사의 채무보증은 공정거래법 10조의2에서 말하는 채무보증과는 다른 개념으로서 채무보증인 사항은 모두 포함됨

- 공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1) 입찰·계약·하자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

(2) 타인과 관계없이 자사의 대출과 관련한 담보제공

-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에서 “타인”은 모든 법인격을 가진 주체를 말함

(1) 해외법인이나 해외현지법인 등도 해당

- 공시사유 발생일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 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

⑧ 채무면제 또는 인수, 채무면제 받기로 한 결정

-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자기자본의 100분의5 이상의 채무를 타인으로부터 면제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공시사유 발생일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 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

⑨ 증자 또는 감자

- 증자 또는 감자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증자 또는 감자는 기준금액이 없으므로, 해당 결정이 있을 때는 금액에 상관없이 공시대상임(증자나 감자 결과, 추가적으로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이 공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대주주의 지분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시사유 발생일
 -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 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

⑩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모든 사채가 아니며, 추후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에 한정됨
- 공시사유 발생일
 -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 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

⑪ 영업 양도·양수, 임대 등

- 상법 제374조에 의한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공시사유 발생일
 -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 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

⑫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사항

- 법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제527조의2(간이합병)·제527조의3(소규모합병)·제530조의2(회사의 분할·분할합병)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자사의 합병 및 분할 결정뿐만 아니라 최대주주나 계열회사의 합병 및 분할 등의 결과, 추가적으로 “최대주주의 주식보유 변동사항” 혹은 “계열

사주식보유 변동사항”이 공시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지분변동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공시사유 발생일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 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

⑬ 주식교환 또는 이전

-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상법 제360조의15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공시

- 공시사유 발생일

※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기타 사실상의 권한이 있는 임원·주요 주주 등의 결정이 있을 때(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내의 위원회의 결의를 포함)

□ 삼성코닝정밀유리(주)의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위반(2009.1.9)

○ 계열회사인 삼성코닝(주)를 흡수 합병하면서, 2008. 1. 17. 같이 계열회사인 글로벌텍(주)와 아이마켓코리아(주)의 주식을 삼성코닝(주)의 소유에서 피심인의 소유로 명의 변경함으로써 그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각각 51.0%, 5.2% 변동되어 계열회사 보유주식비율이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1 이상 변동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인 2008. 1. 24. 까지 계열회사 보유주식 비율 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SK건설(주)의 비상장사의 중요사항 공시 의무위반(2008.1.25)

○ 피심인은 2006. 4. 6. 이사 김명종, 진영현 및 김영남에 대하여 사임등기를, 이사 김진범에 대하여 취임등기를 함으로써 임원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공시기한인 2006. 4. 13.까지 임원변동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나. 위반시 제재

□ 중요공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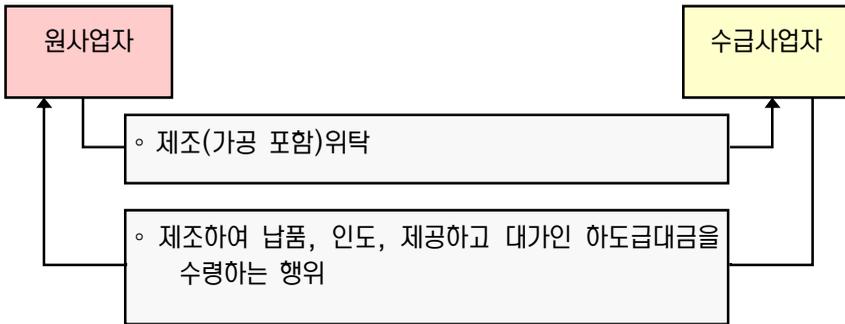
위반사항	과태료(만원)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공시한 경우 또는 허위로 공시한 경우	1,000
주요내용을 누락한 경우	500
공시사유발생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공시한 경우	100 (기일 초과 매1일당 5만원씩 가산)

제 6 절 - 하도급법

1. 규제목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관계는 경제력, 사업규모, 시장지배력 등의 차이로 말미암아 지배·복종의 귀속관계로 되는 경우가 빈번한 바, 수급사업자의 교섭력을 보완하고 원·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이고 불공정한 거래관계를 대등한 협력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하도급거래란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業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業에 따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 물품의 제조
- 물품의 판매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판매를 업으로 하는 경우〉

① 판매의 대상이 되는 완제품(OEM거래포함)을 제조위탁

: 여기서, 위탁범위의 판단기준은 위탁내용이 위탁사업자의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함

〈예시〉

- 위탁 받은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신제품을 위탁사업자의 승인 하에 제조하는 경우
 - ② 물품의 제조·수리과정에서 투입되는 중간재(원자재, 부품, 반제품 등)를 규격 또는 품질 등을 지정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
 - : 판단기준은 완제품의 제조에 투입되는 부품 등을 규격을 지정하여 주문 제작한 것을 의미
 - : 다만, 이 경우에도 대량생산품목으로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것은 제외
 - ③ 물품의 제조과정에서 도장작업, 가공, 조립, 주단조, 도금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가. 제조위탁

가. 1 제조위탁 관련 여러 개념 정의

- 「제조위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규격·품질·성능(性能)·형상(形狀)·디자인·브랜드 등을 지정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를 의뢰하는 경우를 말함
- 「업(業)으로서」: 사업자가 어떤 행위를 반복·계속적으로 행하고 있어, 사회통념상 사업의 수행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말함
- 「제조」: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해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하며, 「가공」이란 원재료인 물품에 일정한 공작(工作)을 가함에 의해 일정한 가치를 부가시키는 것을 말함
- 「물품」: 동산을 말하며 부동산을 포함하지 아니함. 물품 그 자체의 제조위탁은 일반적으로 제품외주 또는 완성품 외주로 불리는 하도급거래임
- 「반제품」: 목적물인 물품의 제조과정에 있는 제조물을 말함
- 「부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 상태로 장치하여 물품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제조물을 말함
- 「부속품」: 목적물인 물품에 그대로 장치(裝置)시킨다든지 목적물인 물품에 부속시킴에 의해 그 효용을 증가시키는 제조물을 말함. 예를 들면,

- 상품이나 제품에 부착시키는 명판, 라벨 등
- 상품이나 제품을 사용할 시 등에 필요한 취급설명서, 품질보증서, 보호카바, 수납 케이스 등
- 상품이나 제품과 일체로 판매되는 용기 및 포장용 물품 등
- 「원재료」: 목적물인 물품을 만드는데 기본이 되는 자료(원료, 재료)를 말함
-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 「물품 또는 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당해 물품 등의 형상을 본뜬 금속제의 물품을 말함. 나아가 금형의 제조를 위탁한 원사업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스스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에 대해 그 금형을 사용하여 제조케 하려고 위탁하는 경우의 금형도 포함
- 규격품·표준품을 구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조위탁의 대상이 아니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규격품·표준품일지라도 그 일부에 원사업자를 위해 가공 등을 시킨 경우에는 대상이 되며, 나아가 카탈로그 제품 등일지라도 범용성이 낮아 하도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위탁을 받을 때부터 제조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조위탁」에 해당
- 또한, 제조설비를 가지지 않아, 제조를 하지 않는 사업자가 그 판매하는 물품에 관한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의뢰하는 것도 「제조위탁」에 해당

가. 2 제조위탁의 유형

- 유형 1 : 물품판매를 하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제품, 중간제품, 특별주문재료 등의 제조·가공외주, 제조공정 중의 검사·운반 등의 작업외주 등이 여기에 포함. 나아가 판매하는 물품의 부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금형도 해당
- 또한, 판매하는 물품의 부속품(취급설명서·보증서, 용기, 포장재료, 라벨 등)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도 해당
- 사업자가 「물품의 판매」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들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포함)를 위탁하는 경우에, 조립외주(제품조립, 완성품 조립 등), 가공외주(기계가공, 프레스·판금 등), 부품외주(스프링 등), 금형외주 등이 포함

- 유형 2 : 물품의 제조를 도급 받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제품에 관해 수주생산하고 있는데, 그 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 즉, 사업자가 「물품의 제조·가공」을 도급 받고 있는 경우에 그 물품(그 반제품, 부품, 부속품, 원재료 및 이러한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을 포함)의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경우
- 유형 3 : 물품의 수리를 하고 있는 사업자가 그 물품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또는 원재료의 제조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예를 들면, 자사에서 수리하고 있는 기계수리에 필요한 특수부품의 제조 또는 가공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

가. 3 제조위탁의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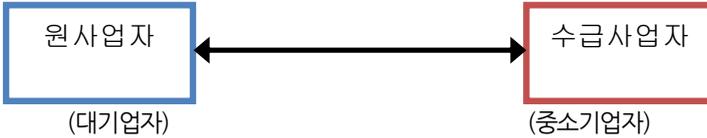
- 샘플 등에 의해 단순 주문한 대량생산품목, 생산설비·장비 등은 제조위탁에서 제외됨

나. 하도급법상의 하도급의 정의

- 하도급법에서 정한 하도급이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수리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 수리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을 하고, 이를 위탁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 받은 것을 제조 또는 용역 수행하여 이를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하도급대금)를 수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도급법 제2조 제1항 참조)
- 당사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에는 제조위탁이 있음
- 또한, 반드시 원도급거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며, 발주자인 동시에 원사업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음. 즉, 형식상 (원)도급관계로 보이지만 도급인이 자신이 직접 제조, 용역서비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그 중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임. 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성에 착안하여 “그 업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를 “하도급거래”로 보고 있음

3. 법적용 대상

가. 법 적용 대상사업자



- 중소기업자로 편성되어 있다 대기업자로 분류된 업체는 3년간 중소기업자로 인정함
- 외국인 투자기업일지라도 국내에 제조사업장을 가지고 있을 경우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됨
- 당사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제출하는 사업자 등록증 상에 나타난 '업태'에 '도매, 소매' 혹은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고 당사에 표준품이나 시장품을 납품하는 업체라 해서 전부 하도급법 제외 대상인 것은 아님
 - 즉, '당사가 요구하는 SPEC'에 의해 제조, 납품했느냐 하는 점에 의해 구분되어야 함
 - ※ 대·중소기업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이유와 그 중요성?
 - : 공정위 하도급 조사시 기본이 되는 것은 조사 대상 범위의 확정임. 즉, 대기업자인지 혹은 중소기업자인지 정확히 구분되어야 수검 시 대응활동이 원활할 것임
 - : 그러나 하도급 조사의 수검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사업장, 어느 사업부를 살펴봐도 수급사업자의 구분을 평소에 명확히 실시하지 않고 있어, 하도급 조사에 대비해 先 조치를 하면서 주지 않아도 될 지연이자 혹은 물대를 불필요하게 선지급하거나 조사 범위의 확대 等으로 인한 업무 LOSS 및 조사시 능력 대응으로 조사관들의 불신을 초래해 원활한 조사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임

나. 법적용대상 기간

- 하도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당해 하도급거래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건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다만, 신고사건의 경우 3년 이내에 신고된 사건은 3년이 경과하여도 조사가 가능(법 제23조)

- 여기서의 “거래종료일”이란, 제조위탁은 목적물을 납품한 날을 의미
- 다만, 하도급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거나 중지된 경우에는 해지 또는 중지된 날을 말함

4. 하도급거래 단계별 하도급법상의 규제내용

가. 하도급 계약 체결단계

가. 1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의무

- 구두발주 시에 야기될 다양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원사업자는 발주 시 발주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해당하는 것을 모두 결정한 상태에서 기재할 필요가 있음
 -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명칭, 위탁한 일,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기일,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장소,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검사를 한 경우는 검사완료 기일,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 금액과 어음 만기, 원재료 등을 유상 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가/인도기일/결제기일/결제방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및 협의내용,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2008. 9. 30일부터 시행)**
 - 단,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서면의 양식을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내용에 따라 적절한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됨. 중요한 것은 발주 후 즉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서면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과징금에 처해 질 수 있음
- 위탁을 시작하기로 하는 하도급거래가 완료된 경우, 원사업자는 급부내용, 하도급대금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서류로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음. 기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급사업자의 명칭, 위탁한 일,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 기일,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급부의 내용,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대해 검사를 한 경우는 검사완료 기일, 검사의 결과 및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급부의 취급, 수급사업자의 급부의 내용에 대하여 변경 또는 재 작업을 시키는 경우 이

의 내용 및 이유, 하도급대금,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하도급대금의 변경이 있었던 경우는 그 증감액 및 이유, 지급한 하도급대금/지급기일/지급수단,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한 경우 어음 금액/어음을 교부한 일/어음의 만기, 원재료 등을 유상 지급한 경우는 품명/수량/대가/인도일/결제기일/결제방법, 지연이자를 지급한 경우는 지연이자액 및 지연이자를 지불한 일,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 또는 원재료 등의 대가를 공제한 경우는 그 후의 하도급대금의 잔액

-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나 시공에 착수하기 전에 계약 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회사 또는 대표자 명의의 기명날인(서명)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나아가 하도급거래 관련서류는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함

○ 보존

- 법 제16조의2에 의거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내용 및 협의내용, 그 조정 금액 및 조정사유
- 입찰명세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

○ 예시/ 사례 : Don'ts

-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또는 전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불완전한 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
- 계약서면은 하도급 계약시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소한 제조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여야 하며,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
- 하도급 계약서면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하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서면미교부에 해당
- 계약서면의 내용은 사실관계를 반영하여야 하므로 실제의 하도급거래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허위서면교부에 해당하여 하도급법 위반

○ 심결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건설위탁에 있어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할 때에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서 등의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늦어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또 당초의 계약내용이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

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추가·변경서면을 작성·교부하여야 함.[대법원 1995.6.16.선고 94누10320선고판결]

○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도입 (하도급법 개정, 2010.7.26 시행)**

- 구두로 발주한 내용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면 원사업자가 인정 여부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성립을 추정하는 제도
- 구두로 작업을 지시 받은 수급사업자는 구두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하고
-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회신을 하지 않는 경우, 당초 통지내용대로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함(회신에는 반드시 원사업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함).
- 확인요청 관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 ① 위탁 받은 작업의 내용
 - ② 하도급대금
 - ③ 위탁 받은 일시
 - ④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 ⑤ 그 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
- **수급사업자 보호효과 및 통지와 회신방법**
 - ① 인정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약에 대한 서면 증거도 확보하여 향후 하도급분쟁에 대비 가능
 - ② 부인하는 경우 :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수급사업자는 작업을 중단함으로써 손해를 미연에 방지
 - ③ 회신이 없는 경우 :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 가능
 - ④ 통지와 회신의 방법 : 내용증명 또는 그 밖의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법인등기사항 명세서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하도록 함
- **실무 담당자 유의사항** :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 성립이 추정되므로 추후 수급사업자가 손해를 입더라도 소송을 통해 구제를 청구할 수 있음

가. 2 부당한 하도급결정금지

-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는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경우이어야 함
 - 주관적 요건
 - ※ 이러한 부당한 방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에는 원사업자의 강요에 의한 일방적인 경우와 원사업자가 기망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에 관한 판단을 방해하는 경우 등임
 - 객관적 요건
 - ※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만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바, 여기서 “통상 지급되는 대가”라 함은 당해 목적물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거래지역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을 말함
 - ※ 구체적으로는 하도급대금의 결정시 수급사업자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협의의 다하는 것이 중요함

○ 하도급대금 부당결정 예시 : Don'ts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 결정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발주량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 하는 경우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하고,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수의계약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정하지 않고 제조 등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견적가격을 크게 하회하는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국내용과 같은 물건을 수출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통상의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할인·특별판매용, 경품류 제공용 또는 견본용 등을 이유로 특히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경우
- 견적가격을 훨씬 하회하는 가격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협력업체등록 취소 등의 불이익 제공을 경고하면서 하도급 금액을 저가로 결정하는 경우

○ 경쟁 입찰과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 최저가 입찰 금액이 예정가격(실행예산)을 상회하여 예정가격 수준에 맞추어 최저가 입찰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예정가격은 하도급대금 상한으로서의 의미가 있으므로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면 위반은 아님
- 입증책임 : 당해 예정가격이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것이 아니라는 점은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 저가심의를 하여 심의 기준에 미달하는 최저가 업체를 탈락 시킨 후, 차순위 업체와 Negotiation하는 경우, 저가심의회는 부실시공이나 공기지연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성이 인정.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었다면 적법. 다만, 전제조건으로 저가심의회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 하였어야 함.

○ 사례 1

- 중공업은 A 정밀에게 선박제조용 부품인 레벨 스위치를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자신의 최종 기술검토과정 등을 거쳐 최종가격으로 800만원/척을 제시한 A 정밀을 수급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제조대상 선박이 전년도 **물량 확보차원에서 최저가로 수주한 점을 이유로 A 정밀에게 가격협조 요청**을 하여 당초 최종가격으로 제시한 **800만원을 750만원으로 감액**한 사실이 있음

- 위법성 판단

※ **부당한 방법을 이용했는지 여부** : 하도급대금 조정이유가 전년도 물량확보차원에서 저가로 수주함에 따른것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물량확보차원에서 저가로 수주한 부담을 수급사업자(A정밀)에게 전가**한 것이 인정되므로 부당함

※ **현저하게 낮은 수준의 가격인지 여부** : 동종 또는 유사한 것의 통상적인 대가는 A 정밀이 제시한 최종협상가격 **800만원 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특히 이 건 **입찰에 참여한 타 사업자의 견적 금액이 모두 800만원을 초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상적인 대가는 800만원 이상으로 봄이 타당

○ 사례 2

- D 엔지니어링은 2003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동안 3개 수급사업자에게 LCD 제조 공정장비 등을 제조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고 선 납품 받은 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음. 하도급대금을 결정함에 있어 이들 수급사업자들의 가격협상력이 열악한 상태를 이용하여 견적가격보다 10%-29%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한 사실이 있음

- 위법성 판단

※ **일방적인 하도급대금결정행위인지 여부** : 엔지니어링이 목적물을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목적물 수령완료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가격결정권을 현저하게 침해한 행위임. 선 납품후 하도급대금 결정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력을 현저히 침해 당한 수급사업자로서는 **계속적 거래를 위해서는 사실상 D 엔지니어링의 요구를 거절하기 곤란한 점**을 고려할 때 D 엔지니어링의 이러한 행위는 **일방적인 하도급대금결정행위**라고 판단됨

※ **낮은 단가인지 여부** : D 엔지니어링과 수급사업자가 영위하는 장비제조업의 2003년 및 2004년의 매출액대비 **평균 순 이익률이 2.61% 및 5.09%인 점**을 고려할 때 D 엔지니어링이 이미 목적물 수령을 완료한 후 수급사업자들의 **가격협상력이 열악한 상태를 이용하여 견적가격에 비하여 적게는 10%, 많게는 29% 낮게는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하게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임

○ 사례 3

- 00전자는 2002년 9월 경 정보통신분야의 2003년도 원가절감을 단가인하 방법으로 1조 2천억원을 달성하기로 하고, 그 중 국내업체에 대해서는 6천억원의 절감목표액을 설정한 후 부품별, 담당자별 원가 절감목표액을 부여하여 단가인하 추진. 그 결과 충전기 부품의 경우 단가인하목표액을 209억으로 정한 후 이 목표달성을 위해 7개 납품업체의 납품가총액 기준으로 상반기 6.6%, 하반기 9.8%씩 일률적으로 단가 인하 실행

- △△자동차는 00차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2003. 6 ~ 2005. 12 기간 중 34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단가를 인하하면서, 대신 다른 차종의 부품단가를 인상하여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정산하기로 구두 합의 하였음. 그러나 당초 합의내용과 달리 부품단가를 전혀 인상해주지 않거나 인화된 금액만큼 부품단가를 인상해주지 아니함으로써 34개 수급사업자에게 2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행위는 기만적인 행위로 위법한 행위로 인정
- 하도급대금 감액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2011.6.30 시행)
 - 감액사유, 감액기준, 감액물량, 감액금액 및 그에 대한 증빙자료 등
- 원사업자가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서면에 포함될 내용을 규정(안 제7조의3 신설, 2011.6.30 시행)
 -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 기술자료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이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가치를 가지는 자료

나. 하도급거래 이행단계

나. 1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금지

-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원사업자의 발주취소나 수령거부행위가 부당한 경우이어야 함
 - 여기서 부당성에 대한 판단 기준은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예컨대, 발주서대로 제조·시공되지 않았거나, 납기를 현저히 초과하였거나, 납품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지 등의 제반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
- 부당한 발주취소(수령거부)예시 : Don'ts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가 납품·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외국수입업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관장소 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이미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여러 품목을 제조위탁하고 일부 품목의 불량을 이유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정당한 발주취소로 인정되는 경우**

- 발주내용과 다른 물품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어겨 납품하는 경우 수령의무 없음
- 수급사업자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선고 신청 등 수급사업자의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승인 없이 영업의 양도를 결의하거나 타 회사로 합병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
- 수급사업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착수를 상당 동안 지연하는 등으로 기간 내에 제조가 곤란할 경우 발주 취소 혹은 변경 가능

나. 2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 원사업자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이 지정하는 물품이나 장비 등을 구입하게 하거나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

○ **부당한 물품 등의 구매강제 예시**

- 구매·외주담당자 등 하도급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구입을 요청하는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목표량을 할당하여 구입을 요청하거나 불응 시 불이익 한 취급을 받게 됨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수급사업자가 구입의사가 없음에도 재차 구입을 요구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영업행위와 관련이 없는 물품의 구매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 **물품구매요구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 Do's**

- 위탁목적물의 품질의 유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발주자, 바이어, 고객이 목적물 제조, 수리 시공 시 특정물품 및 장비 등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나. 3 내국신용장개설 의무

- 수출품을 제조 위탁한 경우, 원사업자는 위탁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 함
- 다만, 신용장거래에 있어 원사업자가 원신용장을 받기 전에 제조 위탁하는 경우에는 원신용장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설하면 적법

○ **적법한 예시 : Do's**

- 수급사업자가 영세하거나 내국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서류작성능력이 없는 등의 이유로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원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
-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 개설은행에 연체 및 대지급 당한 상태에 있거나, 개설한 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등
- 월 1회 이상 일괄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백히 합의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 내국신용장 미개설 사유는 예외적인 것이므로 이로써 혜택을 보는 원사업자가 입증하여야 함

나. 4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

- 검사결과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여기서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라 함은 제조·수리위탁의 경우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이후부터는 원칙적으로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반품하거나 감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날을 기산일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이 진행
- 검사비용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이 원칙임. 또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제3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도 그 비용은 원사업자가 부담함
- 제조업의 경우 대량 납품하는 경우 샘플검사를 하거나 무검사 인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납품 받은 후 납품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의 위험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부담
 - 다만, 계약서에 반품에 관한 사항(반품사유, 시기, 보상문제 등)이 명백히 밝혀져 있고, 반품사유가 수급사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품이 허용되는 것으로 봄
- 검사 및 검사결과 통보의무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 검사의 방법
 - ※ 검사의 방법으로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는 전제하에 전수검사, 발체검사, 제3자에 대한 검사의회, 수급사업자에게 검사위임, 무검사합격 등이 있음
 - 검사결과 통지기간(10일)의 예외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예시)
 - ※ 일일평균 검사물량의 과다 등 통상적인 사유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아니함
- **심결례**
 - 수급사업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한 하도급공사를 종료하여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시공완료의 통지를 받고서도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 하였다면, 원사업자가 그 통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공사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결과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공사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함. [대법원 1005.6.16.선고94누10320선고판결]

나. 5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발주의 임의 취소·변경이나 목적물 수령·인수의 거부 또는 지연을 금지**
 -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정상적으로 시공하고 있는데도 시공능력부실 등의 객관적 입증자료 없는 막연한 이유로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행위**
 - ①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예정공정표상 공기지연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② 선행공정이 지연되어 수급사업자가 시공해야 할 후속공정이 지연될 수 밖에 없는 경우
 - ③ 무리하게 공기를 일방적으로 단축한 후 공기지연을 이유로 해지하는 경우
 - 합리적인 정당한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는 제외

○ 심결례

- (주) 00 상사는 2004. 6. 23 수급사업자인 ◇◇무역에게 작업의뢰서(양 당사자의 기명날인, 목적물의 검사방법 및 시기 등 법정기재사항 누락)에 의거 원단 18,000MTS를 제조 위탁한 후 발주자인 해외 BUYER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였음
- 이는 하도급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앞으로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만한 사유없이 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 명령

나. 6 부당반품의 금지

-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목적물 수령 후 반품을 금지

○ 부당반품 예시 : Don'ts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의 원자재 공급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목적물을 반품하는 행위
 - 검사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목적물을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한 원자재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목적물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심결례**

- 한국000(주) 는 2002. 1. 1 ~ 2002. 12. 31 기간동안 (주) ◇◇미곡처리장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00청결미’ 등 28개 품목의 자기상표부착제품[PB(Private Brand)제품]을 제조위탁하여 이를 수령한 후, 판매부진에 따른 재고정리 등을 이유로 주) ◇◇미곡처리장 등 28개 수급사업자에게 236,417천원에 상당하는 PB 제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음
 - 이는 하도급법 제10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반품행위로 인정되므로,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반품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 **업무상 유의사항 : 합격처리 후 반품이 발생한 경우 귀책사유를 규명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
- 당사자간에 하도급계약 체결 시 검사방식 등을 정하고 그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 합격시킨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음

다만, 반품발생시 수급사업자와 공동으로 반품원인을 규명하고, 수급사업자의 책임 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불합격으로 처리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당사 자간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임

나. 7 부당감액금지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이 발주 시에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것을 말함. 협찬금 등의 징수,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 명목과 방법, 금액에 관계없이 감액하는 일체의 감액행위는 금지됨
-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이 발주 시에 정해진 금액(발주 시에 즉시 교부하였던 서면에 기재된 금액)으로부터 일정액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은 전면적으로 금지됨. 값을 깎아 준다거나, 협찬금, 할인 등의 감액의 명목, 방법, 금액의 다소를 불문함. 또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가 있어도 하도급법 위반이 됨

○ 부당감액 예시 : Don'ts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 취소·경제 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감액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감액하는 행위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제조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에 적절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 대가 이상의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를 정해 놓고 납기 내에 납품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제조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정보 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 계약 후 추가제조 또는 재 제조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 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당초의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다음 사항들의 대응에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 단가의 인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수급사업자에 대해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및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발주하는 시점에 생기는 위반행위이나 하도급대금 감액은 발주 시에 정해진 액을 사후적으로 공제함으로써 생기는 위반행위임
- '제품을 싼값으로 수주하였다' 것 또는 '판매확대를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 는 등의 이유로 사전에 정해진 하도급대금으로부터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으로부터 공제하는 것 이외에 감액 분을 별도 협찬금으로써 징수하는 경우도 감액이 됨
- 판매확대와 신규판매 route 확보를 목적으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현품을 첨부시켜 납입수량을 증대시킴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 : 하도급대금 총액은 그대로 두고 수량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함
- 수급사업자 사이에 단가인하에 대해 합의가 성립하여 단가개정이 되었어도 이 합의 전에 이미 발주된 것에 대해서까지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 : 구단가로부터 신단가로 인하하는 때에는 신단가는 단가 개정이 합의된 후의 발주 분부터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미 발주한 분에 대해서까지 소급하여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도 감액이 됨
- 어음을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 사무수수로 하도급대금에서 자사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한 액을 감액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 없이 하도급대금을 은행구좌로 납입 시 수수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하는 것 : 수급사업자와 합의가 없으면 하도급대금에서 은행납입수수료를 공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또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원사업자가 부담한 실비의 범위내임
- 소비세, 지방소비세액 상당분을 지불하지 않는 것

-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함**
- **심결례**
 - (주) 00 조선은 ◇◇도시개발(주)에게 선박수리공사 중 도장공사를 수리위탁함에 있어, 이미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표준품셈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35,166천원을 부당감액하고,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미지급. 이는 하도급법 제11조제1항의 부당감액행위에 해당하여 수급사업자에게 부당 감액한 35,166천원 및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

나. 8 부당경영간섭 금지

○ 부당경영간섭 예시 : Don'ts

- 수급사업자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원사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계약조건설정 등 재 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케 하는 행위

나. 9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금지

○ 부당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예시 : Don'ts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가 신고한 수급사업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협력업체에서 배제시키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하향조정 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보복조치에 해당)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는 행위

나. 10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등(2010. 7. 26 시행)

-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탈취하거나 유용하는 것을 금지함
- **기술자료제공 강요행위 예시 : 모두 법 위반행위임 : Don'ts**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는 행위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음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품질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수급사업자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납품하는 제조업자 설계생산제품에 대해 **제조공정도, 기구도면 등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자료가 포함된 내용을 요구하는 행위**
- 납품되는 부품의 호환성 여부를 검토한다는 이유로 기술자료를 제출받거나, 안정적인 부품확보를 위해 복수거래처 개발을 이유로 기술자료를 제출 받는 행위

다.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다. 1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의무

- 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 등과 관련하여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원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다만, 위 기간(환급 받은 날로부터 15일)보다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인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한편, 원사업자가 관세 환급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

다. 2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발주한 물품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지불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것을 말함. 물품 등의 검사 기간 등에 불구하고 납품 후 60일 이내에 지불하지 않으면 지불지연이 됨
- 자사의 사무처리지연과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서의 지연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급부를 수령한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는 것 : 원사업자에게 있어서는 사전에 수급사업자가 청구액을 집계하여 통지하는 데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수급사업자로부터의 청구가 지연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청구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 하도급대금 지급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에 만료됨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
- 한편,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을 수령한 날이 지급기일이 되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날을 지급기일로 정한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이 지급기일이 됨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지급수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다. 따라서, 현금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어 현금으로 환가할 수 있는 어음이나 대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

다.2.1 어음할인료 지급의무

-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어음할인료 = 어음지급 하도급대금×0.075×지연일수/365일(수수료산정방식 동일)

다.2.2 지연이자 지급의무

- 하도급대금은 목적물 수령일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일(월 1회 이상 일괄마감하기로 약정한 경우)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부담하여야 함
 - 현재의 지연이자율은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자율 고시」에 의하여 연 20%로 고시
 - 60일(준공금, 기성금은 15일) 초과 지급 시 지연이자(연 20%)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이 60일 초과시 할인료(연 7.5%) 또는 수수료(연 7%. 단, 약정수수료율이 이보다 높으면 높은 수수료율 적용) 지급
- ※ 지연이자 = 지연지급 하도급대금×0.20×지연일수/365일

다.2.3 어음만기일 유지의무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원사업자는 지급받은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어음으로 지급
- 다만,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결제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어음만기일 유지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

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교부 받은 어음지급기간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 발주자가 타인발행의 어음으로 도급대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음의 지급기간은 원사업자가 어음을 교부 받은 날로부터 만기일까지로 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때에 어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부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됨

다.2.4 현금결제비율 등의 유지의무

- 현금결제비율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액에서 현금지급액이 차지하는 비중임

$$\text{현금결제비율} = \frac{\text{현금지급액}}{\text{하도급대금지급액}} \times 100$$

- 2010년 8월부터는 현금 외에 현금성 결제로 인정되어 오던 수표, 내국신용장에 의한 환어음, 구매자금융에 의한 환어음, 기업구매전용카드, 양도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없는 팩토링금융(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포함)등은 현금으로 인정되지 못하므로 발주자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현금으로만 지급하여야 함

- 현금결제비율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유권해석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직전에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제1회 도급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다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금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차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2회 이상 도급대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한 비율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함

-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에게 납품하는 물품을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 위탁하는 경우에 특정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물품이 공급되는 발주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당해 발주자로부터 원사업자가 받은 현금비율을 적용하고, 불명확할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다수의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을 산술평균하여 적용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에도 그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교부 금지

○ 심결례

-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 기일에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음. [대법원1995.6.16. 선고94누10320선고 판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되어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시정명령을 내리는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이나 어음할인료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로써 위반행위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원사업자가 그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임. [대법원 1999.3.26. 선고98두19773선고판결]

○ 업무상 유의사항

- 재하도급의 경우도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되는가? : 원사업자를 발주자로 보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되는 재하도급의 경우(제2조 제10항)에 있어서도 원사업자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수급사업자는 2차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현금비율 유지 의무와 어음만기일 유지 의무가 적용됨**

- 어음할인료를 교부일에 지급하지 않고 지연 지급하는 경우도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지?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교부하는 경우에 할인료를 어음교부일 또는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도급법(제13조 제6항)에 위반되나, 하도급대금의 경우와는 달리 할인료에 대해서는 지연이자 지급규정이 없으므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음**

다.2.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및 지급의무(2010. 7. 26시행)(법 제16조)

- 요건 : 다음 요건이 충족되면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어야 함
 - 제조, 수리 또는 건설위탁을 한 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의 사유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아야 하며,
 - 수급사업자도 동일한 사유로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 그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 하는데,
 - 하도급대금의 증액은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정
 - : 증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 : 이 경우에도 제13조의 지연이자 및 어음할인료 규정 적용됨

※ 어음만기일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이 15일 초과시 어음할인료 또는 수수료 지급

- 조정기준 (공정위 지침)
 - 설계변경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함
 - 즉, 개별품목별로 조정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종별로 세부공사 내역에 따라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을 맞추어 지급하여야 하며, 총액지급방식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이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라도 원도급대금을 조정 받은 원사업자가 조정기준시점 이후의 잔여공사에 대하여 조정해 준 경우 적법함

-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물가변동과 관련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추가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조정해주는 데 있어서 물가변동조정기준시점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물가변동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때,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한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 조정기일
 - 발주자로부터 조정(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상승분 중에서 하도급 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가능

○ 예시 : Don'ts

-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함
 - :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추가 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 : 물가가 기간에 정비례하여 상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간에 비례하여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며,
 - : 발주자는 비교시점과 기준시점의 물가차이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분을 반영한 것이므로 하도급계약 시점의 물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면 원사업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과 같음

다.2.6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 의무(2010.7.26 시행)

- 하도급대금을 증액 또는 감액할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예외임

○ **업무상 유의사항 : Do's**

-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됨. 단, 선시공 등 사실상 하도급거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을 해주어야 함
- 물가변동 조정기준시점 이전에 기 지급된 선급금은 조정대상금액에서 제외 가능함
- 하도급금액이 원도급 금액을 상회하는 공종의 경우에도 증액해주어야 합니다 단, 발주자가 공종별로 비율을 정해 조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대로 조정해야 함
- 하도급대금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무효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금액을 조정 받고도 수급사업자와 약정이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계약체결 60일 이내, 물가변동 조정율이 5%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음)를 이유로 조정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위법임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물가 상승분 중에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함에 있어 원도급 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시점까지 물가 상승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공제 가능함
- 물가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경우 복잡한 개별품목의 조정방법보다는 전체계약금액에 물가변동지수를 적용하는 총액 조정방법이 일반적임

○ **물가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ESC를 적용해주시 않아도 되는지 여부?**

- 하도급계약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체결되고 원사업자가 ESC를 적용받았다면 ESC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의 공사분에 대해 물가상승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정기준일 이후의 잔여공사분에 대해서는 ESC를 수급사업자에게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당시의 물가수준이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사실과 원도급계약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급사업자에 대한 조정률은 원사업자가 적용받은 ESC조정률을 기준으로 원도급계약 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여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입증여부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다.2.7 원재료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하도급공정화지침 개정, 09.6.5)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조정협의 요청(신청)시 10일 이내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면 아니됨

- 2009.4.1.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개정 하도급법 공포·시행)
- 2009.5.13.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 위반시의 구체적 과징금 및 벌점 부과기준 마련(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공포·시행)

○ 요건

- 수급사업자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원사업자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조정신청권).
- 원사업자는 조정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함
- 10일 내에 협의를 개시하지 않거나 3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원사업자나 수급사업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협의 거부·해태 유형 : 모두 법 위반행위임 : Don'ts**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 개최, 의견 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
- 수급사업자가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담당자를 통한 단가조정 관련 지시·보고 등 간접적 형태의 협의를 포함함)에 임하지 않은 경우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 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수급사업자가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경우

○ **업무상 유의사항 : Do's**

- 조정협의를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범위반은 아니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의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유, 조정신청 요건·절차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안 제9조의2 신설, 2011.6.30 시행).**

- **원재료 가격의 급격한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규정
 - ①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의 가격이 하도급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100분의 15 이상 상승한 경우

※ 계약체결 후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을, 경쟁입찰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일을 의미

②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변동액*이 잔여납품물량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

※ 납품 등을 위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

-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요건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된 경우를 말함

- 조정신청 절차 및 방법

① 조합장 등 조합원 일부의 독단적 판단에 의하여 신청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사회 혹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

② 불가피한 사유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서면으로 신청

○ 30일의 조정협의 기간 이전에도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조의3 신설).

①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②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서로 제시한 조정금액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③ 협의를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④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2.8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것. 즉,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사업자에게 있다 한다는 입증 책임은 원사업자에게 있음

- 따라서,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합의서 등을 작성하여 이를 보존할 필요가 있음

○ 심결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가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劣位)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려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열위적 지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원사업자의 의사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 또는 승낙하는 경우에는 '의사에 반하여' 지급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경우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정도의 강박에 의한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당초부터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사적자치의 원칙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이러한 경우까지 하도급대금을 약정한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부당한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음.[대법원2003.5.16.선고2001다27440선고판결]

다.2.9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제조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거나 자기가 구입, 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
- 부당결제청구 예시
 - 계속적인 하도급거래에 있어 원사업자로부터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실제 투입한 물량에 대한 가액 이상으로 차감하는 것
 - 원사업자가 자신의 장비를 사용하도록 함에 있어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 대가를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

5. 사건처리절차

1. 사건의 단서

신고

2. 사건의 인지

심사불개시

사건심사 착수보고

사건심사 착수보고

3. 사건처리

조사중지

법 위반사실 없거나
위반행위 증거없음

무혐의

적용요건 흠결, 신고취하,
위반여부 판단곤란

심의질차종결

위반행위 시정조치
이행확보곤란

종결처리

법 위반

시정명령

4. 하도급법상 의무이행확보수단

(하도급법 실효성확보수단)

위반행위 경미,
시정조치 식의없음

경고

위반정도가 중대하고
위반동기가 고의적

공표명령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과징금

지나치게 악질적이거나
상습적인 경우

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시정명령
불이행

고발

6. 위반시 제재 및 인센티브

가. 과징금

- 위반행위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여부를 결정
- 원칙적 부과대상
 - 상습 법위반 업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 조치(경고 이상)을 받고 벌점누적이 2점 이상)
 - 위반행위가 중대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 구분한 후, 다시 유형별로 세분하여,
 - 위반행위의 유형, 위반금액, 위반행위의 수, 관련 수급사업자 수 등을 감안하여 중대성 및 파급효과를 판단함

〈중대성 및 파급효과에 따른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기 준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	비 고
위반행위 유형	서면 미발급,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감액, 보복조치, 탈법행위	- 5천만원 이하 소액 하도급 거래 서면미발급 제외 - 위반금액 3천만원 이하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및 부당감액 제외
위반금액	3억원 초과	
위반행위 수 수급사업자 수	3개 이상 위반행위 & 30개 이상 관련 수급사업자	

- 과징금부과 절차 및 예시
 - 최근 3년간 법 위반행위 : 시정명령 4회, 경고 6회, 과징금 1회
 - 법 위반유형 :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 법 위반금액 : 364,823,000원
 - 하도급거래금액 : 364,823,000원
 - 고려사항 : 하도급대금 100% 현금결제

○ 과징금부과대상행위

행위유형	세부위반 유형	위반금액	비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216,497,000원	-
	지연이자 미지급	148,326,000원	-
합계		364,823,000원	-

○ 과징금부과점수(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첨2에 의거 산정)

항목(비중)	내용	부과점수	가중치 반영점수
위반행위 유형 (0.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40	16
위반금액의 비율 (0.2)	364,823,000원/2,711,212원 =0.13	80	16
위반행위의 수 (0.2)	2개(하도급대금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60	12
과거의 법 위반전력(0.2)	위반벌점 9.5점	100	20
계			64

○ 기본과징금 : 249,000,000원

1) 하도급대금 : 2,495,000,000원

2) 과징금 부과율 : 5%(70점까지)

3) 과징금액 산정 : 249,000,000원

- 하도급대금의 2배(4,990,000,000원) × 과징금 부과율(5%)

○ 조정과징금: 249,000,000원 · 49,800,000원(249,000,000원 *0.2)=199,200,000원

- 현금성 결제비율 100%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20% 감경
- 가중사유 및 비율

가중사유	요 건	해당여부
조사거부·방해·기피 등	위반사업자 또는 소속 임원·종업원이 위반행위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위반행위를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어렵게 한 경우 (20%)	-
임원의 법 위반 가담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임원이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10%)	-
보복조치·탈법행위	법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20조(탈법행위 금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10%)	-
위탁내용을 명확히 하지 않는 행위	과거 3년간 서면미교부행위로 시정조치(경고포함)를 받은 사실이 있고 2개 이상의 수급사업자에게 서면미교부행위를 한 경우 (10%)	-

○ 감경사유 및 비율

감경사유	요건	해당여부
위반행위 자진시정	사건심사 착수보고 전에 시정한 경우(20%)	-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시정한 경우(10%)	-
현금성결제 우수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100%인 경우 (20%)	해당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성결제비율이 90% 이상인 경우 (10%)	-
협력적 계약 체결모델사용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
협력업체선정 가이드라인 사용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영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20%)	-

○ 부과 과징금 : 199,200,000원(감면조건 없음)

- 과징금 감면요건

구분	요건내용	해당여부
감면요건	과징금이 위반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과중한 경우	-
	과징금이 범위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한 경우	-
	범위반 사업자가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타당	-

나. 벌점부과

- 법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함
- 시정조치유형별 점수(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4 2009.5.13 개정)

경고 (서면실태 조사)	경고(신고 및 직권인 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0.25	0.5	1.0	2.0	2.5	3.0

다. 인센티브(하도급공정화지침 23, 벌점부과기준 시행령 제14조의4)

요건	인센티브내용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결과 조사대상 기준년도 1년간 i) 하도급대금을 100% 현금성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고 ii) 법 위반행위가 없는 원사업자 iii) 경쟁입찰비율 90%이상인 원사업자	i) + ii) : 2년간 (조사년도 익년도 및 차익년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면제 i) ~ iii) : 1회에 한하여 하도급법 관련 현장직권조사 면제
직전1년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특별교육 이수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상생협력관련 가이드라인 사용 현금결제비율 90~100% 현금결제비율 100% 전자입찰 80% 이상 우수업체 전자입찰 80% 이상 우수업체	과거 3년간 점수누계에서 2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1점(대표), 0.5점(임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3점 감점 가이드라인 1개당 2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0.5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1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1점 감점 과거 3년간 점수누계 0.5점 감점

- 벌점은 1회만 경감됨

7. 질의응답

1. 규격품, 표준품의 제조를 의뢰하는 경우 제조위탁에 해당하는가?

⇒ 소위 규격품, 표준품으로 넓게 시판되고 있어 시장품목으로 구입이 가능하여 제조의뢰가 실질적으로는 구입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규격품, 표준품일지라도 원사업자가 사양 등을 지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그 제조를 의뢰하면 제조위탁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규격품의 제조의뢰 시 의뢰자의 낙인을 넣도록 한다든지 라벨을 붙이도록 한다든지 회사명을 인쇄하게 한다든지 파이프 剛材 등을 자사의 사양에 맞춰 일정한 길이 내지 폭으로 절단하게 하는 작업을 하게 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2. 전화로 주문하고 후일 주문서를 교부하는 방법은 문제가 되는가?

⇒ 전화만에 의한 발주는 서면미교부로 됩니다. 긴급하여 어찌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전화로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경우는, 「주문내용에 따라 바로 주문서를 교부할 것」이므로 그것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바로 주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3.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試製品の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서 인정됩니다.

단, ①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늦어도 최초의 대금지불시까지의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4. EDI에 의해 발주하는 경우, 시스템상 단가를 공란으로 해놓고 발주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는데 어찌하면 좋은가? 또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기한 후에 「0원」으로 표기하는 것은 가능한가?

☞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여 0원이 실제의 단가는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후에 발주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5. 가단가(仮單價)는 금지되는가?

☞ 가단가를 기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합니다.

6. 작업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 견적을 제출 받아 그것을 기초로 가격을 결정했다고 생각했으나, 견적서가 제출된 후에 작업내용이 당초의 예정을 대폭 상회하게 된 경우에 견적서를 고치지 않으면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하는가?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액을 정하는 방법으로는 견적, 타협, 입찰 등이 있는데, 그 단가의 결정시에 원사업자가 일률적으로 일정비율로 단가를 인하시키거나, 일방적으로 통상 지불되는 대가보다 현저히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질문의 경우, 애초보다 작업내용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액을 변경하지 않고 당초의 견적가격을 작업내용이 증가한 경우의 하도급대금 액으로 정했다고 해석되므로, 이는 부당한 대금결정에 해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사업자로부터의 요청 여부에 불구하고 재견적을 하여 단가를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당사의 결산대책을 위해 발주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시켜도 문제가 되는가?

☞ 개별의 발주내용의 상이함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전체의 발주내용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비율로 인하한 단가로 발주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문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8. 지정가로 수급사업자에게 주문을 하면 문제로 되는가?

☞ 指定價로 일방적으로 단가를 지정하는 방식에 의해 통상 지불하는 대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정하는 것은 부당한 대금결정으로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하도급대금은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를 제출 받은 후에 충분히 협의하여 쌍방이 납득하는 단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9. 納期전에 납품된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가?

⇒ 약속한 納期전에 납품하면 원사업자에게는 수취할 의무가 없어 수취를 거부하더라도 수령거부는 아닙니다. 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납입된 물품을 수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경우에는 假受領으로 납입된 물품을 납기까지 보관하고 주문서에 기재된 지불기일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하면 좋습니다(假受領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10. 수급사업자가 정식의 발주에 의하지 않고 예상을 해서 제조한 경우에는 그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문제가 없는가?

⇒ 발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발주서면을 작성하지 않고 구두발주로 수급사업자에게 일정수량을 만들도록 한 경우에는 서면교부 의무위반에 머무르지 않고 수령거부에도 해당합니다.

11. 소위 Just in Time 생산방식을 채택함에 있어 법상 문제가 안되도록 하려면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하는가?

⇒ ①계속적인 量産品으로 생산공정이 평준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쌍방이 합의하여 도입한다.

②주문서는 사전에 충분한 숙지기간을 두고 교부한다. 이 주문서에는 일정기간 내에 구체적으로 납입할 날짜와 납입일마다의 납입수량을 명확히 기재한다.

③Just in Time 생산방식에 의한 납입지시 카드는 ②의 주문서의 납입일과 납입일마다의 납입수량을 조정하기 위해 교부한다는 생각으로 운용한다.

④납입회수 및 1회당 납입수량을 적정하게 하고, 동시에 무리한 납입일(시간)의 지시는 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Just in Time 생산방식의 채택에 의해 수송비 등의 비용증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에 관해 사전에 잘 협의하여 합의한 후에 실시한다.

Just in Time 생산방식에서, ②의 주문서가 일정기간 내에서의 생산·납입을 위탁하는 발주서면에 해당하며, 이를 ③의 납입지시카드에 의해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이 방식에서는 상기 ①~⑤의 사항을 전부 준수해야 하며, 납입지시 카드에 의한 변경에 따라 납입일이 지체된다든지 납입일마다의 납입수량이 작게 되는 경우, 그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비용(보관비용, 운송비용 등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에 그것을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수령거부 또는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으로 문제가 됩니다.

또한 납입지시 카드에 의한 변경에 따라 납입일이 지체되어 지불시기와의 관계에서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1개월 지체될 수 있는데, 그것이 납입시기의 조정에 그치는 경우(예를 들면, 당해 발주기간의 최종납입예정일이 차기 발주기간의 최초납입예정일 또는 당해 납입예정일보다 빠른 시점에서 변경된 경우)에는, Just in Time 생산방식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제품사양의 변경 등 원사업자 측의 일반적 사정에 의한 발주내용의 변경 혹은 발주의 취소 또는 생산의 중단 등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이미 완성하고 있는 제품 전체를 수령하지 않으면, 수령거부로서 문제가 되며 반제품의 제작비용이나 부품대금을 포함하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지 않으면 부당한 급부내용의 변경으로 문제가 됩니다.

12.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불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경우 어음할인료 상당분을 감액해도 좋은가?

⇒ 수급사업자와의 사이에 지불수단을 어음으로 정하고 있는데 수급사업자의 희망에 의해 일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 원사업자의 단기조달금리 상당액을 초과하여 감액하면 그 초과분은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법 위반이 됩니다.

나아가 일시적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현금으로 지불하는 경우에는, 지불수단을 현금으로 해서 발주서면을 교부할 필요가 있는데, 이 경우에 발주서면에 기재한 하도급대금액에서 할인료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은 하도급대금 감액으로 되므로, 이에 걸맞는 단가설정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협의 후에 할 필요가 있습니다.

13. 단가변경을 하는 경우, 소급적용에 관해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하는가?

⇒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전의 발주에 대해 신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합니다.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됩니다. 나아가 ○월 납입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해 소급적용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월 발주분부터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 수급사업자의 급부에 하자 등이 있어 하도급대금의 지불 전(수령 후 60일 이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좋은가? 또한 하도급대금의 지불 후에 반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해도 좋은가?

⇒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이유가 있어 반품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15. 수급사업자로부터 당월 납입분을 익월 납입분으로 취급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하도급대금도 익월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지불했을 경우 60일을 초과하는 지불지연이라는 지적을 받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 법의 적용에서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유무에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은 지불기일까지 지불해야 합니다.

16.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법규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발주처와 원사업자의 계약서에는 최초 조정 후 “120일내에는 다시 조정하지 않는다”는 문구해석에 있어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일이 120일이 경과하여야 esc.을 지급한다는 의미인지?

⇒ Escalation 지급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는 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며, 변경계약은 30일 이내에 하도록 법규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발주처와의 계약서에 따를 것이 아니라 법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17. 하도급공정화 지침에는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분에 대하여는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조정해 주지 않아도 적법하다.’ 에서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을 해석함에 있어 입찰일 기준인지 아니면 계약체결일 기준인지?

⇒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계약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므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준시점 이후에 계약체결할 경우 Escalation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원도급계약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고, 하도급계약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조정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

18. 계약서에 하자보증기간에 대해 명확히 기술하지 않아 차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 누구의 책임인가?

☞ 불확실성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수급사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할 의무가 원사업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불확실성 및 예측하지 못한 사정을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전가하는 피해를 발생시킨다면 이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19. 계약서 서면교부시 적절한 시점은? 또한 긴급상황으로 인해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적용을 전제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문제가 되는지?

☞ 서면(계약서)은 수급사업자가 제조 등의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를 하여야 하므로 납품절차가 이루어진 후에 소급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0. 기본 계약서 교부하고 발주는 VAN(전산망)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지?

☞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FAX, 기타 전기·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내용이 객관적이고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서면교부로 볼 수 있습니다.

제 7 절 - 불공정거래행위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금지

-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는 간략히 정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혹은 거래상대방이나 고객에게 부당한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과하여 착취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음. 전자를 방해남용이라 부르고 후자를 착취남용이라 부름. 방해남용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방해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착취남용은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유효한 시장경쟁이 있었다라면 성립하지 않았을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거래상대방에게 부과하여 부당하게 이익(소위 경쟁초과이익)을 향유하는 행위를 말함. 이와 같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에서 세부 유형을 규정하고 있음

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금지 의의

-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조건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가진 1 또는 3 이하의 사업자(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그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말함.

나. 시장지배적 지위의 판단기준

-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사업자간의 공동행위,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1 시장점유율

- 남용행위를 한 사업자가 1개인 경우 그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일 때
- 남용행위를 3개 이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한 경우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일 때.
 - ※ 시장점유율 = 당해 상품의 국내 총 판매액 (수입판매액 포함) 분의 당해 회사의 당해 상품의 국내판매액 (수입판매액 포함)

나. 2 경쟁사업자 규모

- 당해 사업자에 비해 경쟁사업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나. 3 경쟁사업자간 공동행위 가능성

- 사업자간의 가격·수량 기타의 거래조건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공동행위가 이루어지기 용이한 경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다.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유형

다. 1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가격남용행위)

-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부당하게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제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수급의 변동이나 공급에 필요한 비용(동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의 것에 한함)의 변동에 비하여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경우 가격남용행위에 해당한다.

다. 2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행위(수량조절행위)

- 제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최근의 추세에 비추어 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유통단계에서 공급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용역의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경우 출고조절행위에 해당한다.

다.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행위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구매, 생산, 판매, 재무, 인사활동 등을 통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간섭하여 당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사업활동방해행위에 해당한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업활동을 하여 경쟁을 통해 시장에서 많은 고객을 확보하고 그 결과 경쟁사업자의 매출이 감소하거나 경쟁사업자가 퇴출된 경우라면 이를 문제 삼을 수 없으나, 부당한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경쟁을 저해할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 직접적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한 경우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자로 하여금 당해 행위를 하도록 하는 간접적 사업활동 방해행위도 위법으로 보며, 여기서 다른 사업자란 경쟁사업자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아닌 사업자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한다.

○ 업무시 유의사항(기타 다음과 같은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음) : Don'ts

-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하는 제품의 수량이나 내 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조건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또는 거래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를 강제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금을 대어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대여자금을 일시에 회수 하는 행위
- 현대자동차가 노조와의 협정을 통하여 대리점의 매장 이전·확장이나 영업인력 채용을 제한하였고,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고법은 매장 이전·확장, 영업인력 채용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견해를 지지하였으나 판매목표 강제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점의 판매목표가 지점보다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어 지점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서 영업을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고, 원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윤의 극대화일 뿐 대리점의 퇴출이나 경쟁력 약화는 아니라고 보이며, 일반적으로 판매목표의 설정과 강요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보아 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심결례

-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판매대리점의 판매거점이전에 대한 승인 혹은 영업직원채용 등록을 지연·거부하거나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

위 등을 함으로써 판매대리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여 과징금을 부과함
【공정위 2007. 5. 18 의결 제 2007-281호】

※ 구체적 법 위반 내용 : 2000년부터 2004년 말까지는 판매대리점이 거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고 판매대리점 계약서에 규정하였으나, 이 조항이 약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가 진행되는 도중인 2005. 1. 경 판매대리점은 사전합의를 거쳐 거점을 이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조항을 변경

※ 판매대리점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직원을 등록하도록 함

-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개별 거래의 상대방인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거래거절을 한 모든 경우 또는 그 거래거절로 인하여 특정 사업자가 사업 활동에 곤란을 겪게 되었다거나 곤란을 겪게 될 우려가 발생하였다는 것과 같이 특정 사업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의도나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을 갖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거래거절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2007.11.22.선고2002두8626, 서울고법2002.8.27. 선고2001누5370, 환송심-서울고법2008.4.24.선고2007두32718, 포스코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권)

※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은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거절행위의 부당성과는 별도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다. 4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 새로운 경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신규로 진입하려고 하는 사업자 및 신규로 진입은 하였으나 아직 판매는 개시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 예시 : Don'ts

- 거래하는 유통사업자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 기존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지적재산권이나 면허권 등)를 매입하는 행위

○ 심결례

-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의 '부당성'은 '독과점적 시장에서의 경쟁축진'이라는 입법 목적에 맞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시장에서의 독점을 유지·강화할 목적, 즉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도 그러한 경쟁제한의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하였을 때에 그 부당성이 인정될 수 있음

그러므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의 부당성은 그 거래행위의 목적 및 태양,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내지 확대 기회의 봉쇄 정도 및 비용 증가 여부, 거래의 기간, 관련시장에서의 가격 및 산출량 변화 여부,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여부, 혁신 저해 및 다양성 감소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로서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는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이므로, 통상 그러한 행위 자체에 경쟁을 제한하려는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임. (대법원 2009.7.9.선고2007두22078 판결, 농협중앙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건)

다.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경쟁사업자 배제)

-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라 함은 부당염매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행위도 다른 사업자 사업활동방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조치하였으나, 법 개정으로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
- 특히, 이 부분에서 유의할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염매'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만을 문제 삼는데 반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행위인 경우에는 경쟁사업자 배제목적만 입증된다면 원가 이상이라 하더라도 "통상거래가격"에 비해 낮으면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 업무 시 유의사항 : Don'ts

- 부당하게 제품 또는 용역을 통상거래가격에 비하여 낮은 대가로 공급하거나 높은 대가로 구입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영 제5조 제5항 제1호)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낮은 대가의 공급 또는 높은 대가의 구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통상거래 가격과의 차이의 정도, 공급 또는 구입 수량 및 기간, 당해 품목의 특성 및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목적,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여부, 당해 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시장지위 및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경우(영 제5조 제5항 제2호)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 경쟁사업자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당해 거래의 목적·기간·대상자 및 당해 업종의 유통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사례

- 제조판매업 분야에서 86.4%의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갑’(주)는 경쟁사업자인 ‘을’(주)가 시장에 신규로 진입하자 판매상들과 ‘을’(주)와 거래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자기의 지점을 통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대한 제품공급을 현저히 줄임. 그리고 수요자인 ‘병’(주)와 물품공급계약시 타사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 및 경쟁사업자의 대리점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인정【공정위 1996. 3. 5 의결 제 96-35호】

2.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개요

가. 의의

- 2 이상의 사업자간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 조건, 거래량,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를 카르텔(Cartel) 또는 담합이라고도 함

나.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요건

- 계약, 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인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인 합의까지 포함
- 합의의 추정 (공동거래법 19조 5항)
 - 2개 이상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비록 그러한 행위를 합의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
 - 추정이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정황근거)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임
- 합의추정의 반복
 -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추정을 받는 사업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추정이 다시 반복되는 것으로 봄(판례)

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유형

다.1 가격담합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가격이라 함은 명목상의 가격뿐만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 즉 사업자가 거래의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로 받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가리키는 것으로, 당해 상품이나 용역의 특성, 거래내용 및 방식 등에 비추어 거래의 상대방이 상품 또는 용역의 대가로서 사업자에게 현실적으로 지불하여야 하는 것이라면 그 명칭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 상품의 가격에 포함【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두10212】

다. 2 거래/지급조건 담합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한 가격 이외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 거래조건이란 상품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 판매조건, 구매조건을 포함하는 개념임

다. 3 수량담합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다. 4 시장분할 담합

-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거래지역,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인가

-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가 있을 경우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공동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
- 공정위는 인가요건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있어, 현재 인가를 받아 시행되고 있는 공동행위는 없음

마. 위반 시 제재

마. 1 시정조치

-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

마. 2 과징금

- 법 위반 관련 매출액의 10% 범위 내(매출액이 없는 경우 20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 법 위반 관련 매출액 : 위반행위기간 중 판매 또는 매입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함

마. 3 합의 등의 무효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등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예외적 인가 등 정당화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간 이를 무효로 함

마. 4 손해배상책임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짐

마. 5 형사적 제재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 또는 이를 행하도록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이하의 벌금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또는 금지명령에 응하지 않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의 형사적 제재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에 과함

바.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제외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 ① 일정한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법 제58조)
 - 무체재산권의 행사행위(법 제59조)
 - 소규모사업자 등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행위(법 제60조)
- ② 원칙적으로 법적용 대상이나 특수목적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하에서 공동행위의 실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인가제도」(법 제19조 제2항,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0조)
 -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한 공동행위의 인가

사. 신고자면책 보상제도 (Leniency Program)

구 분		과징금	시정조치
조사개시 이전	최초신고자	필수적 면제	필수적 면제
	2번째 신고자	필수적 50% 감경	임의적 감경
조사개시 이후	최초 조사협조자	필수적 면제	필수적 감경·면제
	2번째 조사협조자	필수적 50% 감경	임의적 감경

3. 부당지원행위금지

가. 내부거래의 정의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상품 및 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0)
- 회사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할 경우 당해 회사의 핵심역량이 유출되어 경쟁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고, 지원을 받은 객체는 부당하게 경쟁상 지위가 제고되어 당해 시장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하고 부당하게 경제력 집중을 가져올 수 있으며,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규제하고 있음

나. 내부거래 관련 용어 개념

나. 1 지원주체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한 자

나. 2 지원객체

-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의 이익이 귀속되는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 단,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수탁기업체인 경우는 제외

나. 3 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액이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액보다 높은 경우(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

나. 4 특수관계인

-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 동일인 관련자
-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

나. 5 정상가격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나. 6 지원금액

-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급부의 정상가격에서 그에 대한 대가로 지원객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반대급부의 정상가격을 차감한 금액

나. 7 지원성 거래규모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간에 이루어진 자금·자산·인력의 실제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거나 정상가격의 구체적 수준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당해 거래(무상제공 또는 무상이전을 포함)의 규모를 말하며 이 경우 거래규모의 산정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

나. 8 일반 정상금리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가 자금거래 시 개별적으로 거래된 “개별 정상금리”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시중은행의 매월 말 평균 당좌 대출금리를 일반 정상금리로 적용함.

나. 9 실제 적용금리

-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의 자금거래 시 실제 적용된 금리

나. 10 개별 정상금리

- 지원객체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없이 이루어진 자금거래 시 적용된 금리

다. 부당한 자금지원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 등 자금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라. 부당한 자산지원행위

- 지원주체가 부당하게 지원객체(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유가증권·무체재산권 등 자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마. 부당한 인력지원행위

-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인력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바. 상품용역거래

바.1 물량몰아주기

- 계열사에게 현저한 규모로 물량을 몰아주는 경우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유형(물량 몰아주기)
 -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가 계열회사 또는 비계열회사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계열회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거래하는 행위
 - 부당하게 계열사 또는 자회사에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도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 현저한 규모의 거래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대법원 판례의 입장)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
 -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
- 현저한 규모의 거래 →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 예시: Don'ts

- 계열사 물량물아주기
- 원재료의 고가매입
- 대금결제방식을 기존에 비해 유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 상품 및 용역거래시 업무상 유의사항

- 동일 품목에 대한 계열사 및 비계열사 거래시 거래단가는 결시공건 및 거래 물량(월별 또는 연간 물량)등을 고려하여 차별없이 결정하여야 함
- 계열사에 대한 대금지급은 원칙적으로 내부 대금결제 기준에 의거, 비계열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 져야 함
 - 계열사로부터 대금 회수는 해당 계열사 대금지급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계열사 제품 구입 관련하여 구입대금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는 경우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가 됨
 - 회사 자금 무상지원 또는 대여가 없다 하더라도 판매목표 할당, 판매실적 관리, 급여공제 등의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거래강제 행위(사원판매)로 지적 됨
- 기업집단 『A자동차』는 기업집단 내의 물류업무를 일원화·통합화하기 위해 물류 전문업체를 설립하기로 하고, 기업집단 『A자동차』의 동일인 ○○○가 40%(10억원), 그의 장남 □□□이 60%(15억원)를 출자하여 2001. 2. B물류사를 설립
- 이후 A자동차(주), D자동차(주), A부품사, A제철(주)는 자신들 제품의 생산·판매에 부수하는 완성차 배달탁송, 철강운송 등 각종 물류업무를 새로 설립된 계열회사인 B물류사에게 사업양수도나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상당부분 몰아주기 함으

로써 2001년 3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총 1,363,727백만원(법위반으로 보는 지원성 물량은 484,440백만원, 지원기간은 2004. 6월까지) 상당을 B물류사와 거래【공정위 2007. 9. 5 의결】

- 현저성 판단기준으로서의 현저한 규모
 -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 현저한 규모의 거래도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대법원 판례의 입장)
- 거래규모는 거래수량에 관한 사항으로서 거래조건에 포함
-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음
 - 현저한 규모의 거래 → 과다한 경제상 이익 제공
- 지원성 거래규모 및 급부와 반대급부의 차이,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

바. 2 계열사 차별취급

-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계열사 차별취급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유형
 - 자기의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수량·품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내용에 관하여 계열회사와 다른 거래상대방을 현저하게 차별하는 행위임. 흔히 상품·용역을 통한 부당지원행위라고 일컬음. 제7호의 자금·자산·인력의 부당지원행위와 마찬가지로 경제력집중 역제의 성격도 지니고 있지만, 계열사와 비계열사를 가리지 않는 자금·자산·인력의 부당지원행위와 달리 계열사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의 판단기준으로서 대법원에 따르면, 특정사업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활동을 한 결과가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귀속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차별행위의 동기, 효과의 귀속주체,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의 주된 의도가 계열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임.**

○ 예시 : Don'ts

- 제품의 품질이나 거래기간, 거래물량 등의 합리적 차이가 없음에도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 저가로 판매하거나 부품 등을 구입함에 있어 비계열회사보다 계열회사에게 납품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행위
- 자기 계열사로부터는 어음으로 대금을 수령하면서 비계열 업체에 대해서는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
- 특정상품을 구입 또는 공급함에 있어서 사규, 공문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열회사와 우선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유도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없이 계열회사에게는 비계열회사보다 어음기간을 짧게 해주거나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대금결사공간을 유리하게 하는 행위

○ 업무상 유의사항 : Do's

- 가격 등 거래조건·거래내용 등에 관하여 계열회사에 대해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에 대해 현저하게 불리하게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열회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취급을 한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를 소명하여야 함

- 에스케이글로벌은 단말기 제조업체들과 단말기 구매계약(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함에 있어 ① 자기의 계열회사인 에스케이텔레텍(주)에게는 단말기 구매가 이루어지는 당월말일을 기산일로 하는 60일 만기어음을 익월 20일자로 지급한 반면, 엘지전자(주) 등 비계열회사에게는 90일 만기어음을 익월말일자로 지급하였고, ② 에스케이텔레텍(주)에게는 판촉비를 구매액의 0.5%만 부담시킨 반면 엘지전자(주) 등 비계열회사에게는 0.8% 내지 1.3%를 부담시킴

사. 부당지원행위별 Don'ts 구체 사례

○ 개요

- 계열회사, 특수관계인, 비계열회사에게 가지급금, 대여금, 부동산, 기업어음, 주식, 인력 등을 아주 높은 가격이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여 이들을 지원해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당해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유형

- 우량한 회사(지원주체)가 부도직전에 있는 계열사(지원객체)에게 시장금리보다 현저하게 저리의 자금을 대여해주거나 계열증권사(지원객체)에 주식투자의 의도가 없이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치하는 경우 혹은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로부터 자금을 빌린 후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
- 사업자(지원주체)가 부실한 계열사(지원객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그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시장할인율보다 현저히 낮은 할인율로(즉,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혹은 계열사(지원객체)를 지원해 주기 위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경우
- 사업자(지원주체)가 계열사(지원객체)의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자신이 부담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유력한 사업자의 지위를 형성·유지·강화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객체가 지원행위로 인하여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되는 경우
- 지원객체가 속하는 일정한 거래분야에 있어서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타사업자의 신규진입이 저해되는 경우
- 관계법령을 면탈 또는 회피하여 지원하는 등 지원행위의 방법 또는 절차가 불공정한 경우

○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지원금액기준 1년간 1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객체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0.2%이상인 경우
- 지원성 1년간 지원자금의 일별 누적합계가 1조원 이상이거나 지원객체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200% 이상인 경우
- 지원성 1년간 자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이거나 지원객체의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중 큰 금액의 2%이상인 경우

- 지원성 인력규모가 연인원 10,000명 이상이거나 지원객체의 종업원의 3%이상 인 경우
- 특정한 지원객체에 대하여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2이상의 계열회사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집단적으로 지원행위를 한 경우

○ 예시 : Don'ts

- 계열회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
- 대여금 및 대여금 이자 미회수, 지연회수 행위
- 제품·용역거래와 무관하게 「선급금 명목으로」 지원객체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자금을 제공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비계열회사 등의 예치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 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행위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하는 행위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수수료, 자산 매각 대금 등의 회수를 지연하는 행위
- 보유하고 있는 지원객체 발행주식에 대한 배당금, 합병교부금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를 태만히 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임직원에게 구매회사를 대역하거나 용자금을 앞선해 주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직원소속 계열회사의 자금으로 부담하는 행위
- 은행에 외환을 저가로 매각하여 계열회사로 하여금 동 은행으로부터 외환을 유리한 조건으로 매입하게 하는 행위
- 계열회사와 공동 광고주로 표시한 광고의 광고비를 전액 지급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비계열사 매입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에 적용되는 할인율보다 낮은 할인율을 적용하여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행위
- 역외펀드를 이용하여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행위

- 금융회사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하고 동 금융회사는 동 자금을 이용하여 지원객체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저리로 매입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로 고가로 발행한 주식을 계열사,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
- 지원객체가 실시하는 유상증자시 발생된 실권주를 특수관계인 등이 고가로 인수하거나 금융회사를 통해 우회 인수하는 행위
- 유상증자 주식의 발행가격이 주가추이, 주가전망, 재무구조 등에 비추어 현저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에 참여하거나 기존주주인 특수관계인 등이 자기의 지분을 현저히 초과하여 인수하는 행위
- 계열회사가 보유한 타회사 주식을 장내에서 시세대로 매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거래로 시세보다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 비상장주식을 매매하면서 상속세법에서 정한 평가가액을 초과하는 가액으로 거래하는 행위(상속세법에 의해 거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성장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 평가하여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포함)
-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가 인수하지 않을 정도의 낮은 금리수준으로 발행된 후순위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
- 비계열금융회사에 후순위 대출을 해주고, 동 금융회사는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저리의 회사채를 인수하는 행위
-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매각하는 행위
- 전환권행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전환가격은 높고 이자율은 현저히 낮게 발행된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인 등이 인수하는 행위
- 경영권 방어목적 등 특별한 사유없이 전환행사로 인해 포기되는 누적이자가 전환될 주식의 시세총액과 총 전환가액의 차액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전환권을 행사하는 행위
- 공장/사무실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임대하는 행위(매매 행위 포함)
-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고가의 임차료를 지급하는 행위

- 공장/사무실 등을 임대한 후 임대 보증금을 지연하여 수령하는 행위
- 공장/사무실 등을 임차한 후 임차 보증금을 정상적인 경우보다 선지급하는 행위
- 임차한 건물의 유지 관리비를 과다 지급하는 행위
- 임차보증금에 대한 계약금을 과다 지급하는 행위
- 지원주체가 보유한 채권(외상매출채권 등)을 특수관계인 등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행위
- 회사채 재인수를 통하여 계열 증권회사에게 회사채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행위
- 특수관계인 등이 발행한 환매조건부채권(RP)을 고가로 매입하는 행위
- 수익증권 판매 보수를 과다 지급하여 계열증권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영업 양수도, 자산 매각, 거래조건 등의 차별을 통한 지원행위 등
- 업무지원을 위해 인력을 제공한 후 인건비는 지원주체가 부담하는 행위
- 인력파견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제공하면서 퇴직충당금등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회수하는 행위

○ 심결례

- 자금지원행위는 자금을 지원할 의도로 자산이나 용역 등의 거래로 인한 대가인 자금을 변제기 이후에도 회수하지 아니하여 지원객체로 하여금 그 자금을 운용토록 함으로써 그 이자 상당액의 금융상이익을 얻게 하는 것과 같은 부작위행위도 포함됨.(대법원2004.10.14.선고2001두2881 대우 1차 사건)
-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의 규제대상은 지원의도에 기한 자금의 제공 또는 거래행위나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그 자체이므로 자금지원의 의도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자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으면 그 즉시 자금지원행위가 성립하고 그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얻게 되는 이익은 이러한 행위로 인한 경제상 효과에 불과한 것임.(대법원2004.4.9.선고2001두6197 현대 1차 사건)

○ 업무시 유의사항

- 계열사 간의 자금대여는 정상금리로 이루어 져야 함
-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낮은 할인율로 매입하는 행위는 부당한 자산지원행위가 될 수 있음

- 지원금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설립 당시부터 경쟁사업자에 비해 경쟁조건이 유리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자금대여시 유의사항

- 계열회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당사 계열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차입이 가능하였다면 해당 차입금리를 적용해 당초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여야 함
- 대여금 및 대여금 이자 미회수, 지연회수 행위는 약정상 대여금 회수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금을 대여한 회사는 최소한 대여금 지연회수 기한에 대한 이자를 추가(자금 대치회사의 차입 이자율 적용)로 수령하여야 함. 단,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차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의 경우 이자율을 불문하고 해당 행위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당지원행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정상 이자율은 동기간의 종금사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함

○ 자금예치시 유의사항

- 계열회사가 비계열회사 등의 예치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자금대여의 경우 자금대차기업의 차입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자금예치의 경우에도 계열 금융회사가 비계열회사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계열회사의 예탁금에도 적용해야 함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하는 경우는 주식매매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시장 실세 금리와 예탁금리간 차이가 큼에 따라 주식매매 거래종료 후에 예금잔액을 인출하지 않은 행위도 금리차이만큼 계열증권회사를 지원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예치기간에 단 하루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으로 봄
 - 예치금액이 거래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거래하지 않은 예치금액은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사에 예탁금 없이 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하므로, 주식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예탁 사실만으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기타 자금거래시 유의사항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수수료, 자산 매각 대금 등의 채권회수 지연은 비계열 회사의 거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에 용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계약서상 명기된 또는 일반적 회수기간 이후의 지연이자(당해 회사 일반적 자금조달 방법 기준 : 예)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채권 회수시 약정된 지연이자를 수령해야 함
- 공동 광고시 광고비 배부는 광고에 따른 수혜의 정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예를 들면, 전년도 해당 매출액 비율로 분담율을 산정하고, 소비재와 중간재 구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소비재×2+중간재×1)하는 방법 등)

○ 기업어음거래시 유의사항

- 지원객체가 정상적으로 CP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가 발행한 CP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행위 자체를 지원행위로 봄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 CP만기,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객체 입장에서의 발행할 인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Check하여야 함

○ 주식거래시 유의사항

- 자기의 지분 범위내에서 증자에 참여하더라도 시가가 발행가액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제3자의 참여가 전혀 없을 경우, 또는 증자 참여 사유, 시가 이상 발행해야 하는 이유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비상장주식 거래시 가격 결정 순서
 - 동일 또는 유사시기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
 -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 기준에 따른 주식 평가액
-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상속세법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름. 단,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정보통신기업, IT관련기업 등)의 경우 상속세법기준에 따른 평가에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증가율 등 성장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 회사채 거래시 유의사항

- 위험도가 낮은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윤 추구를 위한 투자행위로 간주될 수 있도록 행위에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금리, 가격 등의 적정성)를 마련한 후 거래를 함

○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매매시는 평가기관의 평가액 기준, 임대차시는 주변 시세와 비교 또는 동일 건물 내 입주한 제3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 함
-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입주(계약) 전에 선지급한 보증금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10% 초과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기타 자산거래시 유의사항

- 보유채권 매각은 동 채권의 정상가격을 산정(공인 신용평가회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격)하여 동 가격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간사회사의 제한)에 의해 무보증회사채 발행시에는 계열증권사를 회사채 인수를 위한 간사회사로 선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계열회사를 중간사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동 회사채를 계열증권사에 하인수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지적될 수 있음
- 영업 양수도 및 자산 매각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거, 동 평가액 수준에서 이루어 져야 함
- 결재 조건(기간 등)은 통상적인 경우와 동일하여야 함
- ○○그룹 계열사들이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계열회사인 ‘갑’(주) 등에게 ‘갑’(주)가 발행하는 후순위사모사채를 저리로 매입하는 방법(지원성 거래규모는 148,000백만원이고, 지원금액은 후순위자금대여의 특성상 정상금리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산출되기 어려움) 저리로 대출하는 방법(3,678만원 지원) 예금담보 제공을 통한 우회지원 방법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19억 5,300만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공정위 2005. 5. 30. 의결 제 2005-074호】
- (주)○○이 관계회사인 (주)‘을’에게 대여금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방법으로 1억 9,200만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7,600만원의 과징금 부과【공정위 2002. 8. 30 의결 제 2005-074호】

제 8 절 - Check List 1(하도급법 관련)

1. 하도급법 관련 **체크리스트**

가. 하도급 계약 체결단계

-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를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
- 제조 위탁 전에 양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하도급 계약을 교부하고 있는지
-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서류를 거래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존하고 있는지
- 하도급 계약서에 법정기재사항과 검사기준, 방법, 시기,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수급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
- 하도급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하는 경우 최저가 입찰 금액 이하로 하도급 계약금액을 결정하고 있지 않는지

나. 하도급 계약 이행단계

- 제조위탁 목적물의 사양, 구조, 디자인, 발주자의 요청 등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주고 있는지
- 계약 기간 중 당초 체결된 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변경된 경우가 있는지
- 제조 위탁한 물품에 대하여 위탁을 취하하거나 수량을 거부·지연한 경우가 있는지
- 납품된 물품에 대하여 반품한 경우가 있는지
- 재계약시 전 계약금액 또는 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가 있는지
- 수출하는 물품의 제조위탁 등과 관련하여 내국신용장을 개설하고 있는지
- 위탁한 목적물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경우 납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하고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를 통보하는지

다. 하도급대금 지급단계

- 관세를 환급 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 하도급대금 청구 세금계산서를 매월 15일 말일 2회에 걸쳐 일괄징수하고 있는지
- 하도급대금은 전액 현금 또는 상환청구권이 없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로 지급하고 있는지
- 하도급대금을 현금일 경우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인 경우는 익월 15일부터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자체 대금지급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 상환청구권 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 대출의 결재기간이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준수되고 있는지

2. 하도급법상의 의무사항

가. 서면 교부

- 법정기재사항 중 일부 누락된 경우
- 제조·수리·건설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서면을 교부한 경우
- 전산으로 발주하였으나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
- 발주처 통보 등의 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하도급 계약서는 적법한 서면교부로 보지 않음
- 시공과정 중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서면 미교부에 해당

나. 서면 보존

- 하도급대금의 지불이 완료된 시점에서 하도급대금 지불 전의 관계서류(검수관계, 반품관계, 하도급대금의 결정)를 파기하는 경우
- 계약서내용을 컴퓨터에 입력시킨 후 파괴하는 경우

다. 선급금 지급

-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은 비율로 지급한 경우

- 선급금을 법정기일 내에 어음으로 지급하고 어음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였으나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한 경우
-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현금 또는 어음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나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또는 어음할인료 미지급

라. 감사의 기준방법 · 시기

- 원사업자가 대금지급을 지연시키기 위하여 목적물 인수를 거부 또는 지연하는 것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하여 감사기준, 방법, 시기를 후에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감사에 적용하는 것
- 감사기준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하여 정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통상 적용되는 감사기준보다 매우 엄격하게 정해서 통상적으로 합격품으로 판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합격 처리하는 경우
- 불량품의 발생을 예상하여 대금의 지급을 과다하게 유보하는 경우

마. 하도급대금의 지급

- 하도급대금을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검사종료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간주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월 1-2회 납품 받고도 마감제도를 운영한다는 명목으로 그 달의 말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잡는 경우

바.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 하도급대금 결정에 있어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행위

-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 등을 받게 됨
- 구체적인 납품단가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결정
- 조정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 당사자가 11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 할 수 있음
- 서면기재사항에 납품단가 조정관련 조항 추가
 -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 서류보존항목에 납품단가 조정관련 서류 추가
 -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 조정신청 및 협의내용, 조정금액, 조정사유

3. 원사업자의 금지사항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자재(원부자재 포함)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 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다량발주를 전제로 하여 수급사업자에게 견적토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출, 할인특매, 경품류, 견본용 등을 이유로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하회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원도급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동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나. 물품 등의 구매강제

- 계약 당시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원사업자에게 고가의 부품구매를 수급사업자에게 강요하는 경우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는 경우

다. 부당한 수령거부 및 수령증 교부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수급사업자의 납품, 시공한 목적물의 내용이 위탁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정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위탁 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등을 늦게 공급하여 납기·공기 내 납품이 불가능함에도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기 수령한 물품이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위탁한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부도 등에 따라 안정적인 공급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기 발주한 물품의 수령을 임의로 거부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의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장소 부족 등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수령을 지연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납기를 연기 통보하는 것
- 발주자의 발주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시키는 행위
- 이미 수령하여 시장에서 유통되는 물품의 판매가 부진하게 되자 새로 발주한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라. 부당반품

- 원사업자가 기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 외국수입업자,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납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마. 부당감액

- 하도급대금의 총액은 그대로 두고 납품수량을 증가시키는 행위
- 하도급 계약 후 추가위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추가하도급대금이 경미함을 이유로 이를 감액하여 원 계약금액만을 지급하는 행위
- 계속적인 발주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감액하는 경우
- 총액으로 계약 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경우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시점의 일반물가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자재가격 등이 계약시점보다 낮아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목적물의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다르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 위탁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수출용품의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가 환차손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당초 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키는 경우

바.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 장기계약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에게 그 부품의 제조에 필요한 자재 등을 원사업자로부터 사게 하고, 그 물품대금을 그 물품을 납품하기도 전에 전액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에 필요한 장비나 물품을 사게 한 후 원사업자가 납품분에 대한 일부 하도급대금 지급 시 실제로 투입한 양보다 더 차감하는 경우

사. 부당한 경영간섭

- 수급사업자의 생산품목, 시설규모 등을 제한하는 행위
- 1차 수급사업자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목적물의 품질유지 및 납기 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 목적과 관계없이 2차 수급사업자의 선정, 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 거래내용을 제한하는 행위

아.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 공정위가 시정 조치한 원사업자가 이를 신고한 수급사업자에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협력업체 등록을 해제하거나, 협력업체 신용등급을 A등급에서 B등급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4. 확인사항

가. 구매/협력업체(거래처)선정 및 단가결정단계

- 외주업체 선정 시 "품질 · 가격 · 서비스 등"을 고려하지 않은 선정행위
- 단가결정시 협력업체와 합의하지 않는 행위
- 단가인하를 일시에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행위
- 단가인하 합의 후 소급적용 하는 행위
- 거래 기본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계약서 작성시 양자가 기명 날인하지 않는 행위

나. 구매/구매물량 발주단계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고객(원발주자, 수요자)의 클레임, 판매부진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
- 생산계획의 취소 등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발주 취소 등을 하는 행위
- 수출물품의 경우 제조위탁일로부터 15일 이내 LOCAL L/C를 개설해 주지 않는 행위
- 거래계약서 없이 발주(주문)서를 발행하는 행위
- 다량발주를 약속하고 단가결정 후 일부만 발주하는 행위

다. 구매/위탁물 수령 및 검사단계

- 협력업체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수출물품인 경우 검사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협력업체에게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
- 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계약서에 공정한 검사기준 및 방법을 포함시키지 않는 행위
- 위탁물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결과를 협력업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행위
- 검사기간이 초과된 후 불량품이 발생하여 반품하여 반품시킬 경우 1:1로 교환하지 않는 행위
- 당초 합의된 검사기준 및 방법보다 높은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 판정하는 행위

라. 구매/대금지급단계

- 추가발주 등의 금액인상분을 반영 하지 않는 행위
- 경제상황 변동(물가변동 등)에 따른 영향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
- 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증가금액을 반영하지 않는 행위
- 어음할인료를 지급하고 어음할인료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감액하는 행위
- 수출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제비용(환차손, 외환수수료 등)을 협력업체와 합의 없이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행위
- 관세환급의 유무와 관계없이 협력업체에게 정해진 기일 내에 관세환급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계약체결 시 계약서 등에게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금액을 대금지급 시 부당하게 조정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거래대금을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한 날(세금계산서 발행일자)로부터 60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 대금의 지급기일(60일)이 초과된 경우 초과된 일수에 대한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어음할인료를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과 동시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 협력업체와 하도급거래의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 거래대금과 매출거래대금의 상계처리를 희망하는 요청없이 상계 처리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 지급할 때 자사 및 기타 타회사의 물품으로 대금지급 하는 행위
- 거래를 결정한 후 협력업체와 대금지급기준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지 않는 행위
- 계열회사에 지급되는 어음의 만기일을 비 계열회사에 비하여 장기간으로 하는 행위
- 비 하도급업체의 대금지급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행위

마. 구매/협력업체 생산 및 관리단계

- 위탁물에 소요되는 부품 및 원재료의 구입처를 지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위탁물의 제조에 필요한 제조설비의 구입처를 제한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 위탁물과 관련 없는 물품의 구입처를 제한하는 행위 및 압력을 가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경영자료 등을 일방적으로 징구하거나 기타 부당한 경영간섭(인사청탁 등)을 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 물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으로 경영간섭을 하는 행위
- 불공정거래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허위자료 및 허위보고를 요구하는 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로부터 시정조치를 받고 편법으로 이행조치를 회피하는 행위
- 생산기술지원 등의 사유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등을 공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구두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일정물량을 구입한다는 조건하에 생산설비 증설을 하도록 하고 거래물량 축소 또는 거래중단을 하는 행위
- 협력업체가 원사업자의 경쟁사업자와 거래를 한다는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는 행위

- 중소기업계열화품목을 자체 생산하기 위하여 거래중단 또는 거래물량을 축소하는 행위
- 사전 예고기간 없이 거래중단 및 거래물량을 축소하는 행위

바. 영업/수주영업-주문판매

-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부당한 거래를 하는 행위
- 수주업체가 다수인 경우 수주처의 선정기준이 공정하지 않는 경우
- 수주처에게 기술자료·정보제공 조건 등의 제시를 요구하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 거래상대방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하여 단가를 적용하는 행위
- 담합을 통하여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
- 과도한 이익제공이나 저가판매를 통하여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 부당한 거래제한이나 거래중단으로 거래의 계속성·침해 및 거래처의 사업수행 방해하는 행위
- 거래개시나 거래지속을 근거로 계열사 제품 구입강요나 사원판매를 유도하는 행위
- 특정 또는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행위

사. 재정경리/회계관리

- 어음할인료 또는 지연이자를 지급한 후 편법으로 회수를 요구하는 행위
- 자금의 조기집행을 명분으로 거래업체에게 부당한 거래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 위탁물 수령 후 세금계산서를 의도적으로 지연하여 발행하는 행위
- 대금지급을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하여 처리하지 않는 행위
- 하도급거래 성립 시 대금지급기일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 목적물 납입 후(마감제도 시 마감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 지연 시 : 지연이자 지급
 - 어음지급 시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어음할인료 지급
 - 선금급 지급 준수(선금급 받은 조건에 따른 지급)

5. 하도급법상 유의사항

가. 하도급법상 견적서 접수 및 수정시 주의사항

- 협력회사의 사용 양식(제출 양식) 그대로 사용할 것
- 가격에 변화가 있다고 해서 제출된 견적서에 사선을 긋고 도장을 찍은 후 신규 단가를 기입하지 말 것. 신규 단가를 부득이하게 기입시 해당 업체의 협상 담당자가 직접 기입하게 할 것
- 협력회사의 명판 및 날인이 없는 경우는 반드시 수령을 거부할 것
- 단가 협상 결과 품의 예정된 금액과 현저한 차이를 보일 경우 '단가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외에 별도로 신규 견적서를 작성해 올 것을 요구할 것
- '원가절감 몇% 달성', 'CD 계획', '이전 가격과의 비교표' 등 단가 인하를 암시하는 그 어떠한 단어도 표기하지 말고, 품의서 작성 담당자의 별도 의견이 있을 경우 별지를 붙여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할 것

나. 산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의 유의점

- 산정방법은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는 것이 곤란한 어쩔 수 없는 경우(예를 들면 試製品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 수리위탁에 있어 수리해보지 않고는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산정될 수 없는 경우, 일정기간을 정한 역무제공위탁에 있어 그 기간에 제공한 역무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대금이 지불되는 경우 등)에 산정방법의 형태로 있으면 정식단가로서 인정됨
- ① 산정방법은,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자동적으로 확정할 수 없으면 안되며, ② 산정방법을 정한 서면과 발주서면이 별도의 것인 경우에는 이들 서면의 관련성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③ 늦어도 최초의 대금지불시까지하는 하도급대금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두어야 함

다. 가단가 (仮單價) 유의점

- 가단가를 기재한 경우에 정식단가가 기재된 것이 아니므로 「단가가 결정되지 못한 사유」와 「단가를 결정할 예정기일」을 기재하여 단가가 결정된 후에는 바로 보충서면을 교부해야 함

라. 단가변경시 소급적용 유의점

- 단가의 인하에 대해 합의한 날(합의일)과 신단가의 적용을 개시하기로 한 날(단가 개정일)이 다른 경우에는, 합의했다고 하여 단가변경일보다 이전의 발주에 대해 신 단가를 적용하면 하도급대금의 감액에 해당. 또한 합의일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로부터 견적서가 제출되었을 뿐일 때에는 합의한 것으로 되지 않고, 단가개정에 관해 서로가 합의한 날이 합의일이 됨
- 나아가 0월 납입 분부터 신단가를 적용하려는 교섭은, 교섭이 장기간 걸림에 의 해 소급적용으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0월 발주분부터 해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6. 하도급법 법정기한 관련 규정

〈비대금 관련 법정기한〉

구분	대상자 ⁵	주요내용	기한	기한초과시	비 고
서면발급시기 (법 §3①)	원사업자	다음의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발급하여야함	제조위탁-작업착수 전 수리위탁-수리행위 시작 전 건설위탁-계약 공사 착공 전 용역위탁-용역수행행위 시작 전		서면미교부는 과징금부과대상이나 서면지연교부 및 일부 누락하여 발급한 경우, 하도급금액 5 천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제외됨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회신 (법 §3⑥)	원사업자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위탁내용, 대금 등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경우 그에 대해 서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단, 천재 등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됨

5 당해 기한을 준수해야 할 입장에 처한 자를 말함.

		회신을 발송하여야 함			
서류보관 (법 §3⑩)	원사업자 및 수급 사업자	서면 서류는 거래가 끝난 날 ⁶ 부터 3 년간 보존하여야 함	거래종료 후 3 년		
내국신용장 개설 (법 §7)	원사업자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어야함	위탁한 날부터 15 일 이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
검사기준·방법 및 시기(법 §9)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검사결과를 통지하여야함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 일 이내	이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 가능 - 용역 위탁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적용제외
신고 통지 (법 시행령§10②)	공정거래 위원회	원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신고가 접수된 사실은	신고 접수된 날부터 14 일 이내		

원사업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신고자 할

- 6 '거래가 끝난 날' 이란 제조위탁·수급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정보성교물의 작성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을,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역무공급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을 말함.

		신고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함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법 §23)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사건만 조사개시 대상이 됨	거래가 끝난날부터 3년	심사 불개시 (미착수종결)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난 경우에도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

〈대금 관련 법정기한〉

구분	대상자	주요내용		기한	기한 초과시	비고
하도급대금의 지급 (법§13①②)	원사업자	다음의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목적물 등의 수령일 등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경우	정한 날	하도급법에 의하면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을 달리하고 있음. 그러나 지연이자는 법정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도급법 §13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부터 기산하고 있음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및 해당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하도급법§13의 단서)에는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라도 그 정한 날을 지급기일로 봄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	목적물 등의 수령일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	수령일 부터 60일이 되는 날		
지연이자 (법§13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현재		수령일 부터 60일 이후부		

		연 20%)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함	터		
어음할인료 지급 (법§13㉔)	어음을 수령일부터 60 일 이내에 교부하는 경우	수령일로부터 60 일이 지난 날 이후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	수령일 부터 60 일 이내에 지급	연 7.5%의 할인율이 적용된 어음할인료를 지급	수령일부터 60 일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60 일이 지난 날로부터 교부일까지 지연이자 지급
	어음을 수령일부터 60 일 이후에 교부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수급사업자에 게 지급하여야 함	어음을 교부하 는 날에 지급		
선금금의 지급 (법§6)	발주자로부터 선금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함		발주자 로부터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 (2009.9.15. 부터 시행, 그 이전에는 25%임)	하도급대금지급기일 (수령일로부터 60 일)이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기일 이내에 지급
발주자로부터 의 준공금등 지급관련 (법§13㉓)	발주자로부터 준공금 또는 기성금 등을 받았을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함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법§15)	수출할 물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또는 용역 위탁한 경우, 관세를 환급받은 경우 그 받은 내용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환급받 은 날부터 15 일 이내		

<p>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법 §16)</p>		<p>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되거나 이로 인해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하여야함</p>	<p>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 30 일 이내에 조정</p>	<p>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후 지연이자가 붙음</p>	<p>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한함</p>
<p>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에 대한 협의의무 (법 §16-2)</p>		<p>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면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함</p>	<p>신청이 있는 날부터 10 일 이내</p>	<p>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30 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양당사자는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p>	<p>수급사업자의 조정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한함</p>

7. 하도급법 과태료, 과징금, 고발 관련 규정

〈과징금〉

구분	법령	요건	벌칙
과태료	하도급법 제 30 조의 2	제 1 항 1.출석처분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과태료 부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경우에는 1 억원 이하
		제 1 항 2.공정거래법 제 50 조 제 1 항 제 3 호 또는 같은조 제 3 항에 따른 ⁷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자	과태료 부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1 천만원 이하
		제 2 항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는 경우 및 지정된 장소에서 관계인의 진술을 듣는 경우에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자	과태료 부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종업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경우에는 5 천만원 이하
제 3 항	하도급법 제 22 조의 2 제 2 항의 규정(하도급거래 서면질태조사)에 의한 자료를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7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공정거래 위원회는 이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1항 제3호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기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지’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사업자단체 또는 이들의 임직원에 대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의 제출을 명하거나 제출된 자료나 물건의 영지를 할 수 있다.’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원사업자	
	제 4 항	심판정의 질서유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 과태료의 부과방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22.)

과태료는 총하도급거래금액 중 범위반금액 비율, 기업규모, 고의성 여부 및 과거 법 위반실적 등을 감안하여 부과한다.

〈과징금〉

구분	내용	비고
일반 기준 (과징금 고시 Ⅲ-1)	과징금 부과여부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결정하되, 위반행위로 인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하거나 다수의 수급사업자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및 과거 범위반전력이 많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범위반의 중대성과 파급효과는 위반 사업자의 위반유형, 위반행위의 수, 위반금액·비율, 관련 수급사업자의 수 및 위반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하는 경우 ⁸ (과징금 고시 Ⅲ-2)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 위반으로 조치(경고 이상)를 받고 별점 누산점수 ⁹ 가 2 점 이상인 경우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음

8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과징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기준에 따른 경우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

9 '누산점수'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별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함

<p>위반행위가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p>	<p>법 제 3 조(서면의 발급)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위반한 경우</p>	<p>서면을 지연하여 발급하거나 시행령 제 2 조의 서면기재사항을 일부 누락하여 발급한 경우 및 하도급 금액이 5 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p>
	<p>법 제 4 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또는 제 11 조(부당감액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로서 위반금액이 3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p>	
	<p>법 제 12 조의 3(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등) 또는 제 19 조(보복조치의 금지) 또는 제 20 조 (탈법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p>	<p>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이번 개정(2010.12.31.)에서 원칙적 과징금 부과대상으로 추가됨</p>
	<p>위반행위¹⁰의 수가 3 개 이상이며, 위반행위와 직접 관련된 수급사업자가 30 개 이상인 경우</p>	
	<p>위반금액이 3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p>	

10 ‘누산점수’란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직전 3년 동안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뺀 점수를 말함

〈고발〉

가. 근거조항

하도급법 제32조 [고발] 제30조의 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0조의 죄 목록〉

목 록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금지 위반	제12조의 3 기술자료 제공강요 금지 위반
	제5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위반	제13조 하도급대금 관련 위반
	제6조 선금금의 지급 위반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자
	제7조 내국신용장의 개설 조항 위반	제15조 국세환급금등의 지급의무위반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위반	제16조 설계 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관련 위반
	제9조 검사의 기준, 방법 및 시기에 관한 위반 사항	제16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제10조 부당반품의 금지 위반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금지 위반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위반	제18조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위반
	제12조 물품구매대금의 부당결재청구의 금지 위반	제19조 보복조치의 금지 위반
	제12조의 2 경제적 이익의 부당강요 금지 위반	제20조 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공정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을 거짓으로 한 자	

나. 요건 및 절차

근거 법령		내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	요건	21. 마.(1).	탈법행위(하도급법 제20조) 또는 보복조치(법 제19조)를 한 업체로서 법 위반정도가 중대하거나 법 위반동기가 고의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고발 조치함
		21. 마.(4).	법 위반사업자가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고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발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당해 행위의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하도급거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 요청을 받고 스스로 시정하여 경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
	절차	21. 마.(2).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차 독촉하고, 1차 독촉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2차 독촉을 하고 불이행시 고발조치함
		21. 마.(3).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서의 정보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통보한 후 불이행시 고발조치함

다. 고발이슈 정리

이슈	내용		비고
법인을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에 있어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됨	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인의 법 위반행위가 사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사업자에게 그 사용인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함
	처벌규정이 없는 경우	공정거래법 제70조 양벌 규정적용 (적용 가능한 경우에만 당사자능력 인정됨-판례 ¹¹ 는 원칙적으로	

11 대법원 1984.10.10.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	
고발의 대상	고발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따라서 고발의 대상인 범죄 사실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됨		판례 ¹² :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여 검찰이 공소제기한 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시각 판결 선고함
공소시효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모두 5년		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검찰의 고발사건처리	처리기간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고발결과통지	검사는 공소제기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함	검사가 공정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 공정위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
공정위 고발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가 가	공정위의 고발조치·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없음		판례 ¹³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71조는 공정거래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9. 선고 2008고단1863 판결

13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13794 판결

<p>능한지 여부</p>			<p>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간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p>
<p>공무원의 일반적 고발 의무</p>	<p>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34조)</p>		<p>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란 범죄의 발견이 직무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고 직무집행과 관계없이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p>
<p>법인을 고발할 수 있는지 여부</p>	<p>법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p>	<p>형사소송에 있어 법인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됨</p>	<p>양벌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용인의 법 위반행위가 사업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사업자에게 그 사용인의 법률위반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있어야함</p>
<p>부</p>	<p>처벌규정이 없는 경우</p>	<p>공정거래법 제70조 양벌규정적용 (적용 가능한 경우에만 당사자능력 인정됨-판례¹⁴는 원칙적으로 법인은 범죄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봄)</p>	

14 대법원 1984.10.10.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판결

고발의 대상	고발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 따라서 고발의 대상인 범죄 사실은 특정되지 않으면 안 됨		판례 ¹⁵ : 합성수지 가격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고발하여 검찰이 공소제기한 건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시각 판결 선고함
공소시효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경우는 공소시효가 모두 5년		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 결과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범에 있어서는 결과가 발생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검찰의 고발사건 처리	처리 기간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함	
	고발 결과 통지	검사는 공소제기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함	검사가 공정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에 공정위의 청구가 있으면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9. 선고 2008고단1863 판결

<p>공정위 고발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한지 여부</p>	<p>공정위의 고발조치·의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으로 다룰 수 없음</p>	<p>판례¹⁶ “고발은 수사의 단서에 불과할 뿐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공정거래법 제 71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을 위 법률위반죄의 소추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조치는 사직당국에 대하여 형벌권행사를 요구하는 행정기간 상호간의 행위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p>
<p>공무원의 일반적 고발 의무</p>	<p>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제234조)</p>	<p>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란 범죄의 발견이 직무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를 말하고 직무집행과 관계없이 우연히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p>

16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13794 판결

〈별지1〉

라. 위반행위의 유형

1. 신고 또는 조정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었을 때	12.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였을 때
2. 하도급법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 위반	13.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였을 때
3. 서면의 발급·보존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14. 하도급 거래량을 조절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간섭하였을 때
4.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거나 하도급을 받도록 강요하였을 때	15.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법한 선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 하였을 때	16.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을 개설하여 주지 아니하였을 때
6.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을 때	17. 정당한 사유없이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사업자가 지정하는 물품·장비 등을 구매·사용하도록 강요하였을 때	18. 법13조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위반하였을 때
8.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제조 등의 위탁을 취소·변경하거나 목적물 등의 납품에 대한 수령·인수를 거부하였을 때	19. 법14조 (발주자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위반하였을 때
9.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목적물 등을 반품하였을 때	20. 법15조 (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을 위반하였을 때

10.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였을 때	21. 법16조 (설계변경 등의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반하였을 때
11. 물품구매대금 등을 부당결제하게 하였을 때	22.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8. 하도급법 체크리스트 항목

관련조항	체크항목(위반유형)	방법
제 3 조 (서면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교부하는가? · 서면은 사전에 교부하였는가? · 교부한 서면에는 법정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가? ·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는가? ·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은 교부하였는가? 	· 하도급계약서의 계약내용을 검토
제 4 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이 결정되지 않았는가? · 수급사업자 선정시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가격협상을 하여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방법을 확인한 후 수의계약인 경우 원도급의 직접공사비 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검토 · 위탁후 계약이 체결된 경우 견적금액과 계약금액을 비교검토 · 경쟁입찰인 경우 각 업체별 입찰가격과 낙찰된 가격을 비교
제 5 조 (물품 등의 구매강제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구매를 강요하지 않았는지? 	
제 6 조 (선급금의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급금은 적정금액이 지급되었는지? · 지연지급하지 않았는지? · 법정지급기일내에 지급되었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받은 선급금과 지급한 선급금 비교검토 · 선급금을 수령하였으나 수령한 비율보다 적게 지급한 것은 아닌지 여부

제 8 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였는지?	· 하도급계약이 취소된 경우 그 사유 및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유무 확인
제 11 조 (부당감액)	·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였는가? · 시공물량은 늘었으나 계약금액은 변경되지 않은 공종이 있는지?	· 위탁계약당시 정한 금액을 추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확인
제 12 조 (물품구매대금 부당결재청구)	· 물품구매대금 등을 부당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시공에 필요한 자재 등을 자기로부터 구입하게 하였는지 여부와 실제투입한 물량가액 이상으로 기성금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 확인
제 13 조 (하도급대금 지급 등)	· 대금지급기일을 지키고 있는 지? ·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지? · 현금결제비율은 지키고 있는 지? · 어음만기일 유지하고 있는 지? · 지연이자는 지급하는지? · 어음할인료는 지급하는지?	· 회계원장 · 어음대장 · 구매카드 등 약정서
제 13 조의 2 (지급보증)	·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하고 있는 지? · 보증금액은 적정한지? · 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지? ·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증권을 받았는지?	· 하자이행 및 계약이행증권 확인
제 16 조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 설계변경 및 ESC 와 관련 계약금액을 조정하였는지? · 계약금액 조정은 30 일을 초과하지 않았는지? · 계약서상 불공정한 특약을 설정하지는 않았는지?	
제 17 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합의는 있었는지?	· 당초 계약서상 하도급대금을 대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와 대물변제한 것의 실제가치가 하도급대금에 상응하는지 여부 확인

제 9 절 - Check List 2(공정거래법 관련)

1. 체크리스트

가. 시장지배적사업자 남용행위

- 거래상대방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타당성이 없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가격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지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지
- 독점공급하고 있는 제품요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여 사업활동을 방해하는지
-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과도한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면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필수적인 인력을 채용하는지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지(거래처에게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제품만 취급하고 다른 사업자의 제품은 취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사업자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래처와 배타적 거래계약을 체결하는지
-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사업자의 지속적인 사업활동에 필요한 권리 등을 매입하는지
-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공급·판매에 필수적인 요소의 사용 또는 접근을 거절하거나 제한하는지

나. 부당공동행위

- 경쟁사업자와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의사연락이나 정보 교환한 사실이 있는지
- 경쟁사업자와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거나 물량 조정 등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있는지
- 경쟁사업자와 합리적인 영업활동 등을 명분으로 시장이나 고객을 나누어 서로 침입하지 않기로 묵시적인 신사협정을 한 사실이 있는지

-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또는 모임에서 가격, 생산량, 출고량 등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의제에 대하여 논의한 사실이 있는지

2. 공정거래법 업무상 유의사항

가.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점검시 유의사항

- 납입자본금 변동현황 확인
- 계열사편입일자 확인(공정위로부터 계열편입 통지일(승인일)) 확인
- 부동산임대차의 경우 자동연장조항 관련하여 재계약 여부 확인
 - 언제부터 부동산을 임대차 하여 사용했는지 그리고 공시하였는지 여부 확인
- 상장회사, 코스닥등록법인 여부 확인
 - 2003.6.3부터 공시기한 변경(기존 익일에서 6.3일 이후에는 익일 또는 7일 이내(비상장사)로 조정)
 - 주식의 장내거래인 경우에는 매도자의 입장에서는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다면 공시의무 미발생
-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시 계열금융회사의 거래상대방이 한도공시를 하지 않고 직접 행위시점에 공시하였을 경우에 공시양식에 이사회의를결 일자를 기재하는 란이 없기 때문에 이사회의를결 여부는 별도로 확인 필요
- 상품 및 용역거래와 관련하여 담보제공을 한 경우에는 주거래에 수반된 종된 거래로 보아 공시의무 미발생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주식전환행위는 주된 거래에 수반된 종된 거래로 공시의무 미발생
- 조기에 상환하는 행위는 공시의무 미발생
- 계열회사의 유상증자시에 증자하는 회사와 참여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공시대상요건이 되면 이사회 의결을 기준으로 공시여부 확인(참여하는 회사의 경우 주금납입일 기준이 아님)
- 공시대상 거래여부 판단시 거래금액에 부가세는 제외
- 부동산 임대차 거래시 거래상대방, 거래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1건의 행위로 보아 공시여부 판단

- 소급의결, 사후의결의 경우 자료확보 후 협의하여 결정

나. 부당지원 행위

나. 1 자금대여시 유의사항

- 계열회사에게 저리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당사 계열회사가 금융회사로부터 자금채입이 가능하였다면 해당 차입금리를 적용해 당초 약정에 따라 이자를 수령하여야 함
- 대여금 및 대여금 이자 미회수, 지연회수 행위는 약정상 대여금 회수 기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며 자금을 대여한 회사는 최소한 대여금 지연회수 기한에 대한 이자를 추가(자금 대치회사의 차입 이자율 적용)로 수령하여야 함
- 단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계열사에 대한 자금대여의 경우 이자율을 불문하고 해당 행위사실 자체만으로도 부당지원행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정상이자율은 동기간의 종금사 최고금리를 적용하여 지원금액을 산정함

나. 2 자금예치시 유의사항

- 계열회사가 비계열회사 등의 예치금에 적용하는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계열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는 자금대여의 경우 자금대차기업의 차입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 것처럼 자금예치의 경우에도 계열 금융회사가 비계열회사의 예탁금에 적용하는 수준의 이자율을 계열회사의 예탁금에도 적용해야 함
- 주식매입을 하지 않으면서 증권예탁금 명목으로 계열증권회사에 일정기간 자금을 저리로 예탁하는 경우는 주식매매 거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금융시장 실세 금리와 예탁금리간 차이가 큼에 따라 주식매매 거래종료 후에 예금잔액을 인출하지 않은 행위도 금리차이만큼 계열증권회사를 지원한 행위로 간주될 수 있음
- 예치기간에 단 하루라도 정당한 사유없이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을 경우 위법으로 봄.
- 예치금액이 거래금액에 비해 지나치게 클 경우 거래하지 않은 예치금액은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상장법인의 경우 증권사에 예탁금 없이 주식 매매거래가 가능하므로, 주식매매 여부와 관계없이 예탁 사실만으로 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나. 3 기타 자금거래시 유의사항

- 지원객체에 대한 매출채권, 수수료, 자산 매각 대금 등의 채권회수 지연은 비계열 회사의 거래에 있어서도 일반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에 용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 계약서상 명기된 또는 일반적 회수기간 이후의 지연이자(당해 회사 일반적 자금조달 방법 기준 : 예)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에 대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채권 회수시 약정된 지연이자를 수령해야 함
- 공동 광고시 광고비 배부는 광고에 따른 수혜의 정도에 따라 배분하여야 함(예를 들면, 전년도 해당 매출액 비율로 부담율을 산정하고, 소비자재와 중간재 구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계산(소비재×2+중간재×1)하는 방법 등)

나. 4 기업어음거래시 유의사항

- 지원객체가 정상적으로 CP를 발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객체가 발행한 CP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행위 자체를 지원행위로 봄.
- 지원객체의 신용등급, CP만기, 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원객체 입장에서의 발행할 인율이 적정한지 여부를 Check하여야 함

나. 5 주식거래시 유의사항

- 자기의 지분 범위내에서 증자에 참여하더라도 시가가 발행가액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제3자의 참여가 전혀 없을 경우 또는 증자 참여 사유, 시가 이상 발행해야 하는 이유 등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비상장주식 거래시 가격 결정 순서
 - ① 동일 또는 유사시기에 독립된 제3자와의 거래가 있는 경우 그 거래가격
 - ②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상속세법 기준에 따른 주식 평가액
-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비상장 주식을 상속세법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름. 단,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정보통신기업, IT관련 기업 등)의 경우 상속세법기준에 따른 평가에 매출액 증가율, 순이익 증가율 등 성장가능성을 추가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함

나. 6 회사채 거래시 유의사항

- 위험도가 낮은 안정적인 투자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도가 높은 회사채를 매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윤 추구를 위한 투자행위로 간주될 수 있도록 행위에 정당성을 입증할 근거(금리, 가격 등의 적정성)를 마련한 후 거래를 함

나. 7 부동산 거래시 유의사항

- 매매시는 평가기관의 평가액 기준, 임대차시는 주변 시세와 비교 또는 동일 건물 내 입주한 제3자와의 거래 조건과 비교함
- 임차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경우 입주(계약) 전에 선지급한 보증금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계약금은 통상적으로 보증금의 10%를 지급하는 것이 관례이므로 10% 초과하여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열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음

나. 8 기타 자산거래시 유의사항

- 보유채권 매각은 동 채권의 정상가격을 산정(공인 신용평가회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가격)하여 동 가격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8조(간사회사의 제한)에 의해 무보증회사채 발행시에는 계열증권사를 회사채 인수를 위한 간사회사로 선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므로 비계열회사를 중간사로 선정한다 하더라도 동 회사채를 계열증권사에 하인수시키는 행위는 부당한 지원행위로 지적될 수 있음
- 영업 양수도 및 자산 매각은 공인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에 의거 동 평가액 수준에서 이루어 져야 함
- 결재 조건(기간 등)은 통상적인 경우와 동일하여야 함

나. 9 부당한 상품 및 용역거래시 유의사항

- 동일 품목에 대한 계열사 및 비계열사 거래시 거래단가는 결제조건 및 거래 물량(월별 또는 연간 물량)등을 고려하여 차별없이 결정하여야 함
- 계열사에 대한 대금지급은 원칙적으로 내부 대금결제 기준에 의거 비계열사와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 져야 함

- 계열사로부터 대금 회수는 해당 계열사 대금지급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 계열사 제품 구입 관련하여 구입대금을 회사에서 무상으로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무이자로 대여하여 주는 경우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가 됨
- 회사 자금 무상지원 또는 대여가 없다 하더라도 판매목표 할당, 판매실적 관리, 급여공제 등의 행위가 이루어 질 경우 거래강제 행위(사원판매)로 지적됨

3. 입찰관련 유의사항

가. 수주자의 선정에 관한 행위

가)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유의사항]

(가)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주의욕, 사업활동실적, 대상물건 등에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사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입찰가격을 조정 등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불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불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나)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정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사항]

(가)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에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수주 수량 등에 대한 행위

가) 수주수량 · 비율 등의 결정

- 사업자는 공동으로 입찰에 관한 발주의 수량, 비율 등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정보의 수집 · 제공, 경영방침 등

- 지명과 입찰참가예정에 관한 보고
- 공공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제 10 절 - 공정거래 위반대응

1. 법 위반 사전예방 대책으로서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rporate compliance program) 도입 및 운영

대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사전예방책으로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자율준수프로그램 (corporate compliance program)을 강화하여야 한다.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대한 이른 시기에 발견하고 신고하는 것은 기업과 관련 임원 및 직원 개인의 형사상 면책과 직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준수 및 감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의 특정 조직, 운영, 요원 및 영업 관행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조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예방 및 적발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율적 프로그램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조사개시 전 단계

가. 내부적인 조사의 필요

가. 1 내부적인 조사시행 여부

-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직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회사는 자신이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경영진은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않기를 바라며 내부적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회사가 위법행위에 대하여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보다는 내부적인 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행위의 내용과 가능한 파장을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 권장할 만한 조치이다.

가. 2 내부적인 조사절차 확정

- 회사 내부의 조사절차는 매우 신중하게 정하여야 하며, 사내변호사/감사/자율준수관리자 등을 통하여 조사를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회사는 직원들에게 대하여 꼭 필요한 조치만을 취하고, 과도한 조치로 직원이나 제3자로부터 명예훼손

손으로 인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조사와 관련된 결재라인을 확정해 놓아야 한다.

가. 3 문제가 되는 행위의 확정

- 위법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초기단계에서부터 그 후의 형사,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논리를 마련해야 한다.

가. 4 위법행위에 관련된 직원에 대한 태도 확정

- 조사에 연루된 직원들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결정하여야 한다. 확실하지 않은 혐의나 증거 때문에 직원/임원과 회사간에 마찰을 초래할 이유는 없다. 이것이 공공연한 분열로 이어질 경우, 형사 및 민사 소송, 그리고 그 이후의 절차에도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회사는 소송 비용, 변호사 선임, 혐의가 있는 직원의 휴직, 휴직 시 임금 지급 문제 등을 고려해 이에 대한 회사의 입장 및 그 논리를 결정하여야 한다.

나. 감면정책의 이용 여부의 결정

3. 조사개시 후 대책 - 사건의 파악 및 적절한 대응조치

가. 개요

- 조사가 개시된 경우 회사는 즉시 다양한 경로로 조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한다. 조사개시 전의 사실파악과 중복될 경우도 있으나, 조사개시 후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에는 회사는 다른 조사대상자들과의 공동대응 등을 통하여 유기적 협력을 하면서 적절히 대응하여야 한다. 회사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도를 적절히 파악해서 그에 맞추어 대응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서 주로 정확한 정보수집 및 그에 기한 대응이 핵심이라고 할 것이다.

나. 사건의 파악 : 사실관계의 파악 및 변호사 선임

나. 1 사내 자료 보존 및 수집

-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관련 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에게 서류 및 이메일을 파기 또는 삭제하지 않도록 그 회사의 법률 고문/사내 변호사/자율준수관리자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지시를 내리는 일이다(잘못하여 관련자료를 파기하다가 추가적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과정에서 관련 직원들에게 조사의 성격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려주는 동시에 사내 변호사/법률 고문/자율준수관리자의 사전 허락 없이 다른 사람들과 이에 관하여 의논하지 않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나. 2 공정거래위원회의 접촉

- 다음으로 할 일은 자율준수관리자/사내 변호사 등을 통해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와 접촉하는 것이다. 보통은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의 담당 조사관과의 대화를 통해 당국이 어느 정도의 혐의 및 정보를 갖고 이 사건에 임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리하여 사건의 심각성과 진전도에 따라 다음 단계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나. 3 직원 인터뷰

- 서류를 수집하고 조사하기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빨리 직원 인터뷰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몇 명이 나 관여 했는지, 아니면 혐의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내는데 필수적이다. 이런 인터뷰를 하는 경우, (i) 조사의 성격, (ii) 당국의 입장에 대해 알려진 사실들, (iii) 연루된 다른 회사 및 개인에 대해 알려진 사실, (iv) 해당 회사에서 집중 조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 등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이 그들의 입장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4 비슷한 위치에 있는 회사/개인 접촉

- 또 한 가지 가능한 방법은 비슷한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당사자들과 접촉하는 것이다. 경쟁 회사일 경우, 민감한 사항에 있어 쉽게 신뢰해서는 안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및 회사의 입장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나. 5 사내 외 변호사 및 외부 전문가 조력

- 형사 소송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도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하여는 사내 외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여야 한다.

나. 6 CEO 또는 고위 임원의 의사결정 참여

- 사내 외 변호사 및 전문가가 가장 신속히 내려야 할 결정 중 하나는 조사과정에서 내려야 하는 수많은 의사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질 사내 인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조사 자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진을 대표하여 당국의 조사과정에서 회사가 하여야 하는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 11 절 - 동반성장개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등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거래 또는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를 함에 있어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동반성장 기반조성을 위하여 상호「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및「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준수와 동반성장을 약속하는 협약을 자율적으로 체결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지원하는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방안(동반성장위원회가 공표하는 동반성장지수의 산정을 위한 협약 포함)이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체결, 협약내용, 협약이행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등에 대한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협약의 성격) 이 기준(이하 “협약절차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협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관 관련 법규 및「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령」(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준수와 상호간의 동반성장과 지원을 스스로 다짐하는 약속이다.

제3조(협약의 당사자)

- ① 협약의 당사자는 하도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 및 원사업자와 거래 중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된다. 다만, 이 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경우 비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협력사가 협약의 당사자가 된다.
- ② 원사업자 또는 대기업(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은 협약체결 당시 거래 중에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협력사(이하 “협력사”라 한다)와 동일한 내용의 협약을 각각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협력사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의 대표가 구성원의 위임을 받은 경우 이 대표와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 ③ 대기업은 협약 체결후 새로이 하도급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협력사에 대해서도 협약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협약의 구분)

① 대기업과 협력사간의 협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인 하도급공정거래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

2.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 대기업과 하도급법상 비수급 사업자인 협력사가 자율적인 공정거래질서 유지와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을 약속하는 협약

② 대기업과 협력사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경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거래와 비하도급거래를 동시에 유지하는 대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및 비하도급 협력사에 대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하도급거래와 비하도급거래를 동시에 유지하는 대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및 비하도급 협력사에 대하여 각각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

⑤ 비하도급거래 관계만 유지하는 대기업의 경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⑥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의 내용은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에 담겨야 할 주요내용)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협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반영한다.

① 협약 당사자간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② 협약 당사자간의 동반성장을 위한 사항

③ 협력사의 협력사(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대한 협약 당사자의 지원사항

④ 협약절차기준의 준수, 협약내용 및 평가자료의 공정위 제출 등 기타 협약 관련 사항

제6조(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하도급 법규의 준수 의지

② 하도급 법규의 준수를 위한 실천사항으로 공정위가 제정(2006.6.2)한 대.중 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 및 운용

1.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

가. 계약체결 및 변경시 서면계약서 교부(구두계약의 금지)

나.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인의 반영 등 합리적 단가산정 방식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및 조정(납품단가 조정방법 및 절차 도입 등)

다.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2.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

가.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객관.공정성 제고

나. 협력업체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 절차 및 결과의 사전공개

다. 등록업체에 공평한 입찰참가기회 부여 등

3.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

가. 원사업자의 자율적 법위반 감시 시스템 구축(심의위원회 구성)

나. 일정한 거래금액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다.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③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제7조(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사항) 협약 당사자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으로 다음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①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그 내용은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 또는 증가된 것이어야 한다.

1. 금융(자금)지원

금융(자금) 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원자재.장비구입비, 생산자금, 설비 투자비, 기술(개발.연구)자금 및 운영비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과 같이 지원하는 것(거래대금의 선급금 지급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직접지원 : 대기업이 직접 협력사에게 자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준금리보다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연구개발비,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비 등)

나. 간접지원 : 대기업이 금융기관 등에 협력사의 거래내역·보증·담보 등의 제공 또는 추천을 통하여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의 여신을 제공(대출) 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대기업 - 금융기관 - 중소기업 간의 약정을 통한 네트워크론 등)

다. 혼합지원 : 대기업이 직접 금융기관 등에 예금 또는 펀드를 조성하거나, 계열사의 예금 또는 펀드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 대기업의 협력사에게 기준금리보다 저리로 여신을 제공하도록 알선 또는 중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상생협력펀드 조성, 펀드공동이용 등)

라. 특별지원 : 대기업이 신용보증기금법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직접 보증기금을 출연하거나, 계열사가 출연한 보증기금을 이용하여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당해 대기업 또는 계열사의 협력사에게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하는 것(상생보증기금 출연 등)

2.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 개선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조건 개선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하도급대금 등의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서 대금지급기일(또는 주기)의 단축 또는 지급횟수의 증가, 선급금의 지급 및 결제수단(현금 또는 현금성 결제, 어음결제 등)별 지급비율의 증감 등을 말한다.

이때 결제수단별 지급비율은 일정한 기간(1년) 동안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지급한 대금의 누적 총액 중 결제수단별 지급액의 비율을 말한다.

또한, 대금지급 기일이란 대기업이 협력사로부터 목적물(구매대상)을 수령한 날(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대기업과 협력사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날)을 기준하여 협력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날을 말한다(예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등)

3. 기술(개발)지원 및 기술보호

기술(개발)지원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에게 기술이전, 특허권 제공, 공동연구개발 및 신제품·국산화 개발지원 등의 지원을 말하며, 기술보호는 협력사의 기술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등을 말한다.

4.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 등 지원

교육·훈련지원이란 대기업이 협력사의 임직원에 대한 경영교육, 원가절감 교육, 기술교육 및 노무교육 등과 같은 On-Off Line교육, (사내)대학 등과 같은 교육시스템을 통한 수급사업자 임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등을 말하며, 인력지원이란 대기업이 일정기간 동안 자기의 비용을 일정부분 부담하여 중견 관리자, 전문엔지니어 등의 인력을 협력사에 파견하거나 협력사의 요청에 의거 이들을 임용하는 것 등을 말하며, 이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것도 교육·훈련·인력지원으로 본다.

5. 기타 지원 사항

기타 지원 사항이란 “금융(자금) 지원, 대금지급조건 개선, 기술지원·보호, 교육·훈련 및 인력지원” 이외의 내용으로서 다음 사항을 말한다.

가.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 도입

대기업은 구매담당 임원평가지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해야 한다.

나. 위탁 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운영

위탁 관련 정보 통보시스템이라 함은 대기업이 협력사와 위탁 계약을 하기 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위탁 예정사실·물량·시기 등 위탁과 관련된 정보를 일정한 수단을 통해 협력사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다. 협력사 지원부서 설치·운영

대기업은 협력사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업무를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한다.

라. 협력사 원자재 확보 지원 : 구매대행 및 직접공급 등

마. 투명한 거래를 위한 협력사항 :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방지과 투명한 거래를 위한 상호간의 노력, 제도적 장치 마련·운영 등(윤리경영시스템 운용 등)

바. 협력사의 경영과 관련된 직·간접적 지원 : 경영컨설팅, 사무자동화, 홍보기법 및 활동지원, 6시그마 컨설팅, 선급금의 지급, 생산성향상 및 물류혁신 기법 전수, 에너지절감, 친환경제품 인증 및 협력사제품 마케팅지원 등

사.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력사항 :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적극적 단가조정

②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내용의 이행
2. 생산성 향상을 위한 원가절감, 기술개발, 공정·품질·물류개선 등
3. 대기업의 윤리규정 준수

4. 기타 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으로 협약 당사자가 정한 내용

제8조(2차 협력사 지원을 위한 사항) 협약 당사자는 협력사의 협력사(대기업의 2차 협력사)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 ① 협력사(1차)는 대기업과 체결한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협력사(대기업의 2차 협력사)와도 체결함으로써 동반성장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 ② 협력사(1차)는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 결제기일 개선 및 금융(자금)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협력사(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 ③ 협약당사자는 납품단가 조정정보를 내부협력 채널을 통해 자신의 협력사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한다.
- ④ 대기업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제9조(비하도급 거래관계의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기준) ① 대기업이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가 아닌 협력사와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 등을 준용한다.

- ②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협약서에 반영한다.
 1. 대기업이 하도급법상의 수급사업자가 아닌 협력사로부터 원재료, 부품, 상품, 제품 및 용역 등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관련 법규 및 상생협력법의 성실한 준수방안
 2.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위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협약체결 이전보다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기간)

- ① 협약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 ② 협약기간 만료시 상호 합의에 의해 협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③ 협약기간 만료시 당사자간의 합의지연, 대기업의 상생협력 지원내용 미확정,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이 경과

한 후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협약을 다시 체결(이하 “재협약”이라 한다)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 절차를 따른다.
-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기간 연장 또는 재협약에 대한 이행 평가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공정위의 지원사항) ① 공정위는 대.중소기업의 적극적인 협약 참여를 유도하고 협약 당사자가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 대기업 및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다음 사항을 지원한다.

- 1. 협약체결 절차.방법, 협약내용, 평가 및 인센티브 등에 대한 기준의 마련
 - 2. 협약체결 전 협약내용의 검토 등 협약체결 지원
 - 3. 협약이행 평가
 - 4. 협약이행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5.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 제정.보급
 - 6. 기타 협약 전반에 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②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약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이 기준이나 협약내용의 불이행 또는 평가등급의 저조 등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협약체결 절차 및 표준공정거래 협약서)

- ①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대기업은 협약체결 전에 협약서(안)과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작성한 협약체결 신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다.
- ② 공정위는 대기업이 제출한 협약서(안)의 내용이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협약서(안)의 내용에 대해 이 기준에 맞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정을 요구받은 대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③ 대기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쳐 협약을 체결한 경우 협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과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공정위는 별지와 같은(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를 제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13조(협약이행 평가)

- ① 대기업은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년 이 경과한 후에는 1년 경과일로부터 30일 이내(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1.31.까지)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요청한다. 이때 협약 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 중 이미 체결한 협약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은 기존의 협약체결 시점부터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간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행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 이행평가를 요청 받은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1.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이행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2. 평가를 요청한 대기업의 협약기간 1년 경과일을 기준하여 같은 분기에 해당하는 대기업을 모아 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의 경우 직전년의 실적에 대해 상반기에 평가를 실시한다.
3. 협약이행 평가는 협약체결 대기업 및 협력사가 제출한 서면자료 등을 통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4.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체결 당사자의 일방이 요청하거나 공정위가 서면확인으로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장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이때 현장확인 은 평가대상 기업이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가리기 위한 확인으로 국한한다.

- ③ 협약이행 평가를 위한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협약내용의 충실도

협약내용의 충실도는 협약서 내용(협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협약서 및 협약 세부이행 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가. 협약절차기준 및 표준협약서 내용의 반영 정도

나. 제6조에 따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 반영 정도

다. 협력사에 대한 상생지원 계획의 적정성(지원 항목별 적절한 배분, 지원내용의 협력사 제공을 위한 합리적 기준 등)

라. 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안 수립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2. 협약내용의 이행도

협약내용의 이행도는 협약 당사자의 협약내용의 이행실적에 대해 다음 사항을 평가한다.

- 가. 제6조에 따른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항의 이행정도
- 나.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한 상생지원 내용 이행실적
- 다. 대기업의 2차 협력사에 대한 지원방안 이행실적
- 3. 대기업의 윤리경영 시스템 도입·운용 및 기타 상생협력 사항 추진실적
- 4.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
- 5.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발생여부
- 6.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반하는 행위 여부

- ④ 대기업이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협약평가 완료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후 합의일 기준)에는 소정의 감점을 한다. 이 경우에 하도급법 이외의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령의 위반 전력을 고려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에 발생한 행위로 인해 협약평가 완료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처리를 받은 경우 평가를 재실시(감점처리)한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소급하여 재조정한다.
- ⑤ 대기업의 임직원이 협력사와 관련하여 뇌물수수, 배임, 청탁 등 기업윤리와 동반성장 정신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로서 동반성장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 곤란하다 판단되는 경우 소정의 감점을 할 수 있다.
- ⑥ 협약평가 주요 항목별 점수배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⑦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6항 별표 1.의 점수배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협약내용의 충실도 및 이행도에 대한 평가점수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 1. 당초 협약내용에 반영된 추진계획 항목에 대한 이행율에 따라 해당 항목의 충실도 최고 점수의 50%까지 감경한다(이행율 0인 경우 50%를 감경)
 - 2. 당초 협약내용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이행과정에서 추가로 항목을 반영하여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충실도에 대한 최고 점수의 60%까지, 이행도에 대한 최고 점수의 80%까지 각각 가산할 수 있다.

3. 영위 업종의 특성상 “2차 협력사 지원, 기술개발 지원 및 보호” 등 그 필요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항목의 반영 및 이행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항목에 대한 점수를 다른 항목으로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⑧ 공정위는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항목별 점수배분 등에 대해 이 기준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별도의 세부평가 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4조(협력사 만족도 조사)

- ① 공정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행 평가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의 협력사에 대하여 대기업의 협약내용 및 협약이행과 관련한 “협력사의 만족도”를 조사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사 만족도 조사대상 협력사는 대기업의 협약체결 협력사 수의 30% ~ 50% 범위내에서 공정위가 정한다.
- ③ 만족도 조사는 공정위가 조사대상 협력사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발송하여 수신하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외부의 설문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제1항의 협력사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는다.

제15조(협약평가 위원회의 구성·운영)

- ① 공정위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약이행 평가와 협약제도의 발전에 대한 심의를 위해 협약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임원 각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 1인과 공정위 기업협력국장, 하도급총괄과장 및 하도급개선과장 등 10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
- ③ 위원 중 변호사, 교수 및 설문조사 전문기관(회사) 소속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④ 공정위는 협약평가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위촉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거나 위촉장을 수여할 수 있다.
- ⑤ 협약평가위원회는 협약이행평가, 협력사 만족도 조사, 인센티브 내용 및 협약절차기준의 개정 등 협약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 ⑥ 협약평가위원회의 운용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평가위원 1/3 이상의 개회 요구를 받아 소집하되, 위원 2분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한다.
- ⑦ 협약평가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을 논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이행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기준)

- ① 공정위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의 협약이행 평가결과 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급을 구분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평가등급	평가점수	인센티브 제공내용
최우수	95점 이상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2년간 면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표창 수여(위원장 이상)
우수	90점 이상	- 직권조사 및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지정 및 정부부처간 하도급정책협력네트워크를 통해 관계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 - 표창 수여(위원장)
양호	85점 이상	- 서면실태조사 1년간 면제 - 표창 수여(위원장)

- ②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를 한 기업의 경우 평가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 인센티브의 100%까지, 6개월 이하인 경우 50%까지 부여할 수 있다.
- ③ “현금성결제 비율 90% 이상” 및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의 도입.운용과 관련한 과징금 감경은 이 협약에 의한 인센티브와 별도로 하도급 과징금 고시(Ⅳ. 2. 나(과징금 감경사유 및 비율). (2) 내지 (4)의 규정에 의한다.
- ④ 이 기준에 의한 인센티브는 다른 하도급 관련 법규 등에서 정한 것과 별개로 제공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우수” 및 “우수” 등급 해당 대기업에 제공하는 인센티브 중 “하도급거래 모범업체에 대한 두레넷 참여 정부부처가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공정위가 두레넷 참여 정부부처와 협의를 거쳐 확정된 후에 시행한다.
- ⑥ 직권조사의 범위는 업종별실태조사 등 공정위가 하도급거래 개선을 위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는 기획조사로서 신빙성 있는 첩보, 제보(부당단가인하신고센터 접수내용, 익명신고 등 포함) 등을 근거로 직권 인지하여 조사하는 것을 제외한다.
- ⑦ 공정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센티브 제공 대상이 되는 당해 기업에 대해 평가등급, 인센티브 내용 및 인센티브 제공기간 등을 통지하여야 하며, 동시에 전단의 내용을 공정위의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17조(영업비밀 등의 보호)

① 공정위는 협약 당사자가 협약체결 및 협약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임의로 공정위에 제출한 협약내용, 협약이행 실적 및 평가결과 자료 중 협약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속하거나 외부로 제공될 경우 당해 사업자의 영업 및 이미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다음 내용을 당해 기업의 동의없이 공정위 이외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 단체 또는 기업 등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반성장지수 산정을 위해 필요한 평가점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명, 주소, 연락처 등)은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다.

1. 대기업의 개별 협력사에 대한 자금지원, 기술개발·보호, 교육훈련, 기타 경영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 및 실적내용
2. 대기업의 협력사 명단(회사명, 대표명, 거래금액, 거래품목, 주소,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3. 평가대상 대기업의 구체적인 평가점수 등 세부평가자료
4. 협약서 및 협약내용 세부추진계획, 협약이행실적 관련 자료
5. 협력사별 만족도조사 회신내용 등 공개시 협력사에게 불이익이 우려되는 자료
6. 기타 당해 기업의 영업비밀 공개, 기업이미지 훼손, 거래상의 불이익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기업의 동의는 당해 기업의 대표이사 명의의 서면동의를 말한다.

제18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이 이 기준에 따라 자기의 협력사 또는 자기와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의 협력사를 지원하는 행위가「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19조(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조치)

- ① 협약체결 대기업이 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나 이행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공정위는 해당기업에 대해 평가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평가등급이 결정되어 인센티브를 제공받은 때에는 평가등급 및 인센티브 제공을 취소한다.
- ② 제1항의 경우 해당사실을 공개한다.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표준 협약서

(0000. 00. 00)

(주)○○○(이하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협력사 (주)○○○(이하 “협력사”라 한다)과 거래를 함에 있어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하도급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과 협력사간의 자율적인 공정거래 질서 확립과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으로 상호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률 준수) □□□과 협력사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와 상생협력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등 하도급 관련 법규를 성실히 준수한다.

제3조 (공정한 거래 등의 보장) □□□은 협력사와의 공정한 하도급거래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가 제정(2006.6.2)한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3대 가이드라인"을 도입하여 성실히 이행한다.

① "대.중소기업간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을 도입, 준수하여 계약체결 단계에서부터 이행단계 전반에 걸쳐 공정한 거래를 한다.

1. 계약체결 및 변경시 서면계약서 교부(구두발주 금지)
2. 원자재가격 인상, 환율변동 및 물가인상 요소 반영 등 합리적인 단가산정·조정 방식에 의한 거래대금의 결정 및 조정(납품대금 조정기준 및 절차 도입)
3. 부당한 감액행위의 금지 등

② 공정하고 객관적인 협력회사 선정·운용(등록·변경)을 위하여 "협력업체 선정(등록)·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 준수한다.

1. 협력회사 선정(등록) 및 취소기준의 공정성, 투명성 보장(기준, 절차 공개)
2. 협력업체 선정(등록) 심사결과의 통지
3. 협력회사에 대한 공평한 입찰 참가 기회 부여 등

③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전예방 및 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가이드라인"을 도입·운용한다.

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구성(하도급거래담당 임원 포함 3인 이상)
2. 000억 이상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등에 대해 사전심의
3. 협력회사 선정,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심의 등
4.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등

제3조의 2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은 서면거래문화 활성화를 통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정착을 위하여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도입·사용한다.

제4조 (동반성장을 위한 지원) □□□은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의 재무 건전화, 결제조건 개선, 기술개발 촉진, 전문능력 제고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운영한다.

① 금융(자금)지원

- 직접지원 : 000억원
 - 협력사의 긴급 운영자금 지원(대여) : 00억원
 - 협력사의 구매조건부 신기술 연구개발자금 지원(무상) : 00억원
 - 협력사의 설비·장비도입 자금 등 지원(대여) : 00억원
- 간접지원 : 금융기관을 통한 협력사 자금대출 지원 제도 도입·운용
 - 금융기관과 협력사 대출지원을 위한 약정체결을 통한 자금지원(예; 네트워크론) (○○은행과 약정체결, 대출약정한도 000억원)
- 혼합지원 : 상생펀드 000억원 조성
 -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을 위하여 금융기관과 공동으로 000억원의 “상생펀드를 조성하여 운용한다(□□□ 000억원, 금융기관 000억원 부담).
 - □□□의 계열사인 △△△이 조성한 상생펀드 000억원(60% : 00억원)을 이용하여 □□□의 협력사에게 저리의 자금대출 지원(○○은행과 □□□와 계열사인 △△△간 약정체결)
- 특별지원 : 000억원
 - 협력사에게 대출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보증기금 000억원을 신용보증기금(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한다.

② 하도급대금 지급조건 개선

- 현금 결제비율 개선

- 현재 30%(‘00.~’00.0) → 50%(‘00.00~’00.00)(개선)
- 현금지급 계약규모 한도상향 조정 : 현재 3,000만원 미만 현금 지급을 5,000만원 미만 계약건에 대해 100% 현금지급(개선)
 - o 현금성 결제비율 개선
- 현재 70%(‘00.00~’00.00 → 80%(00.00~’00.00)
 - o 지급기일 또는 횟수 개선
- 현재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25일 이내 지급 → 15일 이내 지급으로 개선
- (또는) 현재 월 1회 지급 → 월 2회 지급으로 개선

③ 기술(개발) 지원.품질개선 및 기술보호

- o 기술(개발) 지원(확대)
 - 터널발파공법 등 신기술 협력사 이전 : (‘00) 4개사 5건 → (‘00) 6개사 7건
 - 반도체 핵심부품 공동개발 추진 확대 : (‘00) 4개사 5건 → (‘00) 6개사 7건
 - 자동차 자동 브레이크 장치 개발비 지원(신규사업) : 3개사 40억원
 - o 협력회사 기술 License 허여(확대)
 - ooo 기술특허에 대한 무상 통상 실시권 허여 : (‘00) 00개사 → (‘00) 00개사
 - o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해외시장 진출확대 및 공동참여(확대)
- (‘09) 5개사 → (‘10) 8개사
 - o 협력사가 독자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지원
 - o 협력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공동 특허출원
 - o 협력사의 ooo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자료 임치제 이용

④ 인력, 교육, 훈련 지원

- o 협력사 임직원 재무, 회계, 위기관리 기법 등 교육(연1회/000개사 이상)(신규)
- o 협력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사 차기 CEO 및 현장책임자에 대한 경영, 품질 향상 및 안전교육 실시(‘00 : 연0회, 00개사 → ’00 : 연0회, 000개사)(확대)
- o 우수협력사의 기술요원을 해외 현장에 배치하여 해외 현장경험 습득을 통한 해외진출을 지원(00명, 0년, 인건비 00% 지원)(신규)

⑤ 구매담당 임원에 대한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시스템 도입

- o 구매담당 임원평가기 협력사와의 동반성장 추진실적에 중점을 두어 평가

⑥ 위탁관련 정보 통보시스템 도입.운용

⑦ **동반성장 전담부서 운영, 협력사 의견수렴, 윤리경영 시스템 구축 등**

- ○○팀(또는 ○○팀 내 △△파트)을 동반성장 전담부서로 지정하여 운영
-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의 부정당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윤리규범 제정 운영
- 당사 임직원 및 협력사의 비위제보 및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운영
- 거래계약 체결시 당사의 윤리규범 준수 서약서 징구

⑧ **협력사에 대한 원자재 확보(구매대행 및 직접공급) 지원**

⑨ **직·간접 경영지원 사항**

- 최우수 협력사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확대)
 - ('00) 최우수 협력사 2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 → ('10) 최우수 4개사에 1년간 수의계약 1건 및 계약이행 보증면제
- 선급금 지급 확대(개선)
 - 발주처 선급금이 없는 민간 발주 및 당사 발주공사에 대한 선급금30% 지급
 - 선급금 지급 규모 확대 : ('00) 20% → 30%(확대)
- 지역업체 입찰기회 확대
 - 지역별 협력업체 Pool 마련 및 입찰참여 기회 확대
- 전자입찰 비율 확대 : ('00) 80% → ('00) 100%
- 협력사 수의계약을 통한 공동목표 원가제 실시(신규)
- 협력사 손실 방지를 위한 저가심의제도 실시(유지)
- 5,000만원 이하 공사 계약이행보증 면제 및 하자보증 면제
- 경영닥터제 지원(신규)
 - 협력사의 경영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하는 프로그램

⑩ **합리적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협력사항**

- 원자재 가격변동 등에 따른 적극적 단가 조정

제5조(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 운용) □□□는 다음과 같이 2차 협력사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운용한다.

- ① 협력사(1차)는 □□□과 체결한 '동반성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을 협력사(2차)와도 체결하여 동반성장 확산에 노력해야 한다.

② 협력사(1차)는 □□□으로부터 납품단가 인상, 현금(성) 결제비율 확대, 결제 기일 개선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에 따라 협력사(2차 협력사)에게 제공한다.

③ □□□과 □□□는 납품단가 조정정보를 내부협력을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④ □□□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 협력사(1차)에 대하여 지원 또는 거래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한다.

제6조(협력사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사항) 협력사는 □□□과 하도급 거래를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력 방안 이행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계약 이행

②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정개선, 원가절감, 물류혁신 노력 제고

③ □□□의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등

④ □□□의 2차 협력사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한 이행 ⑤ 기타

제7조(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거래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을 협약종료일로 본다.

② 협약기간 만료시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1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법적 성격) 이 협약은 □□□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협약 당사자인 협력사들에게 공정거래와 동반성장 의지를 선언하는 것으로서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어느 일방의 협약위반을 이유로 상대방 회사 또는 임직원에 대하여 민·형사 또는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 절차를 제기할 수 없다.

제9조(협약기준 준수) □□□과 협력사는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위가 정한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지원 기준”을 성실히 준수한다

제10조(세부이행계획 및 평가자료) ① □□□은 협약체결후 20일 이내에 협약서 사본, 협약체결 협력사 명단 및 협약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다.

② □□□은 협약기간 만료후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협약내용의 이행평가를 위한 협약내용 이행실적 자료를 제출한다.

○○○○년 ○○월 ○○일

(대기업)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협력사)

주식회사 △△△

대표이사 ○○○ (인)

제 12 절 - 현대로템 CP운영현황

1. 공정거래자율준수 운영규정

작성팀	작 성	검 토	승 인			사 장
재정팀	백난이	손석우	장화경	/	/	결재완료
	/	/	/	/	/	/

개정이력

개정번호	개정일자	내역	
		~을	~(으)로
0	2002.12.	최초제정	
1	2010.01.		(전담부서)재정팀 및 임명사항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등 경쟁법의 준수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적용범위)

현대로템 주식회사의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경쟁 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경쟁법은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법규를 말한다.
3. 경쟁당국은 경쟁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4. 자율준수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 4 조 (선임과 해임)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 사실은 전 임직원에게 문서(전자문서 포함), 홈페이지 개시 등의 방법을 통해 전 직원에게 전달 되어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자율부서 전담부서 팀장이 당연직으로 승계한다.

제 5 조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6 조 (의 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 7 조 (직 무)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2. 자율준수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감사를 반기 1회 이상 실시
4. 감사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
5. 기타 경쟁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
7.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8.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9.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을 대표이사에게 보고
10.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11.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8 조 (인사상 불이익 부과금지)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집행의 객관성,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회사의 지원)

1.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 10 조 (전담부서)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 회사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재정팀에서 주관한다.

제 2 장 자율준수협의회

제 11 조 (설치 및 구성)

1. 자율준수관리자는 자문기구로서 관련부서의 팀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3.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 12 조 (역할)

자율준수협의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준수의 기본방침 설정
2. 중요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

제 3 장 임직원

제 13 조 (의무)

1. 모든 임직원은 경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 팀장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쟁법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자문 또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3. 각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경쟁법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4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 14 조 (자율준수편람)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2.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및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지체없이 자율준수 편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 15 조 (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준수여부를 반기 1회 이상 확인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임직원의 자율준수실태 등에 대한 점검, 조사
2.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작성한 각종 체크리스트의 검토 및 확인
3. 자율준수관리자의 요구에 의하여 제출된 신고서, 보고서,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4. 자율준수관리자는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 조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규정과 관련하여 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반기1회(1회당 2시간 이상)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보수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경쟁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한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교육 및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사고과에 반영한다.
3. 자율준수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 17 조(경쟁법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1.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준수여부 점검결과 적발된 경쟁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하되, 사규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당해 임직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8 조 (문서관리)

1.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2.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 보관되어야 한다.
3.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 19 조 (운영성과 평가)

1. 자율준수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운영성과 평가는 자율준수관리자가 하되,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20 조 (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증권거래소에 자진공시 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 21 조 (경쟁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 (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시기) 이 규정은 2003년 1 월 1 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제 재) 자율준수프로그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임직원은 징계한다.

제 3 조 (자 문) 경쟁법 관련 업무를 해석하거나 이행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기면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협의회와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 4 조 (사내 다른 규정과의 관계) 자율준수규정은 회사 내 다른 규정보다 우선한다.

개 정

제 1 조 (개정시기) 개정된 규정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CP운영주요 실적

구분	자율준수 추진 실적
최고 경영자 자율준수 의지 선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도입 시 최고경영자의 공정거래 준수 의지를 대내외에 선포 (2002)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선언 (2006)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준수 의지 재 천명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임직원에게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기업생존의 필수 요소임을 강조 ㉣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 재천명 및 행동규범 재선포 (2011)
자율준수 관리자 및 자율준수 협의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결의에 의거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리자 선임 및 변경 (2009) ㉡ 자율준수 관리자를 의장으로 하는 자율준수 협의회의 설치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장과 연구소를 포함, 7개 관련부서 팀장으로 구성 - 법무팀장 법률자문 ㉢ CP전담부서 변경 (기획팀 → 재정팀) (2010)
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P도입 시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제작 및 배포 (2002) ㉡ 임직원 윤리행동 지침서 제작 및 배포 (2006) ㉢ 협력사 윤리 행동 규범 지침서 제작 및 배포 (2009) ㉣ 자율준수편람 개정 (2009) ㉤ 최신 관련법 개정을 반영하여 자율준수편람 개정 (2011) ㉥ 협력사 윤리행동 규정 개정 (2011)
공정거래 교육프로그램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정기 공정거래 교육 연2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교육1회, 집체교육1회 ㉡ 신입사원 연수 과정 중 공정거래 교육 포함 ㉢ 연 1회 전사 과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기초교육 실시 ㉣ 연 1회 임원대상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한 공정거래교육 실시
내부 점검 체계 및 제재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선스크린제도/법률자문 시스템 운영 ㉡ 사이버신문고 운영 ㉢ 인사제재 규정에 따른 신속한 제재조치 시행
문서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서관리담당자 임명 및 문서관리규정 운영

3. CP운영 조직

□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의 역할

- ✓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계획수립 및 운영, 자율준수 실태 점검
- ✓ 자율준수 교육 실시, 자율준수 행동강령의 제정 운영, 활동보고
- ✓ 자율준수 관련 문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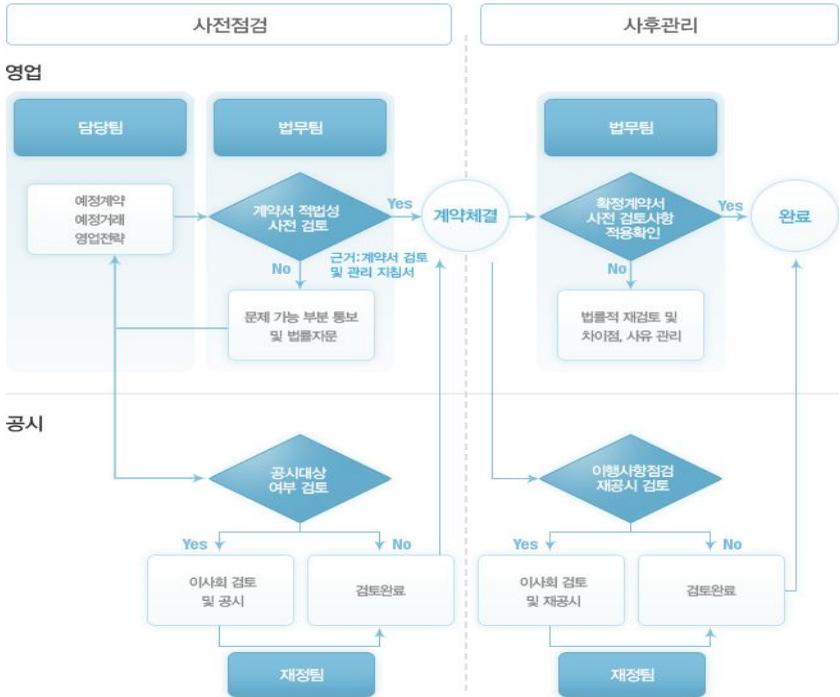
□ 공정거래 자율준수 조직도



공정거래자율준수관리자 Hot-Line

보직	부서(팀)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자율준수관리자	기획팀	상무	장화경	02-3464-7022	changhwk@hanmail.net
전담 부서	책임자	부장	손석우	02-3464-7090	ssw@hyundai-rotem.co.kr
	담당자	차장	권오현	02-3464-7098	ohkwon@hyundai-rotem.co.kr

4. 사전 스크린제도



5. Hot Line(내부감시제도)

자율준수 담당조직 연락처			
자율준수 관리자	장화경 상무	TEL	02-3464-7022
자율준수 담당자	손석우 부장	TEL	02-3464-7090
	권오현 차장	TEL	02-3464-7098
	백난이 사원	TEL	02-3464-7097

신고하신 내용은 제보자가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보자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